

## **총괄**

이진면(연구위원)

## **경제금융**

해외경제 이정환(선임연구원)

국내경제 황진태(부연구위원)

금융경제 신종협(부연구위원)

최이섭(연구원)

## **보험시장**

신종협(부연구위원)

황진태(부연구위원)

김세환(수석연구원)

박정희·김세중·최이섭(연구원)

## **국내제도**

박정희(연구원)

## **해외제도**

이정환(선임연구원)

김세중(연구원)

최이섭(연구원)

# 보 험 동 향

2009년 봄호

# 목 차

|                              |     |
|------------------------------|-----|
| 테마진단 .....                   | 1   |
| 인출보증옵선부 변액연금 활성화 필요성 .....   | 1   |
| 퇴직연금 지배구조와 감시기능체계 개선과제 ..... | 18  |
| 경제금융 동향 .....                | 32  |
| 1. 세계 경제 .....               | 32  |
| 2. 국내 경제 .....               | 51  |
| 3. 금융 경제 .....               | 61  |
| 보험시장 동향 .....                | 68  |
| 1. 보험산업 총괄 .....             | 68  |
| 2. 생명보험 .....                | 70  |
| 3. 손해보험 .....                | 81  |
| 국내제도 동향 .....                | 96  |
| 해외제도 동향 .....                | 128 |
| 북미 동향 .....                  | 128 |
| EU 동향 .....                  | 138 |
| 일본 동향 .....                  | 148 |
| 기타 동향 .....                  | 158 |
| 통계표 .....                    | 166 |

# 테 마 진 단

## ◆ 인출보증옵션부 변액연금 활성화 필요성

송윤아 부연구위원

### 1. 서론

국내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투자수익 보증에 초점이 맞춰진 GMAB옵션이 변액연금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한편, 유동성 있는 소득흐름을 보증하는 인출보증옵션의 판매는 부진함. 반면, 미국의 경우 2006년 기준 인출보증옵션부 변액연금 수입보험료가 총수입보험료의 약 50%를 차지함. 이에 본고에서는 인출보증옵션의 작동 메커니즘 및 특징을 알아보고 향후 인출보증옵션의 국내 활성화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함.

- 국내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투자수익 보증에 초점이 맞춰진 GMAB옵션이 변액연금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반면, 유동성 있는 소득흐름을 보증하는 인출보증옵션의 공급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변액연금을 비롯한 연금시장이 미성숙한 상황에서, 계약자들은 변액연금가입을 통해 향후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는다라는 개념보다는 투자수익을 향유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음.
- 즉, 초기 국내 변액연금시장에서는 연금지급방식의 조건보다는 변액보험펀드의 수익률이 더욱 중요한 판매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보험회사입장에서는 연금개시시점의 최저투자적립금을 보증하는 GMAB옵션부 변액연금을 주로 공급한 것으로 판단됨.
- 2008년 12월 기준, 국내에서는 GMAB옵션의 공급이 주를 이루고, 3개 생보사가 인출보증옵션부 변액연금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국내시장에서 GMAB옵션의 약진과 인출보증옵션의 부진은 연금시장이 성숙한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와 대조적인 현상으로서, 미국에서는 인출보증옵션이 변액연금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2008년 1월에 발표된 Milliman 3rd Annual GLB Survey (19개 보험사 참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06년 GMWB와 GLWB옵션부 변액연금 수입보험료가 각각 변액연금 총수입보험료의 21.8%와 27.6%를 차지하는 등 인출보증옵션이 부가된 변액연금 수입보험료가 총수입보험료의 약 50%를 차지함.
- 미국의 경우 2006년 보증옵션별 변액연금 계약자의 선택률을 살펴보면, 인출보증옵션이 37%로 가장 높으며, GMIB옵션이 23%, GMAB옵션이 5%로 가장 낮음.

**<표 1> 보증유형별 계약자 선택률 (미국)**

(단위: %)

|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상반기 |
|-----------|-------|-------|-------|-----------|
| GMWB/GLWB | 24    | 29    | 37    | 40        |
| GMIB      | 25    | 24    | 23    | 22        |
| GMAB      | 7     | 7     | 5     | 4         |

주 : 미국 변액연금시장의 65%를 차지하는 20개 보험사들이 해당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그 중 14개사는 상위 20위 안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 Third Annual Milliman Survey on Variable Annuity GLB Market Dynamics (2007)

- 급속한 고령화, 자조노력을 통한 노후대비 증가와 상속동기 약화, 그리고 타금융권 역과의 연금시장 경쟁심화 등 국내 여건이 미국 인출보증옵션부 변액연금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들과 비슷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바, 국내에서도 향후 인출보증옵션부 변액보험의 수요증가와 공급의 필요성이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출보증옵션의 작동 메커니즘 및 특징을 소개하고, 향후 인출보증옵션의 국내 활성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2. 최저생존보증옵션과 인출보증옵션

인출보증옵션은 확정기간 또는 생존기간 동안 계약 시 설정된 지급률을 보증하여 결국 기납입보험료 이상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 이러한 작동 메커니즘에 내재된 인출보증옵션만의 장점은 ① 계약자가 인출하는 빈도와 속도(pace)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어 현금유동성을 위해 상품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② 거치기간이 없거나 짧아서, 미래가 아닌 현재의 소득보장 수요가 큰 고령인구 계층에게 적합하다는 것임.

### 가. 최저생존보증옵션

- 변액연금에 부가된 최저생존보증옵션은 보증급부 및 연금지급방식 등에 따라 GMAB옵션, GMIB옵션, 인출보증옵션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GMIB(Guaranteed Minimum Income Benefit)옵션은 연금화를 조건으로 기납입보험료에 약정이율이 부리된 금액의 지급을 보증함.
  - GMAB(Guaranteed Minimum Accumulation Benefit)옵션은 연금개시시점에 통상 기납입보험료의 70%~130%에 해당하는 최저적립금의 지급을 보증함.
    - 보증비율은 납입기간 · 최소거치기간 · 주식편입비율 등에 따라 차등화됨.
  - 인출보증옵션(이하 WB보증옵션이라 칭함)은 최저보증연금기간동안 연최대지급률을 보증하여 적어도 기납입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
    - 인출보증옵션은 약정된 지급률이 확정기간동안 지급되는 GMWB(Guaranteed Minimum Withdrawal Benefit)와, 생존기간 동안 지급되는 GLWB(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로 대별되며, 본고에서는 필요시 두 옵션을 포괄적으로 WB보증옵션이라 표현함.

### 나. 인출보증옵션 작동 메커니즘

- 변액연금의 WB보증옵션은 확정기간 또는 생존기간 동안 계약 시 설정된 지급률을 보증하며, 연금개시 후 특별계정에서 운용되어 계약자에게 연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초

과 투자수익기회를 제공함.

- 예를 들면, GMWB옵션은 14.28년 동안 연7%의 최대지급률을 통해 기납입보험료 이상의 반환을 보증함.
  - 지급률은 연금개시 후 연금기준금액(benefit base)대비 지급되는 생존연금액의 비율로서, 연금액은 연금지급시점의 연금기준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됨.
  - 총연금액 = 연금기준금액 x 지급률(7%) x 최저보증연금기간(14.28년)
- 일반적으로 GLWB는 연금개시나이에 따라 지급률을 차등화한 연금연액을 종신토록 지급할 것을 보증함.

**<표 2> GLWB옵션 지급률 예**

(단위: %)

| 연금<br>개시<br>나이 | 45~49세 | 50~54세 | 55~59세 | 60~64세 | 65~69세 | 70~74세 | 75~79세 | 80세<br>이상 |
|----------------|--------|--------|--------|--------|--------|--------|--------|-----------|
| 지급률            | 3.5%   | 3.75%  | 4.0%   | 4.25%  | 4.5%   | 4.75%  | 5.0%   | 5.5%      |

- WB보증옵션을 선택한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적립금이 0으로 떨어지더라도, 최저보증연금기간동안 연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 받음.
- <표 3>은 GMWB의 작동 메커니즘과 최저인출보증의 특징을 간단한 예를 통해 보여줌(보여주고 있음).
  - 계산의 편의를 위해, KOSPI지수에 연동된 펀드투자금액이 1,000,000원, 계약자가 구입한 WB보증옵션은 특별계정의 투자실적에 상관없이 매해 특별계정투입보험료의 7%씩, 14.28년 동안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증한다고 가정함.
  - 그 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 인출(systematic withdrawal plan)에 의해 연금액을 지급받는 계약자는 2005년 이후 더 이상 연금액을 수령할 수 없으나, GMWB옵션을 선택한 계약자는 지급기간 만료시까지 280,000원(70,000원 x 4년)의 금액을 더 지급받을 수 있음.

- 투자수익률이 좋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적립금으로부터 인출금액을 충당하지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수익률이 좋지 않아 특별계정적립금이 최저보증연금기간 만료 전에 고갈되었을 시, 인출금액은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남음.

&lt;표 3&gt; GMWB옵션의 예

(단위: 원)

| 연도   | 연투자수익률<br>(KOSPI) | 인출 전 금액   | 인출 후 금액   | 프로그램 인출 | GMWB   |
|------|-------------------|-----------|-----------|---------|--------|
| 1994 | 0.186             | 1,186,087 | 1,116,087 | 70,000  | 70,000 |
| 1995 | -0.141            | 959,185   | 889,185   | 70,000  | 70,000 |
| 1996 | -0.262            | 655,826   | 585,826   | 70,000  | 70,000 |
| 1997 | -0.422            | 338,523   | 268,523   | 70,000  | 70,000 |
| 1998 | 0.495             | 401,356   | 331,356   | 70,000  | 70,000 |
| 1999 | 0.828             | 605,656   | 535,656   | 70,000  | 70,000 |
| 2000 | -0.509            | 262,923   | 192,923   | 70,000  | 70,000 |
| 2001 | 0.375             | 265,210   | 195,210   | 70,000  | 70,000 |
| 2002 | -0.095            | 176,595   | 106,595   | 70,000  | 70,000 |
| 2003 | 0.292             | 137,706   | 67,706    | 70,000  | 70,000 |
| 2004 | 0.105             | 74,823    | 4,823     | 70,000  | 70,000 |
| 2005 | 0.540             | 7,425     | -62,575   | 7,425   | 70,000 |
| 2006 | 0.040             | 0         | -132,575  | 0       | 70,000 |
| 2007 | 0.323             | 0         | -202,575  | 0       | 70,000 |
| 2008 | -0.408            | 0         | -272,575  | 0       | 70,000 |

주 : 1) 인출 전 금액 = 펀드투자금액 x (1 + 당해 연투자수익률).

2) 인출 후 금액 = 펀드투자금액 x (1 + 당해 연투자수익률) - GMWB.

- 이러한 작동 메커니즘에 내재된 WB보증옵션만의 장점은 현금유동성과 짧은 거치기간에 있음.

- 현금유동성: WB보증옵션을 구입한 계약자는 인출하는 빈도와 속도(pace)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어 현금유동성을 위해 상품을 포기할 필요가 없음.
- 계약자는 인출시기를 미룰 수 있는데, 이 경우 연금기준금액 또는, 차년도 지급률이 증가함.
  - 계약자는 당해 지급률을 초과하여 인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연금기준금액 또

는 차년도 지급률이 감소함.

○ 짧은 거치기간: 거치기간이 없거나 짧아서 미래가 아닌 현재의 소득보장 수요가 큰 고령인구계층에게 적합한 상품임.

- WB보증옵션의 경우, 거치기간이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하나는 거치기간에 대해 별도의 보너스가 주어지는 명시적 거치기간, 다른 하나는 계약자가 첫 인출을 미룰시 연금기준금액을 인상하거나, 차년도 지급률을 인상하는 식의 묵시적 거치기간임.

#### 다. 인출보증옵션에 내재된 리스크

□ Milevsky and Salisbury (2005)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WB보증옵션부 변액연금자산이 부족해질 가능성은 ① 투자수익의 변동성이 증가할수록, ② 투자의 기대수익률이 감소할수록, ③ 경과기간이 길수록, ④ 초기투자원금이 감소할수록, ⑤ 지급률이 증가할수록 증가함 .

○ Milevsky and Salisbury(2005)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최저보증연금기간 동안 총지급금액과 총보증금액이 일치한다(즉, 인출률이 100%)고 가정할 때, 투자의 연기대수익률이 12%이고 투자수익의 연변동성이 25%이면, 14.28년 안에 연금자산이 부족해질 가능성은 15.5%임.

- 주식과 채권의 혼합형투자펀드라면, 최저보증연금기간 내에 연금자산이 부족해질 가능성은 15.5%보다는 낮을 것임.

**<표 4> 14.28년 내에 연금자산이 부족해질 가능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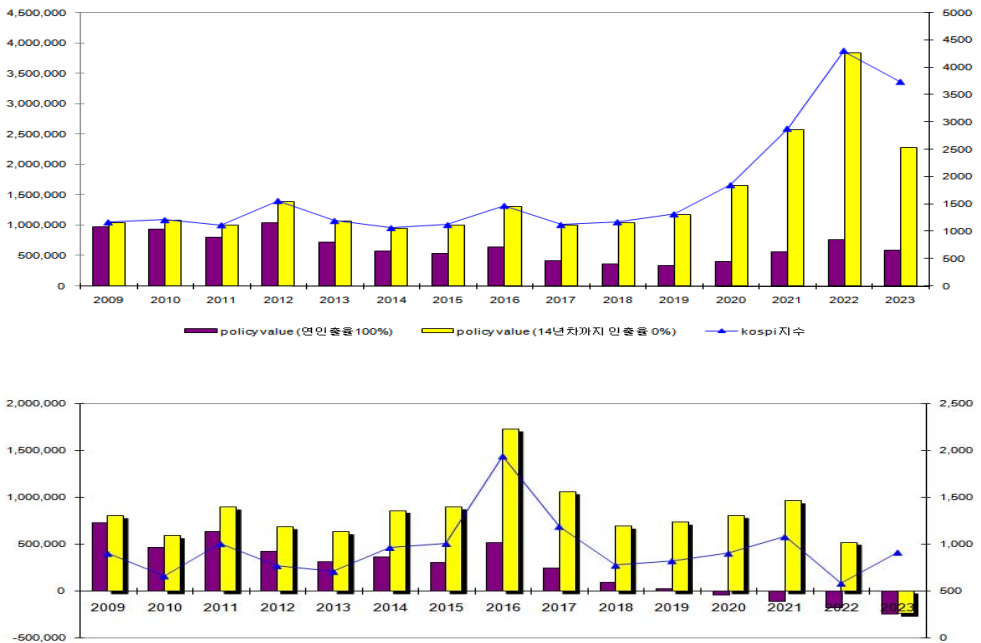
|                 | $\mu = 4\%$ | $\mu = 6\%$ | $\mu = 8\%$ | $\mu = 10\%$ | $\mu = 12\%$ |
|-----------------|-------------|-------------|-------------|--------------|--------------|
| $\sigma = 10\%$ | 19.0        | 7.00        | 1.70        | 0.30         | 0.04         |
| $\sigma = 15\%$ | 31.4        | 18.5        | 9.30        | 4.10         | 1.60         |
| $\sigma = 18\%$ | 37.8        | 25.5        | 15.5        | 8.60         | 4.40         |
| $\sigma = 25\%$ | 49.9        | 39.6        | 30.5        | 22.2         | 15.5         |

주 :  $\mu$ =평균투자수익률,  $\sigma$ =투자수익의 변동성  
 자료 : Milevsky and Salisbury (2005)

- WB보증옵션부 변액연금은 자산시장상황 악화에 따른 보증위험의 완충(buffer) 기간이 없거나 짧아서, 투자수익의 변동성이 클 경우 한 번의 충격으로 보험회사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WB보증옵션의 경우, 자산시장의 상황이 보험회사의 현재 현금흐름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GMIB옵션이나 GMAB옵션의 경우 일반적으로 5~15년 정도의 거치기간이 있어서 보험회사가 직면한 현재 자산시장의 위험이 최소 5년 이상 완충됨.
- WB보증옵션에 내재된 이러한 위험 때문에 WB보증옵션 제공시 첫 인출시기가 미뤄질수록 높은 지급률을 보증하거나, 현재의 지급률을 차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보(save) 할 수 있게 하는 등, 인출을 늦추어 사실상 거치기간을 확보하는 유도장치를 마련함.
- 계약자의 첫 인출시점 (또는 인출률)이 WB보증옵션의 연금자산부족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계약자의 인출률이 낮을수록 자산시장상황에 상관없이 WB보증옵션의 연금자산부족 가능성이 낮아짐.
- 1980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KOSPI 월말종가지수 데이터에 근거하여 산출된 연기대수익률(12.95%)과 연변동성(29.9%)을 이용하여 1,000개의 KOSPI 지수 변동 시나리오를 생성한 후, 두 개의 주가지수변동 시나리오를 무작위로 선택함.
- 선택된 주가지수변동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2009년 01월 이후 15년 동안 연최대 지급률을 특별계정투입보험료의 7%로 하여 특별계정적립금을 산출하였으며, <그림 1>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것임.
- 시뮬레이션 결과, 주가의 잦은 등락은 보험회사의 최저보증연금기간 종료 전에 연금자산이 부족해질 가능성을 높임.
-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첫 인출이 2023년 15년차에 이뤄졌을 경우 인출 후 특별계정에 남는 적립금이, 매해 인출률이 100%인 경우에 비해, 1,683,041원 더 많음.
-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첫 인출이 2023년 15년차에 이뤄졌을 경우 인출 후 특별계정에 남는 적립금이 -237,864원이며, 매해 100% 인출이 이뤄졌을 경우, 적립금은 -249,475원으로 인출이 미뤄질수록 보험회사의 손실이 작아짐.

- 인출률이 최저보증연금기간 종료 후 특별계정적립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곧 거치기간이 특별계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보증 옵션공급자 입장에서 GMWB옵션이 5~15년의 거치기간이 있는 GMAB옵션보다 위험할 수 있음을 시사함.

<그림 1> 인출률과 연금자산부족가능성



주 : 짙은 색의 막대는 매해 계약자가 7%씩 인출할 경우 특별계정적립금을 나타내며, 옅은 색의 막대는 계약자가 최저보증연금기간의 마지막 해에 첫 인출을 할 경우 특별계정적립금을 나타냄.

## 라. 타 최저생존보증옵션과의 비교

### 1) GMIB옵션과 WB보증옵션 비교

- GMIB옵션은 연금화(annuitization)를 조건으로 확정기간(통상 20년)동안 또는 종신토록

일정수준의 연금연액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GMIB옵션을 선택한 계약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적어도 가입 시 특정된 최저이율에 따른 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받음.

- 계약자의 투자금액이 1,000,000원이고 GMIB옵션이 3%복리를 보증한다고 가정하고, 10년 후 연금 개시시점에 투자실적이 좋지 않아서 적립금이 500,000원이 되었다면, GMIB옵션을 선택한 계약자는 적립금과 보증금액 중 큰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증금액 1,343,916원을 연금으로 수령함.
- 대개 계약시점의 시중이자율보다 낮은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시점에서 보증금액은 보험회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임.
- WB보증옵션과 GMIB옵션은 안정적 소득흐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WB보증옵션은 GMIB에 비해서 높은 현금유동성과 짧은 거치기간으로 인해 고령의 가입자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보험회사에게 유리함.
- GMIB옵션의 경우, 연금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금연액이 계약시점 투자금액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이미 결정된 것으로, WB보증옵션에 비교하여 현금유동성이 낮다는 단점을 지님.
  - 최근에는 WB보증옵션의 현금유동성과 경쟁하기 위해, 연금기준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매해 GMIB옵션에 부리된 이자율만큼만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dollar-for-dollar withdrawal이 GMIB옵션에 추가됨.
  - GMIB옵션은 일반적으로 7~10년 정도의 거치기간이 있는 반면, WB보증옵션의 경우 통상 거치기간이 없으며, 있더라도 5년 이하로 GMIB옵션보다 짧으며 거치기간 보너스가 별도로 주어짐.
- GMIB옵션은 연금개시 전 특별계정에서 운용되고 연금개시 후 통상 일반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반면, WB보증옵션은 연금개시 후 특별계정에서 운용되어 연금개시 후에도 계약자에게 초과수익기회를 제공함.
- Lombardo(2008)에 따르면 GMIB옵션이 WB보증옵션에 비해서 금리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저금리와 저투자수익률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함 .
  - 동 자료에 의하면, WB보증옵션의 헷지실효성은 75%인 반면에, GMIB옵션의 헷지실효성은 55%임.

- GMIB옵션은 투자환경이 ‘아주’ 좋지 않을 때, 계약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로써 계약자는 퇴직 후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 2) GMAB옵션과 WB 보증옵션 비교

- WB보증옵션은 사후적으로 미래의 소비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GMAB옵션은 투자수익향유와 투자의 안정성 등 투자측면을 강조하여 뮤추얼 펀드와 같은 타 금융투자상품과 차별화하는 데에 판매포인트(selling point)를 두며 WB보증옵션에 비하여 최소거치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고령의 가입자에게는 불리함.
- GMAB옵션은 연금개시 전 적립금에 대해 특정금액을 보증하는 것이며, WB보증옵션과 GMIB옵션은 적립금을 소득흐름으로 전환시키는 유동화단계에서 최저소득을 보증하는 것임.
- GMAB옵션은 보험료 납입 후 최소 5~15년의 거치기간이 존재함.

**<표 5> 최저생존보증옵션 비교**

|        | WB보증                                                                 | GMIB                                                        | GMAB               |
|--------|----------------------------------------------------------------------|-------------------------------------------------------------|--------------------|
| 보증의 본질 | 납입보험료의 일정비율을 확정기간 또는 생존기간 동안 부분인출(partial withdrawal)을 통해 지급하는 것을 보증 | 연금화를 조건으로 확정기간 동안 또는 종신토록 계약 시의 약정이율이 부리된 보증금부를 분할지급할 것을 보증 | 연금개시시점의 최저투자적립금 보증 |
| 보증의 목적 | 최저소득흐름보장                                                             | 최저소득흐름보장                                                    | 최저투자적립금보장          |
| 연금개시 전 | 특별계정                                                                 | 특별계정                                                        | 특별계정               |
| 연금개시 후 | 특별계정                                                                 | 일반계정                                                        | 일반계정(예외 있음)        |
| 자산통제   | 지속적 자산통제가능                                                           | 연금개시 전 자산통제가능                                               | 연금개시 전 자산통제가능      |
| 유동성    | 인출의 빈도와 속도 조절가능                                                      | 계약 시 정해진 연금연액만을 수령                                          | -                  |
| 거치기간   | 0~5년                                                                 | 7~10년                                                       | 5~15년              |
| 보증비용   | 적립금의 40~85bps                                                        | 적립금의 50~85bps                                               | 적립금의 25~50bps      |
| 헷징수단   | 파생상품                                                                 | 재보험                                                         | 파생상품               |

주 : 미국에서 통상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근거하여 작성됨.  
 자료 : Gilbert et al.(2007), Lombardo et al.(2008), Milliman(2006).

### 3. 인출보증옵션 활성화 필요성

인출보증옵션부 변액연금의 활발한 공급이 필요한 이유는 ① 고령화 추세, ② 자조노력을 통한 노후준비를 요하는 사회분위기 형성과 전략적 상속동기 약화 추세, ③ 투자보다는 소비 측면을 강조한 판매포인트 설정필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2008년 12월 기준, 국내에서는 최저사망보증(GMDB: 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과 GMAB옵션의 혼합형이 주로 공급되고 있으며, 3개 생보사가 WB보증옵션의 변액연금을 판매하고 있는데 WB보증옵션의 실제 판매량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GMAB옵션부 변액연금상품의 일부는 연금수령방법(분할수령 또는 일시금 수령)을 계약자의 선택사항으로 두지 않은 채 분할수령을 조건으로 함.

#### 가. 인구구성의 변화: 고령화 추세

□ 고령자일수록 미래가 아닌 현재의 소득보장 수요가 높기 때문에 연금개시 전 장기의 거치기간을 요하는 GMAB 또는 GMIB옵션보다는 WB보증옵션을 선호함.

○ 미국의 경우 WB보증옵션을 선택하는 계약자들은 주로 60대 초반으로, 타 최저보증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에 비해서 계약자 평균연령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WB보증옵션의 짧은 거치기간과 높은 현금유동성에 기인함.

**<표 6> 최저보증옵션별 계약자와 계약 특성 (미국)**

|         | GLWB      | GMWB      | GMIB      | GMAB     |
|---------|-----------|-----------|-----------|----------|
| 계약자평균연령 | 62세       | 61세       | 58세       | 56세      |
| 평균가입금액  | \$114,085 | \$108,875 | \$119,035 | \$84,747 |
| 평균보증비용  | 63bps     | 53bps     | 66bps     | 43bps    |

자료 : Drinkwater (2009).

□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른 잠재적 수요 확대요인을 반영하여, 고령자들을 판매 목

표대상으로 설정하여 거치기간이 짧고 현금유동성이 높은 일시납 WB보증유선부 변액연금의 활발한 공급이 필요함.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2005)에 따르면,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인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전체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가운데, 종목별로 살펴볼 때도 고령자들은 연금과 같은 저축성보험보다는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에 더 많이 가입했으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을 감안할 때, 연금상품의 판매 목표대상을 수정하고 고령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금상품을 소개할 필요가 있음.
- 2007년 기준 연금보험 전체신계약건수 대비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신계약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65%로, 고령자들의 연금보험 가입현황이 저조한 것으로 보건대, 기존의 연금보험상품들이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표 7> 60세 이상 고령자의 연금보험과 변액보험 가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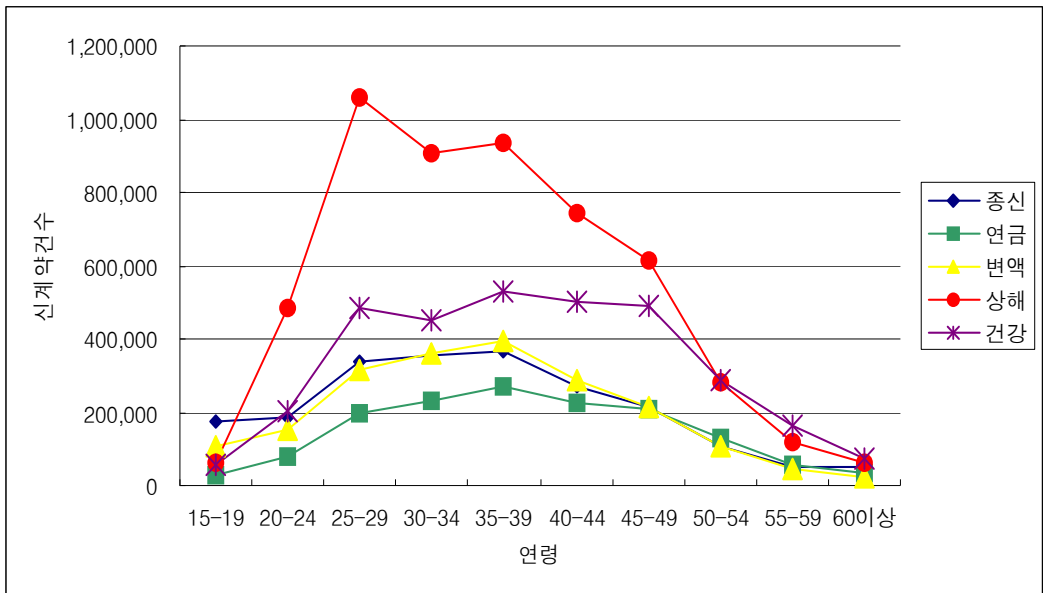
(단위: 건)

|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
| 연금보험 | 19,076<br>(2.65%)* | 16,657<br>(2.51%) | 17,083<br>(1.94%) | 22,813<br>(1.66%) | 31,858<br>(2.17%) |
| 변액보험 | 1,028              | 3,548             | 8,398             | 14,134            | 21,640            |

주 : 1) 변액보험은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변액종신을 포함함.

2) \*(60세 이상 고령자의 연금보험 신계약건수)/(연금보험 전체 신계약건수)

&lt;그림 2&gt; 연령별 주요종목의 신계약건수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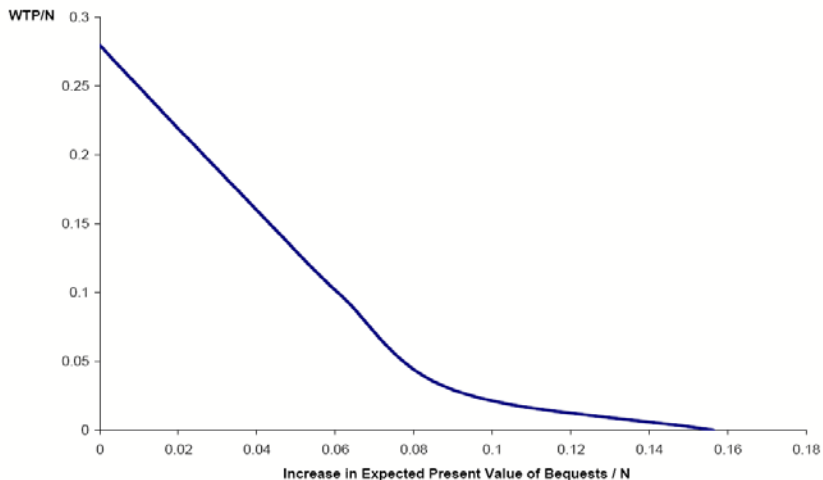
#### 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 상속동기 약화추세

- 자조노력을 통한 노후대비를 요하는 사회분위기 형성과 전략적 상속동기(strategic bequest motive) 약화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과 연금에 대한 수요 증가를 유발하는데, 이는 WB보증읍선부 변액연금의 수요 증가를 의미함.
- 장수리스크 등을 헛지하고 지속적인 생애 소득흐름을 보장하는 연금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산에 대한 통제력 상실, 낮은 현금유동성, 상속동기 등은 연금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 특히, 노후에 잦은 질병으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 지출 등 예기치 않은 미래의 지출 (consumption shock)에 대한 우려는 유동성이 없는 연금에 대한 수요를 더욱 감소시킴.
- 이에, 높은 현금유동성과 소득흐름을 보장하는 연금은 고령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연금상품임.
- 상속동기는 크게 이타적 상속동기(altruistic bequest motive)와 전략적 상속동기

로 분류할 수 있는데,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전략적 상속동기가 사라지거나 줄어들어 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이타적 상속동기가설: Tomes(1981)는 상속이 이타적인 부모의 무조건적 행위임을 주장함.
- 전략적 상속동기가설: Bernheim et al.(1985)은 노부모가 소유한 상속가능한 재산의 규모와 자녀들이 부모에게 쏟는 정성(attention)사이에 양(+)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상속이 잠재적 상속인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전략적 행위임을 주장함.
- 전략적 상속동기가설에 따르면, 상속대신 연금을 구입하면 노후에 자식의 관심과 정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매력적인 연금상품이 판매된다고 할지라도 전략적 상속동기를 가진 노인들의 연금구입가능성은 낮음.

<그림 3> 상속동기와 연금수요



주 : X축은 상속동기의 강도를 나타내며, Y축은 연금으로 인한 후생증진을 나타냄.

자료 : Lockwood (2009).

□ 국내에서도 자조노력을 통한 노후대비가 늘어남에 따라 전략적 상속동기가 약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WB보증읍선부 변액연금의 활발한 공급이 필요함.

- 「2004년도 전국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응답자의 88.5%가 자녀들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소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는데, 이는 노부모의 상속가능한 형태의 재산소유가 자식의 노부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략적 상속동기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드러냄.
- 또한 동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응답자의 4.7%가 자신을 수발·간호한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 이타적 상속동기 뿐만 아니라 전략적 상속동기가 존재함을 입증함.

**<표 8> 재산상속방식**

| 모든자녀에게<br>균등상속 | 장남에게<br>가장많이<br>상속 | 장남에게만<br>상속 | 수발간호한<br>자녀에게상속 | 가장마음에<br>드는자녀에게<br>상속 | 경제적사정이<br>가장나쁜<br>자녀에게상속 | 아들에게만<br>상속 | 기타    |
|----------------|--------------------|-------------|-----------------|-----------------------|--------------------------|-------------|-------|
| 27.1%          | 11.6%              | 30.3%       | 4.7%            | 3.2%                  | 7.9%                     | 4.8%        | 10.4% |

주 : 향후 재산을 상속할 의향이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그러나 노인의 생활비마련 방법에 있어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전략적 상속동기의 결과로서 보여지는 자녀들의 정성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불확실해짐에 따라 이타적 상속동기는 물론 전략적 상속동기마저도 약화되고 있는 추세임.

<표 9> 60세 이상 노인의 생활비마련 방법 추이

(단위: %)

| 연령별    | 본인 및 배우자 부담 |       | 자녀, 친척 |       | 정부 및 사회단체 |       |
|--------|-------------|-------|--------|-------|-----------|-------|
|        | 2001년       | 2007년 | 2001년  | 2007년 | 2001년     | 2007년 |
| 60~64세 | 79.1        | 83.2  | 19.0   | 14.9  | 1.8       | 1.9   |
| 65~69세 | 62.1        | 68.4  | 34.4   | 27.5  | 3.2       | 4.0   |
| 70~79세 | 35.4        | 48.2  | 58.7   | 45.3  | 5.7       | 6.4   |
| 80세 이상 | 14.7        | 20.0  | 77.8   | 73.3  | 7.6       | 6.5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2008년도 전국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다. 변액연금의 판매포인트 조정 필요

- 연금상품이 종신동안 소비를 가능하게 해주는 소비측면으로 표현될 때는 연금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나 투자측면으로 표현되었을 경우에는 선호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변액연금시장의 궁극적 확대를 위해서는 투자보다는 소비측면에 판매포인트를 둔 WB보증옵션부 변액연금상품의 활성화가 필요함.
- Brown et al.(2008)은 연금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연금을 소비측면과 투자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의함.
  - 소비측면이란 일정한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결과에 중점을 둔 것이며, 투자측면이란 리스크-수익과 같은 매개적 투자결과에 초점을 둔 것임.
- 동 자료에 따르면, 연금지급기간 중 사망가능성은 연금을 위험도가 높고 위험대비 효용이 낮은 금융상품으로 분류시키기 때문에, 투자측면에서 볼 때 연금은 소비자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상품이 아님.
  - Brown et al. (2008)에 소개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연금의 소비측면이 부각될 경우 응답자의 72%가 예·적금보다는 연금을 선호한 반면, 연금의 투자측면이 부각될 경우 응답자의 21%만이 연금을 선호함.
- 변액연금이 국내에 소개된 초창기에는 보험회사들의 판매포인트가 소비측면보다는 투자측면에 있었고, 이러한 판매포인트와 가장 부합한 것이 바로 연금개시전 적립금에 대해 특정금액을 보증하는 GMAB옵션이었음.
- 그러나 변액연금시장을 궁극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마케팅과 상품설계 시 변액연금의 투자보다는 소비측면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Bernheim, B. Douglas, Shleifer, Andrei, Summer, Lawrence H. (1985),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3. No. 6.
- Brown, Jeffrey R. (2007), "Rational and Behavioral Perspectives on the Role of Annuities in Retirement Planning," NBER Working Paper 13534.
- Brown, Jeffrey, Kling, Jeffrey, Mullainathan, Sendhil, Wrobel Marian (2008), "Why Don't People Insure Late Life Consumption? A Framing Explanation of the Under-Annuitization Puzzl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98:2.
- Drinkwater, Matthew (2009), "Guaranteed Living Benefits Utilization: 2007 Data - Member Report," LIMRA International.
- Gilbert, Charles, Ravindran, K., Reitano, Robert R. (2007), "Results of The Survey on Variable Annuity Hedging Programs for Life Insurance Companies", Society of Actuaries.
- Lockwood, Lee (2009), "Bequest Motives and the Annuity Puzzle", Mimeo.
- Lombardo, Kendrick (2008), "Variable Annuity Policyholder Behavior: Are We Out of the Dark Yet?," Society of Actuaries.
- Milevsky, Moshe A. and Salisbury, Thomas S. (2005), "Financial Valuation of Guaranteed Minimum Withdrawal Benefits," Mathematics and Economics.
- Milliman (2006), "Target Marketing: The Watchwords for Capturing Retirement Income Opportunities," Milliman Research Report.
- Tomes, Nigel (1981), "The Family, Inheritance, an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equa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9.

◆ 퇴직연금 지배구조와 감시기능체계 개선방안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1. 감시기능체계의 개선 필요성 증대

근로자와 수탁자(사용자, 수탁기관, 운용기관)간의 이익 상충문제(본인·대리인문제)를 해소하여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탁자책임, 수탁자의 자격 및 적격요건, 제3자적 감시기능, 수탁자의 보고·통지의무 등과 같은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요구됨.

-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조기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수탁기관을 포함한 수탁자들이 근로자 니즈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있는가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감시기능체계 개선이 요구됨.
- 그 이유는 연금재정 적립의무를 강화하더라도 수탁자를 적절하게 통제·관리할 수 있는 감시기능체계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와 근로자간에 이익상충문제가 발생, 근로자 수급권보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임.
- 따라서 감시기능과 관련이 있는 수탁자책임, 자격 및 적격조건, 내부통제시스템, 제3자적 감시기능(협회의 감시장치), 보고 및 통지의무 등이 근로자간의 이익상충문제 해소와 수급권보호차원에서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 여기에서는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퇴직연금 기능을 보다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퇴직연금 지배구조상의 감시기능체계를 OECD와 비교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2. 지배구조별 감시기능 체계

퇴직연금 지배구조에서는 기업지배구조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경영과 소유의 분리문제)이외에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자와 수탁기관간, 근로자와 운용기관간의 이익상충문제 등 다양한 퇴직연금 지배구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퇴직연금 지배구조(계약형 지배구조, 기금형 지배구조) 특성을 고려한 이익상충문제 해소 장치마련이 요구됨.

### 가. 지배구조와 근로자 이익상충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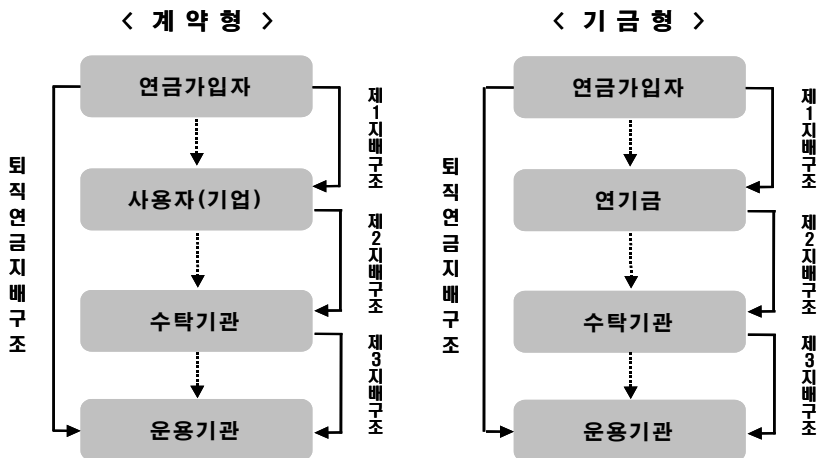
- 퇴직연금 지배구조 문제는 기업 지배구조상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 이외에 수탁자(기업, 수탁기관 등) 이익과 근로자 이익이 충돌하는 현상도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문제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이에 퇴직연금 지배구조 문제는 기업지배구조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 이외에 수탁자와 근로자간 이익 상충문제 해소를 위한 장치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즉, 기업지배구조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소유자 자산의 보관장치, 경영자에 대한 충실의무 부과, 경영자에 대한 제3자 감시장치 등 이익충돌 해소장치 이외에 수탁자와 근로자 간의 이익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요구됨.

### 나. 지배구조 형태별 감시기능체계 특징

- 퇴직연금은 연금 가입자인 근로자의 소유이므로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을 연금자산의 운용에 반영시키는 절차 및 시스템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주요한 과제임.
-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자금흐름에 따라 연금가입자로부터 연금금, 수탁기관, 최종 운용기관에 이르기까지 3단계의 지배구조를 형태를 띠고 있음.

- 기금형 퇴직연금지배구조에서 제 1지배구조는 연금가입자가 연금자원을 연기금에 적립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책임을 지고 있는 연기금과 관련된 지배구조임.
- 제 2지배구조와 제 3지배구조는 각각 연기금이 자금 운용을 위임한 수탁기관과 관련된 지배구조, 수탁기관이 자산운용 대상으로서 상품운용기관과 관련된 지배구조를 나타냄.

<그림 1> 계약형 및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sup>1)</sup>



- 우리나라는 노·사간 합의인 규약을 근거로 기본 제도가 설정되나, 실질적인 제도운영은 수탁기관인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계약형 지배구조 형태임.
- 계약형 지배구조에서는 근로자 이익보호를 위해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철저히 요구함.
- 사용자가 근로자 이익에 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장치의 마련과

1)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회사와는 별도로 독립된 퇴직연금기금을 신탁형태로 설치하는 운영하는 지배구조를 의미하며,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연금제도에 대한 관리 및 기금 운용 등을 일괄하여 금융기관에게 위탁하는 지배구조를 의미함.

더불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3. OECD 지배구조 기준 및 감시기능체계 운영 사례 : 미국, 영국, 일본 중심

퇴직연금 운용 이해 관계자가 다양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운영전반에서 근로자의 이익 상충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선진국의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음.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한 감시기능 수준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보고 및 통지의무 등과 같은 시장기능에 의한 감시기능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 OECD 지배구조 기준

- OECD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기준<sup>2)</sup>은 연기금 등이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하도록 권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즉, 수탁기관 책임명시, 연기금운용자의 책임강화, 연기금운용자 자격기준강화, 자문 및 전문가 선임, 독립적인 감사, 보험계리사의 선임,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보고체계의 확립, 공시기능강화 등을 지배구조 기준으로 제시함.
- OECD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기준은 감시기능체계 면에서 수탁자책임, 자격 및 적격 기준, 제3자적 감시기능 (협회의 감시기능장치), 내부통제시스템, 보고 및 통지의무, 공시 의무 등으로 분류 가능함.

2) OECD 지배구조 기준(Guidelines for Pension Fund, Governance)은 OECD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Committee and Working Party on Private Pensions에서 작성되었으며, 2005년 4월에 OECD 위원회에서 채택

<표 1> OECD 지배구조 기준상의 감시기능 유형

| OECD의 지배구조 기준 <sup>1)</sup> | 감시기능 유형   |
|-----------------------------|-----------|
| 수탁기관의 책임명시                  | 수탁자 책임    |
| 기금운영자의 책임강화                 |           |
| 연기금운용자의 자격기준 강화             | 자격 및 적격기준 |
| 자문 및 전문가 선임                 | 제3자적 감시기능 |
| 독립적인 감사                     |           |
| 보험계리사의 선임                   |           |
| 적절한 내부통제 기준마련               | 내부통제시스템   |
| 보고체계의 확립                    | 보고 및 통지의무 |
| 공시 강화                       | 공시 의무     |

주 : 1) OECD 지배구조 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은 “OECD, Guidelines for pension fund governance, April 2005.”를 참조.

#### 나. 감시기능체계 유형별 운용사례: 미국, 영국, 일본 중심

##### □ 수탁자 책임

- 영국은 운영과 감시 책임의 명확한 구분, 수탁기관의 법적형태, 내부지배구조, 목적 등을 법규에 명시하고 있음.
  - 연기금 운영자의 책임강화 측면에서 계약이행의무 및 수급자 최대이익을 보호할 궁극적 책임(아웃소싱 모니터링 및 감시책임 등)이 연기금 운영자에게 있다고 규정함.
- 즉, 신탁수탁자, 사용자, 컨설턴트 등 수탁자별로 수탁자 관련 규정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그 책임 역시 엄격하게 부여되어 있음.
  - 특징적인 것은 영국의 경우 미국, 일본과 비교하여 수탁자책임 부여 측면에서 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임.

##### □ 자격 및 적격기준

- 영국은 연금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 수탁자의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있음.
  - 연금 및 신탁 관련 법률, 투자 및 펀드 관련 전문지식은 DB형 및 DC형 수탁

자 모두에게, 연기금적립, 전략적 자산배분 관련 전문지식은 DC형 수탁자에게 요구함.

- 특히, DC형 수탁자는 가입자의 투자위험 부담, 투자선택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 제 3자적 감시기능

- 수탁기관이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 전문가 자문 및 선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 사용자 등은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고 수탁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또한 미국은 연금제정 건전성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등록된 보험계리사의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보험계리사의 확인을 요구함.
  - 영국은 또한 보험계리사로 하여금 책임준비금 적립, 연금계리보고서 작성 등 연금제정과 관련된 계리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함.

#### □ 내부통제 시스템

- 영국 등은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연기금 운영과 감시책임이 있는 모든 관계자가 연기금운용목적에 부합하게 행동하고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영국은 연금제도 운영과 관리에 수반되는 절차를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통제됨.
-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한 통제리스크는 사기, 기업 측의 적립상태, 투자리스크, 아웃소싱기관의 법규위반·경영실패, 부적절한 제도 관리, 컴퓨터시스템 오류 등임.

#### □ 보고 및 통지의무

- 영국 등은 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사항 발견시,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신고의무를 두고 있으며 감독당국은 보고된 정보를 감독활동에 활용하고 있음.
  - 보고를 요하는 중대한 사항은 부정, 연기금의 불법 사용, 투자정책 오류, 부적절한 기록관리, 운영실패 등임.
- 또한 영국은 보고자들이 보고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신호등 체제(traffic light

framework)를 두고 있으며 위반상태가 적색이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어 감독 당국에게 반드시 보고토록 함.

- 퇴직연금 관련 중요 사건발생에 대한 감독규정을 제정하여 제도 관련 사건은 수탁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의무화함.

□ 공시의무

- 수탁자는 가입자격이 부여된 근로자의 범주 및 가입방식, 적격조건, 연금수급연령 도달전 퇴직시 연금 재가입 여부, 사용자의 각출금 계산 방식 등과 같은 기본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함.
- 상품 및 가격 공시는 연금상품에 대한 가격비교테이블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수료도 자사 최고 및 업계 평균을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함.
- 수수료 공시: 확정기여형은 상품을 가입자가 선택하고, 수수료 역시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올바른 선택을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요구됨.

다. 선진국의 감시기능체계 특징

- 퇴직연금제도의 운영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어떠한 감시기능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느냐 등에 따라 감시기능체계상의 특징이 존재함.
- 퇴직연금 운영 목적을 제도적 장치에 의한 근로자 이익보호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시장기능 변화에 의한 감시기능체계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질 경우 감시기능 수단도 달라질 수 밖에 없음.
- 근로자의 이익 상충 문제는 퇴직연금 운용 이해관계자가 다양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선진국의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음.
- 수탁자책임 중심에서 제 3자적 감시기능 강화, 보고 및 통지 의무 등과 같은 시장중심의 감시기능체계로 전환됨.
- 선진국의 경우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한 감시기능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보고 및 통지 의무, 공시의무 등과 같은 시장기능에 의한 감시기능 강도는 높은 수준임.

- 즉, 시장기능에 의해 근로자의 이익상충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배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시기능 대상도 수탁기관 이외에 수탁자까지 확대되고 있음.

#### 4. 감시기능체계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감시기능 체계는 OECD 기준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사용자에게 대한 수탁자책임이 미흡하다는 점, 자격 및 적격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 보험계리사 등 제3자적 감시기능이 취약하다는 점, 최소한도의 보고 및 통지의무 규정만 있을 뿐 세부적인 규정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가. 감시기능체계 현황

- 우리나라는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형태를 띄고 있어 법상 별도 수탁자를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감시기능 수준은 낮음.
- 즉, 연기금운용을 수탁기관에 일임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별도의 감시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함.
- 또한 미국과 같은 퇴직급여보장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도산시 이에 대한 보장장치가 없으며 보험계리사나 외부감사인에 대한 내용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확정급여형에서 연금제리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연금제리에 대한 정의나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운영을 일괄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책임부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제도운용의 직접적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및 위탁운

용에 상당 부분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사용자의 수탁자책임이 더욱 요구됨.

#### 나. 감시기능체계 문제점

- ☐ 수탁자책임이 퇴직연금사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책임, 의무, 권한 등과 관련된 규정은 미흡함.
  - 퇴직연금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자문 및 전문가 선임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 또한 보험계리사의 역할제고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연기금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없음.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최소한도의 보고 및 통지의무 규정만 있을 뿐 세부적인 규정자체가 없고, 공시의무는 퇴직연금 감독차원에서 최소한도의 공시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음.

&lt;표 2&gt; 우리나라와 OECD 감시기능체계 비교

| 구 분                   | 권고 사항               | 권고 내용                                                                                                                                                                       | 우리나라의 수준                                                                                                                                        |
|-----------------------|---------------------|-----------------------------------------------------------------------------------------------------------------------------------------------------------------------------|-------------------------------------------------------------------------------------------------------------------------------------------------|
| 지배<br>구조에<br>대한<br>권고 | 수탁기관의<br>책임 명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과 감시의 책임이 명확히 구분</li> <li>• 수탁기관의 법적형태, 내부지배구조, 목적 등을 정관에 명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연금사업자 중심의 규정</li> <li>• 책임, 의무, 권한 등에 대한 규정 미흡 (계약형에서는 양자의 구분 모호)</li> </ul>                         |
|                       | 연기금 운용자의<br>책임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자는 계약충실히행 및 수급자 최대이익을 보호할 공극적 책임</li> <li>• 아웃소싱 모니터링 및 감시책임</li> </ul>                                                          |                                                                                                                                                 |
|                       | 연기금 운용자의<br>자격기준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수준의 정직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기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전성 측면에서 허가요건 등은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li> <li>• 금융권 통일성 강조로 전문성 수준은 대체로 낮음</li> </ul>                          |
|                       | 자문 및 전문가<br>선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부족 시 감독기관이 전문가 자문 및 선임 요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규정 및 내용 전무</li> </ul>                                                                              |
|                       | 독립적 감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기관, 연기금운용자 및 사용자는 독립적인 감사 선임 (정기감사 수행)</li> <li>• 수탁기관이 적절한 조치 미이행시 중대한 사항에 관련 관리자에게 보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연금 관련 독립적인 감사 선임은 없으며 기존감사가 수행</li> <li>• 관리자에 대한 보고 및 신고규정 거의 부재 (단, 공시보고 등 극소수 보고사항 존재)</li> </ul> |
|                       | 연금계리사<br>선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B에 대해 연기금은 운영자로 계리사선임</li> <li>• 연기금 운영자가 적절한 조치 미이행시 지체 없이 감독기관에 보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계리사제도 부재(현재 보험계리사 등이 아닌 비전문인력도 DB업무담당)</li> <li>• 근퇴법 및 감독규정에 구체적 내용이 없어 OECD수준에 미흡</li> </ul>       |
|                       | 적절한 내부통제<br>기준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기금 운영과 감시 책임이 있는 모든 자가 연기금운용목적에 부합하게 행동하고 법률을 준수할 수 있는 내부통제 마련</li> <li>• 성과평가, 보상체계, 정보프로세스, 리스크관리 절차 등 조직과 운영 절차에 포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규정 및 내용 없음</li> </ul>                                                                              |
|                       | 보고체계 확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과적이고 적시적인 보고채널 마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무부처와 협의사항만 존재</li> <li>• 규정/ 지침이 아닌 지시에 의존</li> </ul>                                                 |
|                       | 공시 및 규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기금운용자는 모든 당사자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시</li> <li>• 가입자를 위한 법정구제장치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연금사업자 중심 정보 제공</li> <li>• 감독규정상 인터넷 공시의무</li> <li>• 법정구제장치와 관련 규정 없음</li> </ul>                      |

## 5. 감시기능체계 개선방안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 개선은 현재와 같은 계약형 지배구조에서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기금형 지배구조에서 보다 요구되는 점에서 선진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에 대비한 감시기능 장치의 마련이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감시기능체계를 벤치마킹하면서 감시기능 관련법규의 체계화, 사용자 관련 규정강화, 감시자의 기능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규정마련, 보고·통지·공시의무 강화 등이 근로자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감시기능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가. 기본방향

- 우리나라는 계약형 지배구조형태로 수탁기관과 사용자간의 불공정계약에 의해 계약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자와 수탁기관간의 이익충돌문제를 감소시키는 제반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 개선은 계약형 지배구조에서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기금형 지배구조에서 보다 요구된다는 점에서 선진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에 대비한 감시기능 장치마련의 마련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선진국의 감시기능체계를 벤치마킹하면서 보험계리사 및 외부감시자의 역할강화, 보고 및 신고의무, 공시 강화 등이 근로자 이익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즉, 감시기능 관련 법규의 체계화, 사용자 책임 등에 관한 규정강화, 외부감사인, 보험계리사 등 감시자의 역할 강화,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규정 마련, 근로자에 대한 보고·통지·공시의무 재정비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나. 개선과제

### □ 감시기능 관련법규 체계화

- 선진국처럼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와 권익보호차원에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 현행 관련 법률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감시기능과 관련된 규정이 OECD지배구조 기준에서 제시하는 수준으로 보완하거나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보고·통지·공시의무 강화 등을 통해 시장원리에 입각한 감시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감시기능체계 구축을 위한 감시기능수단 설정과 이에 대한 개선책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 □ 사용자 관련 규정 강화

- 사용자는 연금사업자의 선정 등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제도의 선택 및 연금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미흡함.
-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설정단계에서 설정이후의 단계까지 연금사무관리와 연금운영에 대해 사용자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음.
- 즉, 사용자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큰 반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책임은 매우 낮은 수준임.
- 따라서 제 3자를 선임하여 연금사무관리와 연금운영에 일차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연금의 설정단계이후의 사용자 역할을 축소시킬 필요성이 있음.
- 즉, 제 3자적 감시자에게 연금자산운용의 감시활동을 위임함으로써 퇴직연금지배구조의 3가지 요건(독립된 감시장치, 제 3감시자 선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이익충돌 해소장치)이 충족되도록 감시기능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감시자의 기능제고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는 소유자(연금수익권자인 근로자)를 위해 행동하는 독

립된 제 3자적 감시기능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음.

- 이는 근로자-사용자-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퇴직연금관계조차를 복잡한 법률관계로 보고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행위를 하는 제3자적 감시체계 도입을 유보하였기 때문임.
- 미국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 및 소유자와 연금사업자 사이의 이익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리사, 외부감사인 등과 같은 제 3자적 감시장치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즉, 보험계리사 및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역할부여 등을 통한 제 3자적 감시기능 강화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계리사 및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문화하여야 할 것임.

□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규정 마련

- 장기적으로 적절한 내부통제가 작동하여 법규 위반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규정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영국 등처럼 퇴직연금 감독규정<sup>3)</sup> 개정으로 수탁자의 의무로서 적절한 내부통제 메커니즘을 갖추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즉, 감독규정에 내부통제를 제도운영과 관리에 수반되는 절차와 제도, 운영과 관리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과 제도, 자산의 안전성을 위한 절차와 제도로 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고·통지·공시의무 강화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개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시장기능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보고·통지·공시의무 관련 규정임.
- 감독당국은 수탁자와 사용자로 하여금 계리적 가치평가, 각출금이 계획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여부,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을 필요성이 있음.

- 한 사용자, 수탁기관 등 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생시 감독당국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신고의무제 도입과 보고자들이 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신호등체제 도입검토도 요구됨.
- 퇴직연금 관련 중요 사건발생에 대한 통지 관련 감독규정을 정비하여 제도 관련 사건과 사용자 관련 사건에 대해 수탁자에게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함.
- 공시의무측면에서는 적격조건, 연금수급연령 도달전 탈퇴시 재가입 여부, 사용자의 각출금 계산 방식, 추가각출 존재시 각출 방식, 연금수급연령, 급여 종류 및 계산방식,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을 기본 공시로 설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경제금융 동향

---

### 1. 세계 경제

2008년 4/4분기 세계경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 지속과 실물경제의 급속한 침체에 영향을 받아 선진국은 대폭적인 마이너스 성장, 신흥개도국은 대폭적인 성장 둔화를 기록함.

향후 경기부양정책의 가시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2009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며,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2010년 후반에 들어가서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물경제가 빠르게 침체국면으로 치닫고 있음.
  -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에 의한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기업이나 개인 관련 신용경색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주요 금융기관들은 신흥개도국에 대한 투자 및 융자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 중동, 동유럽 등에서는 대규모 자금 유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IMF 금융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세계경제 침체를 가속시키고 있음.
- 선진국 경제의 가파른 하락세, 신흥개도국의 대폭적인 성장률 둔화 등 세계 각국 경제의 동시적 불황이 가시화되면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2010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지난 2008년 4/4분기 중 경제성장률이 십수년만에 최악의 감소세<sup>4)</sup>를 기록하였고,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도 금융시장 불

---

4) OECD는 작년 4/4분기 OECD 평균 실질GDP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7.1%로 추정하고 있는

안과 선진국 경제의 침체 영향으로 예년의 성장을 크게 하회하면서 세계 신흥 경제의 침체가 가속되고 있음.

- 특히, 미국경제는 금융기관의 경영악화, 신용경색의 확대, 주택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2009년에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한 후 2010년에 들어 회복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유럽 선진국도 대외수요의 감소, 국내 소비심리의 냉각 및 금융기관 부실 등이 겹치면서 2009년 마이너스 성장 이후, 2010년에는 거의 0%에 가까운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 대외의존도가 높은 일본경제는 2009년에도 구미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수출 감소 지속과 내수 부진이 가세하면서 대폭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한 후, 2010년 후반에 들어서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경기회복도 기본적으로는 선진국 경제상황에 크게 의존할 것이므로 조기 경기회복의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임.
- 한편, 세계경제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이 확산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시장 간섭과 보호주의 성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른 글로벌 수요둔화로 교역규모가 급감하면서 많은 국가에서는 경기회복과 경제안정을 위한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 보조금, 투자·무역 제한 등 다양한 지원과 조치들이 단행되고 있음.<sup>5)</sup>
  - 특히,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자유 시장경제체제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구제금융을 통한 자국의 핵심산업 보호, 통화가치 하락 유도, 자국의 재정정책 확대 없이 타국의 재정부양책에 의존하려는 형태 등 도덕적 해이가 농후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우려되고 있음.
  - 이에 G20의 재무장관회의나 세계금융정상회의 등에서는 동시적 경기부양책 실시,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 방지 및 개방된 무역과 투자 활동의 활성화 등을 향후 주요 실천 과제로 채택함.

데, 이는 거의 유래가 없는 최악의 수준임(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March 2009).

- 5) 세계은행의 2009년 3월 17일 공표에 따르면 작년 11월 이후 G20국가 중 17국가 및 지역이 47건의 무역제한 조치를 단행하였고, 특정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23건, 관세인상 17건, 비관세장벽 4건, 수입금지 3건 등이 행해짐(일본정책투자은행, *Monthly Overview*, 2009.4)

가. 미국 경제

2008년 4/4분기 실질 GDP는 수출의 감소세 전환, 설비 · 주택투자의 감소세 확대 등으로 전분기 대비 -6.3%로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미국경제는 17년간의 장기 성장기를 마감하고 2009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며, 2010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2011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장기적으로는 2.5%대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됨.

<최근 동향 및 전망>

□ 미국의 4/4분기 실질 GDP는 수출, 민간소비, 설비투자, 주택투자의 감소세로 인하여 -6.3%이라는 대폭적인 하락세를 기록함.

○ 이러한 GDP감소에는 상품수출과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주택투자가 지속적이면서도 대폭적으로 감소한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함.

□ 2008년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도 수출, 민간소비, 설비투자, 주택투자의 하락세로 인해 2007년(2.0%)의 절반수준인 1.1%로 크게 둔화됨.

○ 각 부문별로 둔화추세를 살펴보면 민간소비부문 중 상품소비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서비스 소비지출 증가를 상쇄시켰고, 설비투자부문은 소프트웨어 설비투자가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대외부문에서는 수출의 감소와 수입의 감소세 전환이 이루어졌고, 정부지출에서는 주정부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09년 미국의 실질GDP는 1991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며, 2010부터는 회복되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정점에 도달하고, 2011년 이후에는 2.5%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됨.

○ FOMC<sup>6)</sup>는 2009년 실질 GDP가 작년 10월의 전망치보다 1.1%p 낮은 -0.5~-1.3%에 이를 것이며, 회복기에 들어서는 2010년에는 2.5~3.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함.

---

6)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경제악화가 시급해짐에 따라 2009년 2월 18일 이례적인 장기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본 전망은 향후 경제위기가 재발하지 않고, 고용 유지와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정부정책이 수반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짐.

- 또한 본격적인 회복기인 2011년에는 3.8~5.0%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며, 이후 장기적으로는 자연실업률이 4.8~5.0%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경제성장률도 이에 준하는 2.5~2.7%대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lt;표 1&gt; 미국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연율 %)

|       | 2007  |       |       | 2008  |       |       |       |       |
|-------|-------|-------|-------|-------|-------|-------|-------|-------|
|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실질GDP | 4.8   | -0.2  | 2.0   | 0.9   | 2.8   | -0.5  | -6.3  | 1.1   |
| 민간소비  | 2.0   | 1.0   | 2.8   | 0.9   | 1.2   | -3.8  | -4.3  | 0.2   |
| 설비투자  | 8.7   | 3.4   | 4.9   | 2.4   | 2.5   | -1.7  | -21.7 | 1.6   |
| 주택투자  | -20.6 | -27.0 | -17.9 | -25.1 | -13.3 | -16.0 | -22.8 | -20.8 |
| 수출    | 23.0  | 4.4   | 8.4   | 5.1   | 12.3  | 3.0   | -23.6 | 6.2   |
| 수입    | 3.0   | -2.3  | 2.2   | -0.8  | -7.3  | -3.5  | -17.5 | -3.5  |
| 정부지출  | 3.8   | 0.8   | 2.1   | 1.9   | 3.9   | 5.8   | 1.3   | 2.9   |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09.3.27(확정치)

&lt;표 2&gt; 미국 경제 주요지표

(단위: 전기대비 %)

|                        | 2007  | 2008   | 2008  |       |       |        |       |       | 2009  |      |
|------------------------|-------|--------|-------|-------|-------|--------|-------|-------|-------|------|
|                        | 연간    | 연간     | 1/4   | 2/4   | 3/4   | 4/4    | 11월   | 12월   | 1월    | 2월   |
| 실업률                    | 4.6   | 5.8    | 4.9   | 5.3   | 6.0   | 6.9    | 6.8   | 7.2   | 7.6   | 8.1  |
| 비농업취업자증감 <sup>1)</sup> | 1,152 | -3,078 | -338  | -458  | -624  | -1,658 | -597  | -681  | -655  | -651 |
| 소비자물가증가율 <sup>2)</sup> | 2.8   | 3.8    | 4.1   | 4.4   | 5.3   | 1.6    | 1.1   | 0.1   | 0.0   | 0.2  |
| (근원 소비자물가)             | 2.3   | 2.3    | 2.4   | 2.3   | 2.5   | 2.0    | 2.0   | 1.8   | 1.7   | 1.8  |
| 생산자물가증가율 <sup>2)</sup> | 3.9   | 6.4    | 7.2   | 7.6   | 9.5   | 1.4    | 0.2   | -1.2  | -1.3  | -1.6 |
| (근원 생산자물가)             | 2.0   | 3.4    | 2.5   | 3.0   | 3.8   | 4.3    | 4.1   | 4.3   | 4.2   | 3.9  |
| 소매·식료품서비스판매            | 4.2   | -0.4   | -0.3  | 0.7   | -1.3  | -7.1   | -2.4  | -3.1  | 1.8   | -0.1 |
| 주택착공호수증가율              | -26.1 | -32.8  | -8.6  | -2.7  | -14.6 | -24.6  | -14.6 | -14.8 | -14.5 | 22.2 |
| ISM제조업지수               | 52.2  | 45.5   | 49.0  | 49.4  | 39.6  | 34.3   | 36.6  | 32.9  | 35.6  | 35.8 |
| 산업생산지수증가율              | 1.7   | -1.8   | 0.4   | -3.4  | -8.8  | -12.1  | -1.3  | -2.4  | -1.9  | -1.4 |
| 산업생산가동률                | 81.0  | 78.2   | 80.7  | 79.7  | 77.6  | 74.9   | 75.2  | 73.3  | 71.9  | 70.9 |
| 소비자신뢰지수 <sup>3)</sup>  | 103.4 | 58.0   | 76.5  | 57.3  | 57.3  | 40.7   | 44.7  | 38.6  | 37.4  | 25.0 |
| 경기선행지수 <sup>4)</sup>   | 103.4 | 101.0  | 102.0 | 101.9 | 100.9 | 99.1   | 98.9  | 98.8  | 98.9  | 98.5 |
| 미시간대체감지수 <sup>5)</sup> | 85.6  | 63.8   | 72.9  | 59.6  | 64.8  | 57.7   | 55.3  | 60.1  | 61.2  | 56.3 |

주 : 1) 증가분 천명, 2) 전년동기대비, 3) 1985=100, 4) 2004=100, 5) 1966 Q1=100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 <고용과 물가>

- 2008년 4/4분기 실업률은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전분기대비 0.9%p 상승한 6.9%를 기록하였고, 2009년 1월에는 7.6%, 2월에는 8.1%까지 상승함.
- 2008년 비농업취업자수는 2007년 대비 420만 명이 감소하여 경기 침체 가속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는데,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실업 대응으로 2009년 1월과 2월에는 비농업취업자의 감소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FOMC는 2009년 연간 실업률을 금년 2월 수준과 비슷한 8.5~8.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소비자물가는 2008년 3/4분기에 5.3%까지 상승한 후 2009년 1월에는 0.0%로 급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월에는 에너지가격의 소폭 증가로 0.2%로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임.
- 2008년까지 2년 연속 2.3%의 증가율을 보인 근원 소비자물가는 2009년에는 경기침체발 수요 부족으로 인해 0.9~1.1%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 FOMC는 소비자물가가 근원 물가의 하향 안정화에 영향을 받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2009년에는 0.3~1.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함.

### <내수 부문>

- 2008년 12월 최저점을 기록한 소매·식료품서비스판매와 주택착공호수는 2009년에 들어서면서 미세하나마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내수부문의 호전이 기대되는 모습임.
- 2009년 1월 중 소매·식료품서비스판매는 구성 항목 전 부문에서 반등이 이루어져 1.8%를 기록하였고, 2월에는 자동차판매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문의 판매 증가에 힘입어 하락폭은 -0.1%에 그침으로써 내수부문에 대한 회복세가 기대됨.
- 2009년 2월의 주택착공호수 증가율(22.2%)은 최근 3년 중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존 주택매매와 거래가격도 2월 들어 상승 추세로 전환됨(각각 5.1%, 0.4%).
- 그러나 2008년 1/4분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미시간대체감지수와 컨퍼런스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는 2009년 2월에는 각각 역대 최저점을 기록하여 여전히 단기간 내 경기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생산 부문>

- 산업생산지수와 산업생산 가동률은 2008년 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4/4분기에는 -12.1%와 74.9%로 하락하였고, 2009년 2월 중에는 최저점을 기록함으로써 생산부문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임.
- 한편 제조업부문 경기 기대를 반영하는 ISM제조업지수는 2008년 4/4분기에 34.3을 기록하여 연중 최저 상황을 보였고, 2009년 1~2월에도 35.8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경기회복 수준인 50보다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생산부문의 단기간 내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는 2009년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10년부터는 실질 GDP 성장에 본격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미정부의 7,872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하였고 (2009.2.13), 재무부는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 매입을 골자로 하는 민간 투자프로그램(PPIP: Public Private Investment Program)을 200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PPIP는 2009년 2월 10일의 금융자산안정대책을 구체화한 세부계획으로서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50대50으로 공동 투자한 펀드로 부실자산을 매입하며, 정부는 구제금융예산 7,000억 달러 중 750억~1,000억 달러를 부실자산 매입에 사용할 예정임.
  - 부실자산 인수는 경매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메에금보험공사는 민간투자 매입자산의 6배까지 지급보증할 계획임.
- 한편, 금리인하 효과가 대략 1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다고 할 때 미연준의 마지막 기준금리 인하가 2008년말이었으므로 2009년 하반기부터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더구나 유가가 현재와 같이 낮은 상황에서는 금융 및 재정정책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2010년 초부터는 경기침체에 빠진 미국경제를 회복시킬 것으로 예상됨.

나. 유로지역 경제

2008년 4/4분기 실질 GDP는 수출부진 등으로 전기대비 1.5% 감소함으로써 유로 지역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는 경기침체 가속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유로지역 2009년 실질 GDP는 -1~-2%까지 하락할 전망이며, 2010년에는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나, 2%대로 전망되는 미국보다 낮은 0.2~0.5%의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최근 동향 및 전망>

- 유로지역의 2008년 4/4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1.5% 감소하여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경기침체가 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8년 연평균 성장률도 0.7%에 그치는 모습임.
- 4/4분기 실질 GDP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문은 수출로서 전기대비 6.5% 감소하면서 실질 GDP 감소 기여율이 -3.1%p에 이르며, 고정자본형성은 전기대비 -3.7%, 민간소비지출은 -0.3% 감소하여 실질 GDP 감소 기여율이 각각 -0.6%p와 -0.5%p에 도달함.
- 국가별로는 경제규모가 가장 큰 독일이 -2.1%의 역성장을 기록하였고, 프랑스는 예상 밖의 3/4분기 플러스 성장에서 마이너스 성장(-1.2%)으로 전환되었으며, 영국 역시 -1.5%로 감소하여 경기침체가 깊어졌고, 그밖에 이탈리아는 -1.8%, 스페인은 -1.0% 역성장을 시현함.
- 유로지역의 실질 GDP는 2009년에 -1~-2%까지 하락하고, 2010년에는 회복세로 전환되기는 하지만 0.2~0.5%의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EC<sup>7)</sup>는 유로지역의 실질 GDP가 2009년 -2.0%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며, 2010년에는 점진적인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0.5%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함.
- IMF<sup>8)</sup>는 2009년 유로지역의 실질 GDP를 -2.0%로 예측하였고, 회복기에 해당하

---

7) 2009년 1월 전망치

8) 2009년 1월말 전망치

는 2010년에는 0.2% 성장에 머물 것이라고 예측함.

- 국가별로 보면 독일(2009년 -2.5%, 2010년 0.1%), 프랑스(2009년 -1.9%, 2010년 0.7%), 영국(2009년 -2.8%, 2010년 0.2%)은 2010년에 0%대의 플러스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반면, 이탈리아(2009년 -0.6%, 2010년 -0.1%)와 스페인(2009년 -1.7%, 2010년 -0.1%)은 2010년에도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

**<표 3> 유로지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

|        | 2007 |     |     |     |     | 2008 |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실질 GDP | 0.7  | 0.4 | 0.6 | 0.4 | 2.6 | 0.7  | -0.3 | -0.2 | -1.5 | 0.7 |
| 민간소비   | 0.0  | 0.6 | 0.5 | 0.3 | 1.6 | 0.1  | -0.3 | 0.2  | -0.3 | 0.5 |
| 고정자본형성 | 1.1  | 0.2 | 0.9 | 0.9 | 4.3 | 1.2  | -1.2 | -0.6 | -3.7 | 0.2 |
| 정부지출   | 1.2  | 0.2 | 0.6 | 0.2 | 2.3 | 0.4  | 0.9  | 0.8  | 0.1  | 2.0 |
| 수출     | 0.4  | 1.1 | 1.8 | 0.8 | 5.9 | 1.6  | 0.0  | -0.1 | -6.5 | 1.6 |
| 수입     | 0.8  | 0.8 | 2.0 | 0.0 | 5.3 | 1.1  | -0.4 | 1.3  | -4.7 | 1.5 |

주 : 유로 15개 회원국(EA15) 대상  
자료 : ECB 2008.3.23

**<표 4> 주요 국가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

|         | 2007 |      |     |     |      | 2008 |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독일 GDP  | 0.4  | 0.4  | 0.6 | 0.3 | 2.5  | 1.5  | -0.5 | -0.5 | -2.1 | 1.3 |
| 민간소비    | -2.2 | 0.7  | 0.2 | 0.0 | -0.4 | -0.2 | -0.6 | 0.3  | -0.1 | -   |
| 고정자본형성  | 0.3  | -0.8 | 1.1 | 2.0 | 4.3  | 3.4  | -1.4 | 0.2  | -2.7 | -   |
| 영국 GDP  | 0.8  | 0.9  | 0.8 | 0.6 | 3.0  | 0.4  | -0.0 | -0.7 | -1.5 | 0.7 |
| 민간소비    | 0.8  | 1.0  | 1.4 | 0.3 | 3.0  | 0.9  | -0.2 | -0.1 | -0.7 | -   |
| 고정자본형성  | 1.3  | -0.5 | 1.9 | 1.4 | 7.1  | -2.9 | -1.3 | -3.6 | -2.3 | -   |
| 프랑스 GDP | 0.5  | 0.6  | 0.7 | 0.4 | 2.1  | 0.4  | -0.3 | 0.1  | -1.2 | 0.7 |
| 민간소비    | 0.6  | 0.9  | 0.8 | 0.6 | 2.4  | -0.0 | 0.1  | 0.1  | 0.5  | -   |
| 고정자본형성  | 1.1  | 0.8  | 0.7 | 1.2 | 4.9  | 0.6  | -1.6 | -0.2 | -1.1 | -   |

자료 : OECD stat extracts 2008.3.23

<표 5> 주요 국가별 경제지표

(단위: 전기대비 %)

|                     | 2007  | 2008 | 2008  |       |      |      |       |      | 2009 |      |
|---------------------|-------|------|-------|-------|------|------|-------|------|------|------|
|                     | 연간    | 연간   | 1/4   | 2/4   | 3/4  | 4/4  | 11월   | 12월  | 1월   | 2월   |
| EU                  |       |      |       |       |      |      |       |      |      |      |
| 수출 <sup>1)</sup>    | 8.7   | 3.7  | 3.9   | 0.3   | 0.2  | -7.5 | -6.8  | -0.9 | -    | -    |
| 소매판매 <sup>2)</sup>  | 0.8   | -1.3 | -0.1  | -1.5  | -1.4 | -2.2 | -2.6  | -2.1 | 0.1  | -    |
| 산업생산 <sup>3)</sup>  | 3.5   | -1.6 | 0.3   | -3.0  | -2.4 | -7.5 | -2.7  | -2.7 | -3.5 | -    |
| 소비자물가 <sup>4)</sup> | 2.1   | 3.3  | 3.4   | 3.9   | 3.5  | 1.6  | 2.1   | 1.6  | 1.1  | 1.2  |
| 실업률                 | 7.4   | 7.5  | 7.2   | 7.4   | 7.6  | 8.0  | 7.9   | 8.0  | 8.2  | -    |
| 경기침체지수              | 111.8 | 88.9 | 102.1 | 97.9  | 88.7 | 73.3 | 73.5  | 73.5 | 66.6 | 63.2 |
| 독일                  |       |      |       |       |      |      |       |      |      |      |
| 수출 <sup>1)</sup>    | 9.2   | 3.1  | 3.3   |       | 0.2  | -8.2 | -10.8 | -4.0 | -4.4 | -    |
| 소매판매 <sup>2)</sup>  | -2.3  | -0.2 | 1.1   | -0.9  | 0.5  | -0.3 | 0.0   | 0.5  | -0.6 | -    |
| 산업생산 <sup>3)</sup>  | 6.1   | 0.0  | 1.2   | -0.7  | -1.1 | -7.2 | -4.3  | -4.5 | -7.5 | -    |
| 소비자물가 <sup>4)</sup> | 2.3   | 2.6  | 0.7   | 0.8   | 0.7  | -0.6 | 1.4   | 1.1  | 0.9  | 1.0  |
| 실업률                 | 9.0   | 7.8  | 8.1   | 7.9   | 7.7  | 7.6  | 7.6   | 7.7  | 7.8  | 7.9  |
| 경기침체지수              | 109.2 | 96.0 | 103.7 | 102.6 | 95.4 | 83.1 | 82.8  | 77.5 | 74.4 | 73.2 |
| 영국                  |       |      |       |       |      |      |       |      |      |      |
| 수출                  | -10.1 | 12.0 | 4.8   | 5.1   | 2.4  | -8.5 | -5.8  | -1.8 | -4.0 | -    |
| 소매판매 <sup>2)</sup>  | 4.4   | 3.6  | 1.2   | 0.7   | -0.2 | 0.7  | 0.3   | 1.7  | 0.7  | -    |
| 산업생산 <sup>3)</sup>  | 0.6   | -2.7 | -0.4  | -1.2  | -1.7 | -4.5 | -2.4  | -1.5 | -2.6 | -    |
| 소비자물가 <sup>4)</sup> | 2.3   | 3.6  | 0.4   | 2.0   | 1.3  | 0.1  | 4.1   | 3.1  | 3.0  | -    |
| 실업률                 | 5.4   | 5.6  | 5.1   | 5.3   | 5.7  | 6.1  | 6.1   | 6.3  | -    | -    |
| 경기침체지수              | 110.7 | 84.7 | 101.4 | 95.9  | 84.8 | 70.4 | 68.0  | 67.6 | 60.2 | 56.4 |
| 프랑스                 |       |      |       |       |      |      |       |      |      |      |
| 수출 <sup>1)</sup>    | 2.0   | 2.6  | 5.8   | -2.1  | 0.5  | -9.7 | -2.9  | -0.2 | -6.7 | -    |
| 소비지출                | 3.1   | 1.1  | -0.3  | -0.3  | 0.1  |      | 0.1   | -0.9 | 1.8  | -    |
| 산업생산 <sup>3)</sup>  | 1.4   | -2.2 | 0.2   | -1.8  | -0.7 | -6.6 | -2.8  | -1.5 | -3.1 | -    |
| 소비자물가 <sup>4)</sup> | 1.5   | 2.8  | 0.7   | 1.4   | 0.2  | -0.5 | 1.6   | 1.0  | 0.7  | 0.9  |
| 실업률                 | 8.4   | 7.8  | 7.6   | 7.7   | 7.6  | 8.2  | 8.1   | 8.2  | 8.3  | -    |
| 경기침체지수              | 110.6 | 95.4 | 106.2 | 101.4 | 94.1 | 81.7 | 84.2  | 75.3 | 74.8 | 74.2 |

주 : 1)전년동기대비, 역내교역제외, FOB 기준, 2)전기대비, 3)건설업제외, 4)전년동기대비  
 자료 : ECB 2009. 3.23, OECD 2009. 3.23

### <고용과 물가>

□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2009년 1월 현재 8.2%로서 2008년 4/4분기의 8.0%보다 0.2%p, 2008년 1월의 6.8%보다는 1.4%p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음.

○ 실업률 상승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스페인과 아일랜드로서 2009년 1월에만 0.5%p가 증가하였고, 비교적 고용시장이 유연한 독일도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매월 0.1%p씩 증가함.

- 고용부족으로 인한 제조업부문 생산차질이 2008년 4/4분기 5.7%에서 2009년 1월에 4.0%로 하락한 사실과 2009년 소비자의 실업기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62까지 상승했음을 볼 때 유로지역의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물가는 에너지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2008년 4/4분에 1.6%로 하락한 후, 2009년 2월에는 1.2%에 그쳐 하향 안정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08년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3.3%로서 유로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였지만, 2008년 하반기 소비자물가의 급격한 하락추세와 2009년 원유가격하락전망(-48.5%) 을 감안할 때 소비자물가는 2009년 1.1% 상승, 2010년 -1.0%가 예상됨.

#### <내수 부문>

- 2008년 4/4분기 소매판매 감소세는 3/4분기의 -1.4%에서 -2.2%로 확대되었고, 경기체감지수 역시 2008년 4/4분기에 73.3으로서 2008년 중 최저를 기록한 후 2009년 2월에는 63.2로 다시 낮아지는 모습을 보임.
- 소매판매는 2009년 1월에 0.1%로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월의 경기체감지수의 급격한 하락과 고용사정의 악화 및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할 때 향후 부진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유럽 주요국의 경기체감지수는 110대 수준이었으나, 독일과 프랑스는 2009년 2월에 70대 초반까지 하락하였고, 영국은 50대까지 하락하였음.

#### <생산 부문>

- 유로지역 산업생산은 2007년의 3.5% 성장에서 크게 하락하여 2008년에는 -1.6%까지 하락하였고, 특히 2008년 후반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2009년 1월(-3.5%)까지 지속되는 모습을 보임.
- 산업생산의 급격한 하락은 내수부진, 기업 순이익 감소, 산업생산 가동률저하, 투자자본 조달조건 악화 등이 주요 원인이며, 가동률은 2008년 4/4분기 81.6%에

서 2009년 1월 75.0%로 낮아져 1985년 이후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국가별로는 주요국 모두 생산부문이 급격히 악화되는 양상인데 독일은 2007년 6.1%에서 2008년 0.0%로 급격히 위축되었고, 영국(0.6%→-2.7%)과 프랑스(1.4%→-2.2%) 역시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임.

####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유럽의 주요국들은 2008년 12월에 협정한 (GDP의 1.5%, 총액 2,000억 유로) 경기부양책을 실행함.
- 독일은 2차대전 이래 최대규모인 500억 유로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고(1월19일), 영국은 200억 파운드의 경기부양책을(2008년 11월) 실시한 바 있으며, 프랑스는 265억 유로의 경기부양책과 1천개의 공공 프로젝트를(2월3일), 이탈리아는 800억 유로 규모의 기간산업 및 자동차산업을(2월3일), 네덜란드는 60억 유로의 경기부양책을(3월25일) 실시함.
- EU 집행위원회는 마스트리트조약에 근거하여 GDP대비 3% 재정적자 규정 준수 시한을 각국에 부여함으로써 재정정책은 한계수준에 도달한 모습임.
  - 재정적자가 GDP의 3.7%인 그리스는 2010년까지, GDP의 5.4%인 프랑스는 2012년까지, GDP의 6.2%인 스페인은 2012년까지, GDP의 8.8%인 영국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축소시켜야 되는 상황임.
- 한편,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BOE) 등은 기준금리의 인하, 회사채 매입 등 금융정책 수단을 강구하여 경기부양에 노력하고 있음.
- ECB는 2008년 10월부터 기준금리를 5회에 걸쳐 0.5%p씩 낮추어 2009년 3월6일 1.5%까지 인하하였고, 그간 거부해왔던 회사채 직접 매입방식을 통한 경기부양 조치를 취하는 등 재정적자로 인해 추진이 어려워진 재정정책을 통화정책으로 대신하는 모습임.
- BOE도 기준금리를 1월의 1.5%수준에서 2회에 걸쳐 0.5%로 낮춤과 동시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채를 매입하고 대출을 확대하는 양적팽창을 실시함.

## 다. 일본 경제

일본의 2008년 4/4분기 실질 GDP는 -3.2%로 감소하여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2008년 연평균 성장률도 -0.6%를 기록함으로써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역성장을 시현함.

2009년 일본은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등으로 실질 GDP가 -2.6~-4.1%의 대폭적인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며, 2010년에는 0.6~0.9%의 증가세가 전망됨.

## &lt;최근 동향 및 전망&gt;

- 2008년 4/4분기 실질 GDP는 -3.2%를 기록함에 따라 일본의 실질 GDP는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였고, 2008년 평균 성장률도 -0.6%를 시현함에 따라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하는 모습을 보임.
- 전분기대비 -13.8%를 기록한 수출 감소가 실질 GDP를 2.6%p 하락시켰고, 설비투자는 5.4% 하락하여 실질 GDP를 0.8%p 하락시켰고, 민간소비는 0.4% 하락하여 실질 GDP를 0.2%p 하락시킴.
- 본내각부는 이와 같은 4/4분기의 경기기조를 '경기의 급격한 악화, 심각한 상황'으로 발표함.
- IMF<sup>9)</sup>는 일본의 실질 GDP가 2009년에 -2.6%로 하락하고, 2010년에는 0.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일본 내 민간기관들은 이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함.
- 2009년 2월 일본 민간예측기관들은 예상 밖의 저조한 2008년 4/4분기 실적을 고려하여 2009년의 실질 GDP를 -4.1%로 예측하고 2010년은 0.9%로 미세하게 상향 조정함.
- 이는 일본경제 침체의 저점이 종전의 2009년 1/4분기에서 2010년 1/4분기로 조정된 것을 의미하며, 미국 등의 경기부양 효과가 가시화되는 2010년 후반에나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함.

9)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 28, 2009

<표 6> 일본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

|        | 2007 |      |      |       |      | 2008 |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실질 GDP | 1.0  | -0.3 | 0.4  | 1.0   | 2.4  | 0.3  | -1.2 | -0.4 | -3.2  | -0.6 |
| 민간소비   | -0.4 | 0.4  | -0.1 | 0.4   | 0.7  | 0.7  | -0.8 | 0.3  | -0.4  | 0.5  |
| 설비투자   | 3.4  | -3.6 | 1.4  | 2.2   | 5.8  | -0.7 | -2.3 | -3.4 | -5.4  | -3.7 |
| 주택투자   | -1.3 | -2.9 | -8.3 | -10.7 | -9.3 | 4.6  | -1.9 | 4.0  | 5.7   | -6.9 |
| 정부투자   | 0.5  | 1.5  | -0.5 | 1.8   | 2.0  | -0.2 | -0.9 | -0.1 | 1.4   | 0.9  |
| 수출     | 2.3  | 2.1  | 2.4  | 3.0   | 8.4  | 3.0  | -2.3 | 0.6  | -13.8 | 1.7  |
| 수입     | 0.7  | 1.1  | -0.3 | 0.3   | 1.5  | 1.5  | -3.1 | 1.7  | 3.0   | 1.1  |

자료 : 내각부, 2009.3.12 (4/4분기 2차 속보치)

<표 7> 일본 경제 주요지표

(단위: 전기대비 %)

|                      | 2007 | 2008 | 2008 |      |      |       |       |       | 2009  |
|----------------------|------|------|------|------|------|-------|-------|-------|-------|
|                      | 연간   | 연간   | 1/4  | 2/4  | 3/4  | 4/4   | 11월   | 12월   | 1월    |
| 소비자물가 <sup>1)</sup>  | 0.0  | 1.4  | 0.9  | 1.4  | 2.2  | 1.1   | 1.0   | 0.4   | 0.0   |
| 실업률                  | 3.8  | 4.0  | 3.8  | 4.0  | 4.0  | 4.0   | 4.0   | 4.3   | 4.1   |
| 수출(전년동기)             | 11.5 | -3.4 | 5.3  | -4.7 | -4.3 | -20.6 | -13.4 | -11.6 | -10.4 |
| 소매판매액 <sup>1)</sup>  | -0.1 | 0.3  | 1.8  | 0.2  | 0.8  | -1.5  | -0.9  | -2.7  | -2.4  |
| 소비자태도지수              | 44.9 | 32.7 | 37.1 | 34.1 | 31.3 | 28.4  | 28.7  | 26.7  | 27.0  |
| 가계소비지출               | 0.9  | -1.9 | 0.2  | -2.7 | 0.0  | -0.7  | 1.5   | -0.9  | -0.8  |
| 주택착공호수 <sup>2)</sup> | 106  | 109  | 115  | 112  | 110  | 101   | 99    | 100   | -     |
| 광공업생산                | 2.8  | -3.4 | -0.7 | -0.8 | -1.3 | -12.0 | -8.5  | -9.8  | -10.0 |

주 : 1)전년동기대비, 2) 만호

자료 :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 <고용과 물가>

□ 실업률은 2008년 2/4분기부터 악화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에는 4.3%를 기록하였고, 유효인구배율도 2008년 4/4분기 내내 하락함으로써 고용시장이 경기 감속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유효인구배율(구인자/구직자)은 10월 0.80배, 11월 0.76배, 12월 0.72배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고용시장의 악화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음.

-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초에 도입했던 Job Sharing을 다시 도입하려하나 노사간 입장차가 크고 단기간 내에 고용관행의 개선이 어려워 한계성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향후 생산활동의 지속적인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제조업 중심으로 고용 조정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연구소<sup>10)</sup>들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09년에는 실업률이 5.2%로 상승하며,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드는 2010년에는 6.1%로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소비자물가는 2008년 3/4분기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12월에는 0.4% 상승에 그쳤으며, 2009년 1월에는 0%를 기록함.
- 2009년 1월의 소비자물가는 유류가격의 대폭적인 하락과 마이너스 GDP갭<sup>11)</sup>의 폭이 증가함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악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9년에는 과잉 채무나 설비의 조정압력이 강해지면서 GDP 갭의 마이너스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연구소들은 소비자물가가 2009년 -1.1%, 2010년 -0.7%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함.

#### <내수 부문>

- 2008년 4/4분기와 2009년 초에 걸친 수출의 감소에 영향을 받아 기업의 투자 저하→생산 설비투자 억제→고용 임금의 조정을 통한 수요부문의 급격한 하락이 나타남.
- 가계소비를 판단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08년 4/4분기에 사상 최저치인 28.4를 기록하는 가운데 2009년 1월에는 27.0으로 더욱 하락하였고, 소매판매액과 가계소비지출도 4/4분기부터 1월에 걸쳐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기업 투자 상황을 보여주는 전산업 기업 평균 투자는 2008년 3~12월의 기간 중 0.2%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의 3.6%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sup>12)</sup>.
- 주택건설부문도 2008년 4/4분기에 101만호를 신규 착공하여 전기대비 6.4%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10) Daiwa Institute of Research, 제160회 일본경제예측, 2009.3.12

11) GDP갭은 '실질GDP-잠재GDP'로 정의되며, 보통 경기 순환국면의 판단에 이용됨.

12) 일본은행이 2008년 12월에 실시한 '전산업 기업 투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함.

<생산 부문>

- 생산부문은 수출부진의 심화와 설비투자 심리가 억제되면서 2008년 초부터 2009년 초까지 급속도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광공업생산은 2008년 1/4분기의 -0.7%를 시작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부진에 의한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4/4분기에는 -12.0%까지 하락하였고, 2009년에 들어와서는 하락세를 그대로 유지함(1월 -10.0%).
- 또한 2008년 4/4분기의 광공업 재고가 전분기의 1.6%에서 2.7%로 확대된 사실과 제조업 가동률이 같은 기간 중 -5.6%에서 -26.0%로 크게 하락한 사실을 감안할 때 생산 활동은 2009년에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민간연구소들은 광공업생산이 2009년 -28.7%로 하락하고 2010년에는 -0.5%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함. (하락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 일본 정부는 소비확대, 중소기업 생산 활성화를 통한 조기경제회복 목표하에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포함하는 감세정책을 펼칠 예정임.
- 감세정책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민간에서는 이번 감세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함.
- 감세정책의 세부 내용은 주택자금 대출 관련 세액 공제한도 확대, 저공해 차량의 취득세 경감, 개인투자자에 대한 배당 및 양도소득세 경감,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경감 및 적자시 법인세의 일부 환급 등을 포함함.

## 라. 중국 경제

중국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영향을 받아 2008년 3/4분기부터 경기둔화가 시작되어 4/4분기에는 한 자릿수인 6.8%를 기록하였으나, 성장추세는 여전히 견조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임.

2009년에는 선진국 경제의 침체 가속으로 수출의 대폭적인 둔화가 불가피하며, 내수 중 소비 둔화가 가세하면서 실질 GDP는 6.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lt;최근 동향 및 전망&gt;

- 중국경제의 2008년 4/4분기 실질 GDP는 전년동기 대비 6.8%<sup>13)</sup>로 큰 폭의 둔화세를 시현하였고, 이로 인해 2008년 상반기까지의 두 자릿수 성장에도 불구하고 2008년 연평균 성장률은 9.0%의 한 자릿수 성장에 그침.
- 2008년 4/4분기 실질 GDP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수출의 감소로서 전년동기 대비 4.3%는 2008년 연평균인 17.2%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적인데 특히 2008년 11월부터 마이너스 성장한 수출은 2009년 2월 현재 -25.7%까지 하락한 모습임.
- 수출 다음으로 실질 GDP 성장률을 끌어내린 부문은 소비 둔화로, 2008년 중 20%를 웃돌았던 소매판매 증가율은 4/4분기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9년 1월에 18.5%, 2월에는 11.6%로 큰 폭의 둔화 추세를 보임.
- 2008년 3/4분기부터 경기둔화 추세를 보인 중국경제는 2009년에 6.5~6.7%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IMF는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2009년 6.7%로 하락한 후, 2010년 역시 8.0%의 한 자릿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sup>14)</sup>.
- 세계은행은 2009년 중국의 민간소비와 총자본형성(부문)은 전년대비 0.2 ~1.3%p 하락하며, 수출과 수입은 각각 -6.0%, -4.0%의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실질 GDP 증가율이 6.5%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sup>15)</sup>.

13) 이는 중국정부의 발표치이며, World Bank는 China Quarterly Update(2009.3.18)에서 이를 계절조정된 연율로 환산하면 2.5%에 해당한다고 발표함.

14)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 28, 2009

- 2009년 경기둔화의 원인으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글로벌시장의 수입 감소를 지적하였고, 이러한 원인은 중국의 대외 수출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시장수요에 근거한 민간투자의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정부가 실시하는 경기부양 재정정책은 이미 감소한 수출과 투자의 경기하락 요인을 상쇄시킬 뿐 시장수요에 근거한 투자를 확대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함.
- 한편, 2009년 실질 GDP 증가율 6.5%는 중국의 잠재성장률을 훨씬 하회하는 수준으로 유휴 가동률 상승과 시장수요에 투자 하락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 일자리 감소와 가격수준 인하 압력이 증대될 경우 결국 중국 경제구조는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 점차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표 8> 중국의 실질 GDP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f |
|----------------------------|------|------|------|------|-------|
| 실질 GDP(공급측면)               | 10.4 | 11.6 | 11.9 | 9.0  | 6.5   |
| 실질 GDP(지출측면) <sup>1)</sup> | 10.4 | 11.7 | 12.5 | 8.5  | -     |
| 민간소비                       | 7.3  | 8.4  | 10.1 | 8.0  | 7.8   |
| 총자본형성                      | 9.0  | 10.7 | 10.3 | 9.7  | 8.4   |
| 고정자본형성                     | 11.0 | 13.0 | 11.4 | 8.8  | 7.7   |
| 수출                         | 24.3 | 23.3 | 19.9 | 7.8  | -6.0  |
| 수입                         | 11.4 | 14.3 | 13.9 | 3.6  | -4.0  |
| 소비자물가지수                    | 1.8  | 1.5  | 4.8  | 5.9  | 0.5   |

주 : 1) World Bank가 중국통계연감 2008의 <표 2-20>에 근거하여 작성  
 자료 : World Bank China Quarterly Update March 2009, 2009.3.18

15) World Bank, China Quarterly Update, Mar. 18, 2009

&lt;표 9&gt; 중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대비, %)

|                      | 2007 | 2008 | 2008 |      |      |      |       |       | 2009  |       |
|----------------------|------|------|------|------|------|------|-------|-------|-------|-------|
|                      | 연간   | 연간   | 1/4  | 2/4  | 3/4  | 4/4  | 11월   | 12월   | 1월    | 2월    |
| 실질 GDP               | 11.9 | 9.0  | 10.6 | 10.1 | 9.0  | 6.8  | -     | -     | -     | -     |
| 고정자산투자 <sup>1)</sup> | 25.8 | 26.1 | 25.9 | 26.8 | 27.6 | 26.1 | 26.8  | 26.1  | -     | 26.5  |
| 소매판매                 | 16.8 | 21.6 | 20.6 | 22.2 | 23.2 | 20.4 | 20.8  | 19.0  | 18.5  | 11.6  |
| 수출                   | 25.7 | 17.2 | 21.4 | 22.4 | 22.9 | 4.1  | -2.2  | -2.8  | -17.5 | -25.7 |
| 수입                   | 20.8 | 18.5 | 28.6 | 32.6 | 25.7 | -8.8 | -17.9 | -21.3 | -43.1 | -24.1 |
| 산업생산                 | 18.5 | 12.9 | 16.4 | 15.9 | 13.0 | 6.4  | 5.4   | 5.7   | 11.0  | -     |
| 구매자관리지수              | 55.0 | 50.2 | 54.9 | 54.8 | 49.3 | 42.5 | -     | 41.2  | 45.3  | 49.0  |
| 소비자물가                | 4.8  | 5.9  | 8.0  | 7.8  | 5.3  | 2.5  | 2.4   | 1.2   | 1.0   | -1.6  |
| 생산자물가                | 3.1  | 6.9  | 6.9  | 8.4  | 9.7  | 2.5  | 2.0   | -1.1  | -3.3  | -4.5  |

주 : 1) 전년동기 누계 대비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lt;물가&gt;

- 소비자물가는 2008년 하반기로 갈수록 급격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9년에 들어와서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월에는 -1.6%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소비자물가의 급격한 하락은 에너지 가격 하향 안정화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 해소가 가장 큰 원인이며,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소비자심리 저하와 일자리 감소로 인한 수요부진도 일조한 것으로 보임.
- 세계은행은 이러한 배경 속에 중국의 200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 &lt;내수 부문&gt;

- 2008년 4/4분기 중 고정자산 투자와 소매판매는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각각 26.1%와 20.4%의 증가율을 시현하면서 상당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 초에 들어와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4/4분기에는 강력한 경기부양정책이 소비를 진작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투자의 감소를 정부 주도형 SOC 투자로 대체함으로써 고정투자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남.

-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의 시의 적절한 추진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덜한 폐쇄적인 금융환경으로 인해 중국의 재정·금융정책 효과가 더욱 커진 것으로 평가됨.

#### <생산 부문>

- 두 자릿수 증가를 지속해오던 산업생산도 2008년 4/4분기에는 6.4%로 크게 둔화되었으나, 2009년 1월에 들어와서는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전년동기 대비 11.0%까지 반등함.
- 산업생산은 해외 수요의 부진에 따른 투자 감소 및 제조업 유휴 가동률 증가로 인해 2008년 4/4분기는 6.4%로 급격히 둔화되었으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저금리 신용확대 금융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면서 2009년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임.
- 생산 및 신규주문 지수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구매자관리지수(PMI)가 2008년 4/4분기 42.5에서 2009년 1월과 2월 각각 45.3과 49.0으로 상승하는 것도 같은 원인임.

####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 중국정부의 재정정책은 농촌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고용 안정에 중점을 둬으로써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를 진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08년 11월 발표된 4조 위안의 경기부양대책 중 2009년 중앙정부 사업비는 5,650억 위안이며, 기존 계획중 인프라 건설,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부분은 삭감하고, 중·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 의료, 교육, 사회보장 부문을 증액함.
- 금융정책은 민간투자 감소로 인한 실업률 상승, 유휴 가동률 증가 및 생산부문 저하를 방지하여 생산수준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총통화(M2) 증가율 목표치를 17%로 설정하여 금융완화를 계속 시도하는 한편, 신규대출 규모를 2008년 목표치 3.6조 위안에서 5조 위안 이상으로 높게 설정함.
-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저금리 신용확대 금융정책은 2009년 초부터 효력을 발휘하여 1월에는 생산지수를 11.0%로 급격히 증가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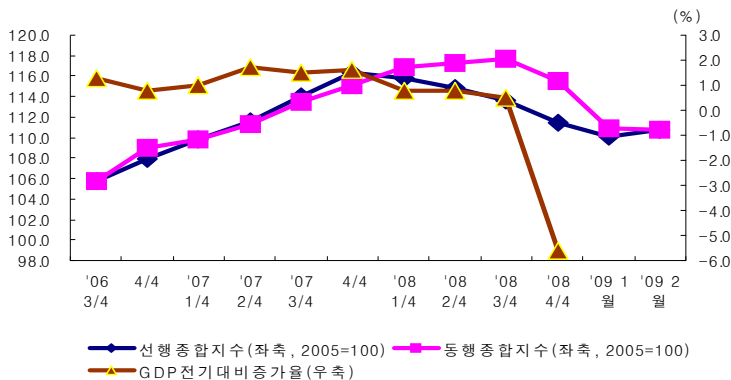
## 2. 국내 경제

### <성장 및 내수>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적 실물경제 침체를 몰고 온 2008년 4/4분기 동안 국내경제는 극심한 내수 및 수출의 부진으로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 모두에서 감소세를 시현하였고, 이 결과 4/4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 2009년에도 이러한 역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2008년 4/4분기에는 민간소비·설비 및 건설투자·수출의 극심한 침체로 인하여 실질 GDP가 -3.4%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극심한 세계경제 불황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5.5%p, -18.7%p의 성장률 감소를 보임.
-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투자관련 경기부양책 실시로 전분기대비 -4.8%p 감소에 그침.

<그림 1> GDP와 경기지수 추이



주 : 경기지수 분기증가율은 전월대비 증가율 평균임.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세계적 경기불황에 따른 수출시장의 위축으로 재화수출이 4/4분기 들어 -11.5%로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재화수입 성장률도 -12.6%를 기록하여 무역거래가 크게 위축됨.
- 세계경제의 침체 지속 전망, 경기 선행지수 및 동행지수의 감소세 지속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국내경제는 일정기간 동안 감소세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표 10> 실질 GDP와 수요부문별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        | CY2007       |      | CY2008        |              |              |                |      |
|--------|--------------|------|---------------|--------------|--------------|----------------|------|
|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실질 GDP | 5.7<br>(1.6) | 5.0  | 5.8<br>(0.8)  | 4.8<br>(0.8) | 3.8<br>(0.5) | -3.4<br>(-5.6) | 2.5  |
| - 민간소비 | 4.6          | 4.5  | 3.4           | 2.3          | 1.1          | -4.4           | 0.5  |
| - 설비투자 | 6.5          | 7.6  | 1.4           | 0.7          | 4.7          | -14.0          | -2.6 |
| - 건설투자 | 0.4          | 1.2  | -1.1          | -1.2         | -1.3         | -6.1           | -2.7 |
| - 재화수출 | 17.7         | 12.0 | 12.0          | 12.5         | 8.0          | -11.5          | 4.6  |
| - 재화수입 | 17.6         | 10.9 | 11.1          | 9.2          | 10.5         | -12.6          | 3.9  |
| 국내수요   | 4.1<br>(1.2) | 4.5  | 2.7<br>(-0.1) | 1.9<br>(0.2) | 1.6<br>(0.3) | -4.4<br>(-5.0) | 0.3  |

주 : ( )안은 계절조정이 반영된 전분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

- 2008년 4/4분기 중 승용차를 포함한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 등 모든 부문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함에 따라 소비재판매 증가율은 -4.2%로 전분기대비 5.6%p 하락함.
-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가구 및 가전제품 등 내구재 소비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9.9%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되었고, 2009년 2월에도 여전히 -4.0%의 성장을 기록함을 볼 때 2009년 1/4분기에서도 극심한 내구재 소비위축이 예상됨.
- 특히 내구재부문 중 승용차 판매부분에서 4/4분기 성장률이 -19.5%, 2009년 1~2월 성장률이 각각 -30.9%, -9.2% 성장을 보여 승용차 판매의 극심한 감소세가 내구재부문에서의 마이너스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보임.
- 의복 및 신발 등 준내구재 소비증가율도 4/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9.9%의 극

심한 감소세를 보였고, 2009년 1~2월에서도 각각 -1.2%, -0.6%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위축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음.

- 다만, 비내구재부문에서의 소비재판매증가율이 10월에서의 -3.2% 성장과는 달리 11~12월에 각각 0.4%, 1.9%, 2009년 1월에 5.1% 성장을 나타냈으나, 2월 들어 -8.3%로 다시 감소세로 전환됨.

**<표 11> 소비관련 지표의 증가율**

(전년동기(월)대비, %)

|        | CY2007 |     | CY2008 |      |      |       |      | CY2009           |                  |
|--------|--------|-----|--------|------|------|-------|------|------------------|------------------|
|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월 <sup>1)</sup> | 2월 <sup>1)</sup> |
| 소비재판매  | 3.6    | 5.1 | 4.4    | 2.9  | 1.4  | -4.2  | 1.0  | -3.3             | -6.2             |
| - 내구재  | 0.8    | 9.6 | 9.5    | 8.7  | 0.0  | -9.9  | 1.9  | -20.8            | -4.0             |
| * 승용차  | 1.6    | 6.2 | 9.6    | 7.1  | -4.9 | -19.5 | -2.0 | -30.9            | -9.2             |
| - 준내구재 | 5.4    | 3.9 | 3.8    | -2.1 | 0.6  | -9.9  | -2.4 | -1.2             | -0.6             |
| - 비내구재 | 5.0    | 5.2 | 1.9    | 0.3  | 1.2  | -0.4  | 0.7  | 5.1              | -8.3             |

주 : 1) 은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4/4분기 들어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기계류 및 운수장비의 투자 감소로 설비투자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14.0%로 전분기대비 18.7%p 감소하였고, 선행지표인 기계수주 증가율도 감소하고 있어 향후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반도체 장비를 중심으로 하는 기계류에 대한 투자가 2/4분기까지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3/4분기에서 반등세를 보였지만, 4/4분기 들어 경기위축 여파의 실현으로 전년동기대비 17.2% 감소를 기록하였고, 2009년 1~2월에도 각각 28.9%, 28.3% 감소함.
- 운수장비에 대한 투자증가율도 4/4분기 들어 전년동기대비 -11.3% 성장하였고, 2009년 1월에도 -8.9%로 감소하였으나, 2월 들어 18.5%로 반등함.
- 4/4분기 중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모두에서 기계발주량이 줄어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이 전년동기대비 39.5%감소, 2009년 1~2월에도 각각 46.9%, 28.8%의 감소를 기록함.
- 건설투자는 4/4분기 들어 건축부문에서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주었으나,

정부의 SOC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책으로 토목부문에서 성장세를 기록하였고,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4/4분기 들어 전분기에 비해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여줌.

- 민간부문의 부진으로 건축부문 투자가 25.5%의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전분기에 비해 감소세는 다소 완화된 모습이고, 토목부문은 정부의 SOC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50.7%, 2009년 1월 중 성장률은 무려 전년동월대비 162.6% 성장을 기록함.
-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 증가율은 4/4분기에도 -6.5%로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전분기에 비해 감소세가 다소 완화됨과 동시에 12월에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발주물량 증가 및 건설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0.7%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2009년 들어 다시 감소세로 전환됨.

<표 12> 투자관련 지표의 증가율

(전년동기(월)대비, %)

|          | CY2007 |      | CY2008 |      |       |       |       | CY2009           |                  |
|----------|--------|------|--------|------|-------|-------|-------|------------------|------------------|
|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월 <sup>1)</sup> | 2월 <sup>1)</sup> |
| 설비투자     | 6.5    | 7.6  | 1.4    | 0.7  | 4.7   | -14.0 | -2.6  | -                | -                |
| - 기계류    | 5.9    | 8.3  | -2.2   | -1.6 | 5.6   | -17.2 | -4.0  | -28.9            | -28.3            |
| - 운수장비   | 26.1   | 13.2 | 5.2    | 4.4  | 6.2   | -11.3 | 0.6   | -8.9             | 18.5             |
| * 기계수주   | 39.3   | 21.1 | 25.2   | 8.4  | -7.6  | -39.5 | -5.5  | -46.9            | -28.8            |
| 건설투자     | 0.4    | 1.2  | -1.1   | -1.2 | -1.3  | -6.1  | -2.7  | -                | -                |
| - 국내건설수주 | 34.8   | 23.6 | -3.7   | -6.1 | -22.7 | -6.5  | -9.0  | -15.0            | -20.7            |
| * 건축     | 47.6   | 18.5 | 5.3    | -6.3 | -37.2 | -25.5 | -17.4 | -44.8            | -58.0            |
| * 토목     | 7.5    | 40.3 | -23.3  | -5.2 | 16.2  | 50.7  | 13.9  | 162.6            | 73.2             |

주 : 1) 은 잠정치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대외거래>

□ 4/4분기 중 수출 및 수입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9.9%, -9.0%의 역성장을 하면서 무역수지(통관기준)가 15.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 1월에는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36.3억 달러 적자, 2~3월에는 환율효과, 유가 및 원자재가격 하락, 소비부진으로 각각 29.3억 달러, 46.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경기침체에 따른 세계수출시장의 위축으로 2009년 3월 중 수출은 통관기준 283.7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1.2% 감소하였으나, 환율효과와 선박류의 수출호조로 전월에 비해서는 29.1억 달러 증가함<sup>16)</sup>.

- 안정된 수주물량을 가진 선박류(61.0%)는 전월에 이어 3월에도 전년동월에 비하여 수출이 호조세를 보여 41.1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함.

- 반면 철강제품(-14.8%), 일반기계(-36.4%), 섬유류(-16.8%), 무선통신기기(-19.8%), 석유화학(-28.7%), 자동차(-46.2%), 반도체(-38.0%), 컴퓨터(-50.2%) 부문 등에서는 3월 중 수출이 전년동월에 비해 감소함.

- 전년동기(3.1~20)대비 지역별 수출증가율은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양주(169.2%)와 아프리카주(97.1%)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세를 시현함.

\* 미국(-24.0%), EU(-16.9%), 일본(-29.8%), ASEAN(-27.1%), 중남미(-8.7%), 중동(-18.6%), 중국(-17.2%)

- 3월 중 지역별 수출비중 서열은 중국(23.1%), EU(14.0%), 미국(9.9%), ASEAN(9.8%) 순으로 나타남.

○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하락과 소비부진으로 2009년 2월 중 수입은 통관기준 225.5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6.0% 감소함<sup>17)</sup>.

- 원유(-60.4%), 석유제품(-32.2%), 가스(-17.0%)의 수입 감소로 인하여 3월 중 원자재 수입이 전년동기(3.1~20)대비 46.9%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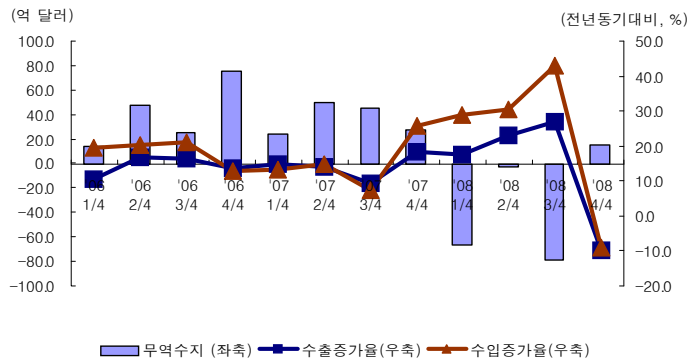
- 자본재 수입은 반도체제조용장비(-65.1%), 자동차부품(-58.0%), 컴퓨터부품

16) 품목별 수출실적은 3월 1일부터 동월 20일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고, 지역별 수출 동향은 동 기간 동안의 잠정치임.

17) 품목별 수입실적과 지역별 수입동향은 3월 1일부터 동월 20일까지의 잠정치임.

- (-22.9%) 등의 수입 감소로 인하여 전년동기(3.1~20)대비 31.0% 감소함.
- 소비재 수입은 승용차(-48.1%), 생활용품(-25.5%) 등에서의 수입 감소로 전년동기(3.1~20)대비 30.8% 감소함.
- 전년동기(3.1~20)대비 3월 지역별 수입증가율은 미국(-43.9%), EU(-38.7%), 일본(-32.1%), ASEAN(-28.7%), 중남미(-33.0%), 중동(-66.7%), 중국(-28.7) 등 전지역에서 감소세를 나타냄.
- 3월 중 지역별 수입비중 서열은 중국(20.1%), 일본(16.4%), 중동(14.0%), ASEAN(12.4%), EU(9.8%), 미국(8.1%) 순으로 나타남.

<그림 2> 대외 거래 지표 추이



자료 : 관세청(통관기준)

## <산업생산>

- 4/4분기 중 내수 및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중화학·경공업·ICT부문 모두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낸 결과, 전체 광공업 생산지수의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1.3%로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2009년 1~2월에도 각각 전년동월대비 -25.5%, -10.3%(의) 성장을 보여 광공업에서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4/4분기 중 반도체, 부품, 자동차 및 영상음향통신 분야의 내수 및 수출 부진으로 인하여 제조업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2.1%, 중화학은 -12.8%, 경공업은

-8.8%, ICT는 -24.2%의 감소율을 보임.

□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에서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체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4%의 감소세를 기록함.

○ 서비스업 생산지수에서 4/4분기 중 도매 및 소매업은 전년동기대비 -4.6%, 운수업은 -3.2%, 숙박 및 음식점업은 -3.0%, 부동산 및 임대업은 -7.5%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표 13> 산업생산지수의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월)대비, %)

|             | CY2007 |      | CY2008 |      |      |       |      | CY2009           |                  |
|-------------|--------|------|--------|------|------|-------|------|------------------|------------------|
|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월 <sup>1)</sup> | 2월 <sup>1)</sup> |
| 광공업         | 10.9   | 6.9  | 10.9   | 8.9  | 5.6  | -11.3 | 3.0  | -25.5            | -10.3            |
| - 제조업       | 11.3   | 7.1  | 11.1   | 9.3  | 5.6  | -12.1 | 3.0  | -27.0            | -10.6            |
| - 중화학       | 12.7   | 8.3  | 13.2   | 11.6 | 6.8  | -12.8 | 4.1  | -27.8            | -11.4            |
| - 경공업       | 4.6    | 2.0  | 1.7    | -1.2 | 0.0  | -8.8  | -2.2 | -23.0            | -6.3             |
| - ICT       | 25.0   | 13.6 | 33.4   | 30.4 | 10.2 | -24.2 | 9.4  | -31.9            | -15.3            |
| 서비스업        | 7.4    | 6.8  | 6.7    | 4.8  | 3.2  | -0.4  | 3.4  | -1.1             | 0.1              |
| - 도매 및 소매업  | 6.6    | 5.8  | 4.0    | 3.1  | 3.6  | -4.6  | 1.4  | -2.4             | -4.3             |
| - 운수업       | 7.6    | 6.6  | 8.1    | 8.2  | 4.3  | -3.2  | 4.3  | -10.8            | -10.4            |
| - 숙박 및 음식점업 | 2.8    | 2.2  | 3.6    | 0.6  | 1.7  | -3.0  | 0.7  | -4.0             | -0.3             |
| - 부동산 및 임대업 | -3.1   | 3.1  | 5.7    | 2.7  | -8.4 | -7.5  | -2.1 | -0.3             | -0.8             |

주 : 1) 은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물가 및 고용>

유가하락으로 인하여 2009년 1/4분기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감소세에 있는데, 그 감소세가 2008년 3/4분기 이후 지속되고 있고, 금융위기에 따른 본격적인 경기침체로 2008년 4/4분기 취업자 증가율, 고용률, 실업률은 모두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유가하락으로 인한 교통비 하락과 주거 및 수도광열비 등의 하락으로 2009년 1/4분기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9%로 전분기대비 0.6%p 하락함.

- 1/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0.9%),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6.9%), 주류 및 담배(1.2%) 등에서 물가지수 증가율이 전분기에 비해 증가함.
- 1/4분기 중 교통비(-4.2%)의 물가지수 증가율이 전분기대비 6.6%p 하락하여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주거 및 수도광열비(2.3%), 교육비(3.8%)의 증가율도 전분기에 비해 하락함.
- 통신비의 물가지수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0.3%로 감소세가 2005년 2/4분기 지속되고 있으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1.3%p 증가하여 감소세가 다소 약화됨.
- 소비자의 경기 및 소비심리 지표인 소비자기대지수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8년 3/4분기 평균 91.0에서 4/4분기에 69.1까지 하락하였으나,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로 2009년 들어 소비자기대지수가 회복세를 나타내어 2009년 1/4분기 소비자기대지수는 평균 77.0을 기록함.
- 2008년 4/4분기 들어 실물경기 둔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총취업자 증가율이 0.2%로 전분기대비 0.4%p 하락하였고, 2009년 1~2월에는 그 증가율이 감소세로 전환됨.
  - 지난 12월 및 2009년 1~2월에 일자리가 각각 만 2천개, 10만 3천개, 14만 2천개가 감소하였는데, 지속적인 일자리 감소와 함께 그 감소폭도 점점 확대되고 있음.
  - 실업률은 제작년에 이어 지난 4/4분기까지 3% 초반대의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으나, 2009년 1~2월 들어 각각 3.6%, 3.9%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었고,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2009년 2월 들어 8.7%에 이르러 전년동월대비 1.4%p 증가함.
  - 청년취업자의 증가율이 4/4분기 -4.0%에 이어 2009년 1~2월에 감소세가 더욱 악화되어 청년실업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임.
  - 고용률도 제작년부터 지난 4/4분기까지 60%대를 상회하는 선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으나, 2009년 1~2월 들어 각각 57.3%, 57.0%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음.
  - 산업별 취업자는 4/4분기 중 경기불황으로 인한 귀농의 증가로 농림어업에서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0.5% 증가하였고, 2009년 1~2월에도 전년동월대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부문에서 취업자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5%로 감소세를 시현함.

-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 등에서 취업자 증가율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지만,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4.0% 증가로 4/4분기 중 SOC 및 기타서비스부문에서 취업자 증가율은 0.8% 증가함.

&lt;표 14&gt; 고용관련 지표의 증가율

(전년동기(월)대비, %)

|               | CY2007 |      | CY2008 |      |      |      |      | CY2009 |      |
|---------------|--------|------|--------|------|------|------|------|--------|------|
|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월     | 2월   |
| 총취업자          | 1.2    | 1.2  | 0.9    | 0.7  | 0.6  | 0.2  | 0.6  | -0.4   | -0.6 |
| - 청년취업자       | -1.2   | -1.6 | -2.5   | -2.1 | -2.7 | -4.0 | -2.8 | -5.7   | -4.8 |
| 고용률           | 60.0   | 59.8 | 58.5   | 60.4 | 59.9 | 59.4 | 59.5 | 57.3   | 57.0 |
| 실업률           | 3.0    | 3.2  | 3.4    | 3.1  | 3.1  | 3.1  | 3.2  | 3.6    | 3.9  |
| 농림어업          | -3.8   | -3.3 | -4.4   | -2.9 | -2.0 | 0.5  | -2.1 | 1.2    | 0.5  |
| 광공업           | -0.8   | -1.0 | -0.3   | -0.7 | -1.1 | -2.5 | -1.1 | -3.2   | -4.4 |
| - 제조업         | -0.8   | -1.0 | -0.4   | -0.8 | -1.3 | -2.6 | -1.3 | -3.2   | -4.4 |
| SOC 및 기타서비스업  | 2.2    | 2.2  | 1.6    | 1.4  | 1.3  | 0.8  | 1.3  | 0.1    | 0.2  |
| - 건설업         | -0.5   | 0.9  | -1.2   | -2.4 | -2.2 | -2.2 | -2.0 | -2.4   | -1.0 |
| - 도소매음식숙박     | -0.3   | -0.7 | -0.6   | -0.7 | -0.8 | -1.1 | -0.8 | -1.6   | -2.0 |
| - 전기,운수,통신,금융 | 2.8    | 2.5  | 2.7    | 1.8  | -0.7 | -1.9 | 0.5  | -2.3   | -2.7 |

주: 1)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고용률은 '취업자/15세이상인구×100'로 정의됨.

2) 청년은 15~29세 기준임.

3) SOC는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 4/4분기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34만 9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3% 증가로 전 분기에 비해 3.2%p 하락하였고,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2.1%로 전 분기대비 2.1%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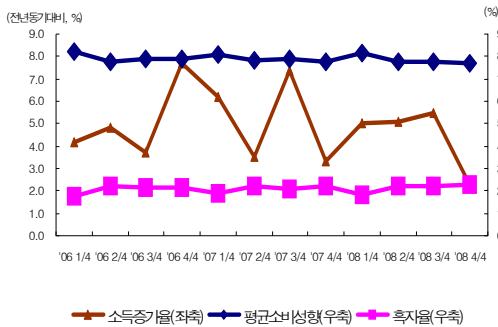
- 4/4분기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24만 9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하였으나 전분기대비 1.6%p 하락하였고,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0%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4분기 이후 지속적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가계의 실질소비지출 감소세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됨.

- 소비지출은 식료품(4.6%), 보건·의료(3.9%), 교육비(9.3%) 항목 등에서는 증가하였으나, 광열·수도(-2.3%), 가구·가사(-3.6%), 의류·신발(-3.7%), 교양·오락

(-8.1%), 교통·통신(-1.2%) 등에서는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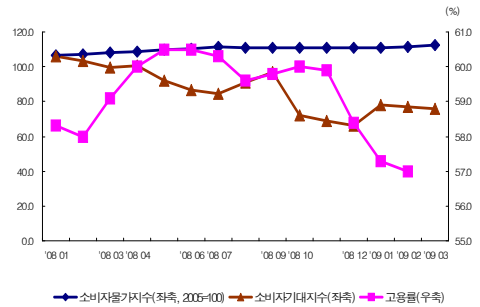
- 4/4분기 전국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92만 3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하였으나 전분기대비 2.5%p 하락하였고, 처분가능소득과 소비지출의 차이인 흑자액도 전년동기대비 5.4%의 증가율로 전분기대비 6.1%p 하락하였으며,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소비지출의 비율인 평균소비성향도 전년동기대비 0.7%p(77.6%→76.9%) 감소함.

<그림 3> 도시가계 소득, 흑자율



주 : 흑자율= 1- 평균소비성향  
자료 : 통계청 「가계수지동향」

<그림 4> 소비심리, 실업률, 물가



자료 : 통계청 「소비자전망조사」, 「고용동향」, 「소비자물가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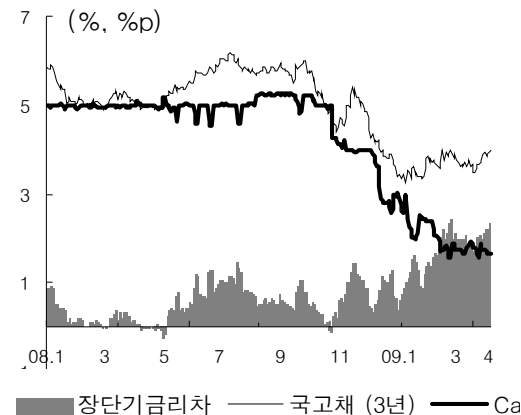
### 3. 금융 경제

콜금리는 2008년 10월 이후 여섯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 조치의 영향으로 4월 초순 기준 1.5%를 소폭 상회하고 있음. 국고채 금리는 2009년 1/4분기 중 국제신용평가사의 국내 은행 등급 하향 조정,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AIG 파산우려 등의 영향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다시 오름세를 보여 4월 초순 현재 4%에 육박하고 있음.

- 한국은행이 2008년 10월초 5.25%였던 기준금리를 유동성 공급 및 경기부양의 목적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총 3.25%p 인하함에 따라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콜금리는 2009년 4월 6일 현재 1.65%를 기록 중임.
- 2009년 초 3.0%였던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0.5%p씩 금리인하를 단행한 후, 3월에는 속도조절 차원에서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4월 7일 현재 2.0%를 기록 중임.
-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2008년 4/4분기에 하락세를 보였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09년 들어 국제신용평가사의 국내 은행 등급 하향 조정, 2008년 4/4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 AIG 파산우려 소식 등으로 2008년 말 대비 소폭 오름세를 보임.
- 수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2008년 말 3.41%까지 떨어졌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추가부실 우려가 확대되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급락함에 따라 1월 16일 3.61%까지 상승함.
- 이후 2008년 4/4분기 GDP 및 2008년 12월 산업활동동향 등이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발표되자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고채 금리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1월 28일 3.36%까지 하락함.
- 추경 규모 확대 보도로 국고채 수급불안 우려가 고조되면서 다시 상승압력을 받은 국고채 금리는 환율상승 및 추가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된 가운데 AIG 파산우려가 대두되면서 2월 25일 3.99%까지 상승하여 국지적 최고점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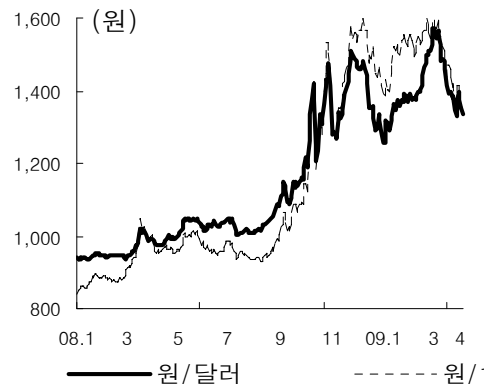
- 3월 들어 과세제도 개편으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국고채 매입 검토, 증권사의 국채 선물 대규모 순매수 등의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는 3.49%(3월 19일)까지 하락하다가 상승하여 4월 6일 현재 3.99%를 기록 중임.
- 2009년 초 7.73%를 기록한 회사채(3년 만기, AA-)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1/4분기 중 점진적 하락세를 보여 4월 6일 현재 6.01%까지 떨어진 상태임.
- 회사채 금리 하락에는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 뿐만 아니라 은행의 예금금리 하락으로 투자자들이 대체투자 상품으로 회사채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도 큼.
- 한편, 우량등급인 AA-급 회사채 금리는 2008년 말 7.72%에서 2009년 1월 말 6.29%로 0.43%p 하락한 반면, 비우량등급인 BBB-급 회사채 금리는 같은 기간 12.02%에서 12.16%로 0.14%p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금리 움직임은 최근 대기업으로의 자금쏠림 현상과 중소기업의 신용경색 현상을 잘 대변하고 있음.
- 향후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기준금리가 2.0%인 것을 감안할 때 추가인하 여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시장금리 역시 하락폭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그림 5> 장단기 금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6> 원화 환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원/달러 환율은 2009년 1/4분기 초반 주식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3월 들어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전망 등으로 달러화 공급이 늘어나면서 하락세로 반전되어 분기 전체로는 소폭 절하됨. 같은 기간 엔/달러 환율도 상승세를 보였으나 그 절하 폭이 원/달러 환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에 따라 원/엔 환율은 1/4분기 중 소폭 절하된 것으로 나타남.

- 원/달러 환율은 2009년 1/4분기 초반 가스공사 등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달러화 매입, 미국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NDF(Non Deliverable Forward) 환율 상승, Moody's사의 국내 은행 신용등급 하향 조정 발표 등의 요인으로 상승하였으나, 3월 들어 BoA(Bank of America) 대표의 실적호전 발언, 수출 대기업의 달러화 공급 등에 영향을 받아 하락세로 돌아섬.
- 2009년 초 1321.0원을 기록한 원/달러 환율은 미국 정부의 금융안정대책에 대한 실망감, 영국 및 동유럽 국가의 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적 요인과 국내 주식시장 침체, 2008년 4/4분기 GDP 성장을 부진 등의 대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승세를 보인 결과 3월 2일 1570.3원으로 분기 최고치를 기록함.
-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 만연하던 3월 금융위기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글로벌 주가상승, 3월 중 대규모 무역흑자 전망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로 반전되어 4월 6일 현재 1309.5원으로 장을 마감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안전 자산 선호 추세 등으로 초강세를 보여 왔던 일본 엔화는 2009년 들어 일본 주식시장 침체 장기화, 엔화가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들 것이라는 인식 확산 등의 영향으로 미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기 시작함.
- 2009년 1월 중 90엔 근처에서 공방을 벌이던 엔/달러 환율은 2월부터 서서히 절하되기 시작하여 3월에는 100엔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4월 7일 현재 100.85엔을 기록 중임.
- 3월 중반까지 원/달러 환율은 엔/달러 환율보다 더 큰 폭의 절하율을 기록하였으나, 3월 중반 이후 원/달러 환율이 절상되면서, 4월 6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연초대비 0.9% 절상, 엔/달러 환율은 연초대비 10.7% 절하되어 원/엔 환율 역시 연초대비 4.3% 절상된 것으로 나타남.

- 금년 중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준금리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절상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확대되면서 미 달러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동안 한국 원화가 다른 통화에 비해 저평가되어 왔다는 점과 경상수지 흑자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외국자본 유입 부진이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하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원화가 단기간 내에 큰 폭의 절상을 기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세계 주요 선진국 주가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가다 2009년 3월 초반 이후 상승하고 있으며 한국, 중국 등 일부 신흥국가의 경우 2008년 발생한 주가폭락에 대한 반등효과로 인해 2009년 1/4분기 중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 우려가 확산되면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까지 전이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 주가지수는 작년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가다 2009년 3월 초 이후 반등세를 보임.
- AIG와 GM의 파산 우려 증가, 동유럽 국가들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증대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혼란이 가중되면서 주요 선진국 주가지수는 하락세를 보이다 소폭 상승하여 미국의 다우존스지수의 경우 4월 6일 현재 연초대비 11.7% 하락한 7975.85를, 일본의 니케이지수 경우 같은 기간 2% 하락한 8857.93을 기록함.
- 중국은 상하이종합지수가 2008년 중 65.2%나 하락하여 반등이 여지가 큰 상황

에서 최근 중국의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각종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주가지수가 급등한 결과 상하이종합지수는 4월 3일 현재 2419.78을 기록하여 연초대비 2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주가지수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2008년 4/4분기 GDP 성장을 부진, Moody's사의 국내 은행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건설 및 조선사에 대한 긴급지원, 주요국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증대, 미 Bad Bank Fund의 구체화 보도 등에 영향을 받아 2009년 1/4분기 중 소폭 상승하였음.

○ 코스피지수는 4월 3일 현재 1283.75를 기록하여 연초대비 10.9% 상승한 반면, 코스닥지수는 2008년 중 큰 폭의 하락세(53.5% 하락)를 보인 반등효과로 인해 같은 기간 29.3%의 신장세를 보임.

□ 세계 증시의 침체 속에서 한국, 중국 등 일부 신흥국가의 주가지수가 2009년 1/4분기 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러한 주가상승은 2008년도 주가하락에 대한 반등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므로 주요국 증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활황을 되찾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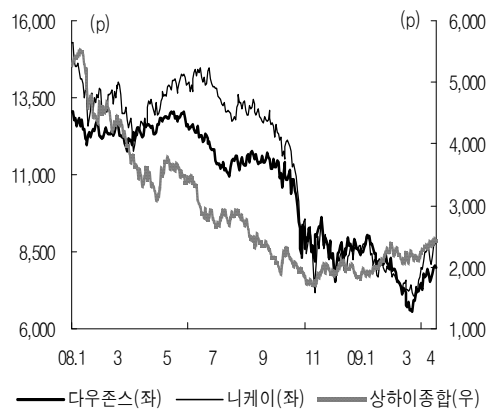
○ IMF 등 주요 국제기구가 세계경제의 회복기를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므로 2009년 중 세계 증시는 박스권 내에서 보합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음.

<그림 7> 국내 주가지수 추이



자료 : 국제금융센터

<그림 8> 해외 주가지수 추이



자료 : 국제금융센터

2008년 4/4분기 중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결과 조성된 원화외평기금이 자본시장에 유입되면서 은행, 투신, 증권, 종금 등은 전분기대비 순자금유입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특성상 단기적 자본운용이 힘든 보험부문은 상기 기금의 유입이 제한적이어서 전체적으로 자금의 순유입량이 소폭 감소함.

□ 2008년 4/4분기 중 정부는 환율 방어 차원에서 외국환평형기금에 있던 달러를 대규모로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시장개입을 하였는데, 이때 조달된 원화 자금이 투신사의 MMF 및 은행의 저축성예금 등으로 유입됨에 따라 은행, 투신, 증권, 종금 등은 전분기대비 순자금유입 증가를 기록함.

○ 반면, 특성상 단기로 운용되는 이들 원화 자금의 혜택을 보기 힘든 보험사의 경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순자본유입량이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함.

#### <표 15>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원, %)

| 구 분   | CY2007 |         |         |         | CY2008  |         |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 보 험   | 95,422 | 106,338 | 93,397  | 108,974 | 85,391  | 106,256 | 91,830   | 87,478  |
| - 생 보 | 74,700 | 83,189  | 70,215  | 84,269  | 64,517  | 79,050  | 66,710   | 62,368  |
| - 손 보 | 20,722 | 23,149  | 23,182  | 24,705  | 20,874  | 27,206  | 25,120   | 25,110  |
| 은 행   | 33,002 | 101,574 | 8,442   | 204,778 | 214,006 | 235,332 | 148,217  | 197,137 |
| - 일 반 | -2,513 | 114,075 | -42,781 | 187,062 | 142,969 | 291,219 | 145,463  | 218,569 |
| - 신 탁 | 35,515 | -12,501 | 51,223  | 17,716  | 71,037  | -55,887 | 2,754    | -21,432 |
| 증 권   | 29,858 | 85,722  | 37,556  | -13,605 | 6,184   | 47,423  | 1,782    | 2,938   |
| 투 신   | 73,030 | 163,893 | 112,258 | 269,007 | 377,948 | 239,132 | -167,059 | 185,113 |
| 종 금   | 60,303 | 79,432  | 37,691  | 14,457  | 34,881  | 43,348  | -55,532  | 4,640   |

주 :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 보험사는 4/4분기 중 수입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급보험금 증가의 영향으로 순수신 규모가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4/4분기 중 생명보험은 퇴직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전분기대비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지급보험금이 동시에 증가한 영향으로 순

수신 규모가 3/4분기에 비해 6.5% 감소하였으며, 손해보험은 수입보험료의 증가가가 있었으나 손해율 상승에 따른 지급보험금 증가로 순수신 규모가 전분기와 비교하여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은행권은 4/4분기 중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영향으로 증가한 원화 자금 중 일부가 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실세총예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 등에 유입되면서 일반계정 전체로 볼 때 전분기대비 7조 3,106억원의 순수신 증가가 발생함.
- 반면, 은행의 신탁계정은 증시침체에 따른 주가하락의 영향으로 자금유출 규모가 자금유입 규모를 초과하여 2조 1,432억원의 자금이 순유출 되었음.
- 증권사는 4/4분기 중 증시침체의 영향으로 고객예탁금에서 1,810억원의 순자금유출을 기록하였지만, 일종의 대기성 자금 성격을 가진 환매조건부채권으로 4,748억원의 자금이 순유입 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2,938억원의 순자금유입을 기록함.
- 투신권은 경기침체 및 주가하락의 영향으로 증권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 등에서 일체히 3~4조원 내외의 순자금유출을 기록하였으나,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조달된 원화자금이 MMF로 대거 유입됨에 따라 18조원 이상의 자금이 순유입 되었음.
-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조달된 원화외평기금은 4/4분기 중 39조 8,432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MMF 증가분 26조 5,727억원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액수임.
- 원화외평기금 증가분 중 약 1/3은 은행의 정기예금 등 다른 금융자산에 투자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자금운용 행태를 통해 정부가 당분간 환율하락에 따른 달러매수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종금사는 4/4분기 중 CMA 예탁금, 어음 매출 등에서 순자금유출을 기록하였지만 발행어음 증가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4,640억원의 자금이 순유입 되었음.

## 보험시장 동향

### 1. 보험산업 총괄

#### 가. 수입보험료

FY2007 4/4분기부터 성장세 둔화를 지속해오던 전체수입보험료는 FY2008 3/4분기에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감소와, 매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는 것도 주요 요인임.

□ FY2008 3/4분기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0% 감소한 29조 5,578 억원으로 3분기 연속 성장률 둔화 후 감소세로 반전됨.

- 특히, 생명보험은 주식시장 침체와 실물경제 위축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매년 고성장을 지속하던 변액보험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12.3% 감소함으로써 보험시장 침체를 주도하고 있음.
- 손해보험은 장기성 보험의 고성장과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세 유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의 하락세 전환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7.5% 성장에 그침.

**<표 1> 생·손보사 수입보험료**

(단위: 억원, %)

| 연도<br>종목 | FY2007  |         |         |         |           | FY2008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 생명보험     | 174,185 | 176,413 | 215,675 | 184,684 | 750,956   | 182,840 | 179,985 | 196,465 |
|          | 10.8    | 13.3    | 19.7    | 7.7     | 13.0      | 5.0     | 2.0     | -8.9    |
| 손해보험     | 79,300  | 81,659  | 92,201  | 86,658  | 339,818   | 89,550  | 91,408  | 99,113  |
|          | 14.5    | 12.9    | 18.3    | 13.6    | 14.9      | 12.9    | 11.9    | 7.5     |
| 합 계      | 253,485 | 258,072 | 307,876 | 271,342 | 1,090,774 | 272,390 | 271,393 | 295,578 |
|          | 12.0    | 13.2    | 19.2    | 9.5     | 13.6      | 7.5     | 5.2     | -4.0    |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08 3/4분기말 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생명보험의 저성장과 자산운용 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으로 인한 지급준비금 적립액 증가로 전분기대비 2.4% 증가함.

- FY2008 3/4분기말 보험산업 총자산은 수입보험료 감소와 투자여건 악화로 전분기대비 2.4% 증가한 392조 328억원에 머무름.
- 생명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의 감소와 지급보험금의 증가로 보험영업수지가 악화되고, 불안정한 투자여건으로 인해 투자영업수지 역시 악화되었으나 자본확충을 위한 유상증자 및 후순위채 발행으로 총자산이 전분기대비 2.1% 증가함.
  -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 유지로 인한 책임준비금의 증가로 자산운용 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분기대비 3.5% 증가를 실현함.

<표 2> 생·손보사 총자산

(단위 : 억원, %)

| 종목   | 연도 | FY2007    |           |           |           | FY2008    |           |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 생명보험 |    | 2,827,189 | 2,914,098 | 2,973,394 | 3,053,998 | 3,093,354 | 3,138,783 | 3,205,462 |
|      |    | 3.5       | 3.1       | 2.0       | 2.7       | 1.3       | 1.5       | 2.1       |
| 손해보험 |    | 595,159   | 613,256   | 638,392   | 660,151   | 680,358   | 690,602   | 714,866   |
|      |    | 4.5       | 3.0       | 4.1       | 3.4       | 3.1       | 1.5       | 3.5       |
| 합계   |    | 3,422,348 | 3,527,354 | 3,611,786 | 3,714,149 | 3,773,712 | 3,829,385 | 3,920,328 |
|      |    | 3.7       | 3.1       | 2.4       | 2.8       | 1.6       | 1.5       | 2.4       |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 생명보험

###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 <생명보험 전체>

- FY2008 3/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경기침체와 주식이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19조 6,465억원을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8.9% 감소함.
- 개인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망보험과 변액보험 수입보험료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시현함.
- 단체보험의 경우도 퇴직연금은 전년동기대비 47.4%로 급성장하였으나, 신규가입이 중단된 퇴직보험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33.2%로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25.0%의 감소세를 기록함.
- 생명보험의 총자산은 특별계정자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운용자산의 증가로 인한 일반계정자산의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2.1% 성장한 320조 5,462억원에 이름.
- 특별계정자산은 FY2008 2/4분기에 전분기대비 1.4% 증가하였으나 3/4분기에는 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변액보험의 위축으로 전분기대비 -0.9% 성장을 시현함.

<표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 구 분   | FY2007    |           |           |           |           | FY2008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 수입보험료 | 174,185   | 176,413   | 215,675   | 184,684   | 750,956   | 182,840   | 179,985   | 196,465   |
|       | 10.8      | 13.3      | 19.7      | 7.7       | 13.0      | 5.0       | 2.0       | -8.9      |
| 총 자 산 | 2,827,189 | 2,914,098 | 2,973,394 | 3,053,998 | 3,053,998 | 3,093,354 | 3,138,783 | 3,205,462 |
|       | 3.5       | 3.1       | 2.0       | 2.7       | 11.8      | 1.3       | 1.5       | 2.1       |

주 :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총자산의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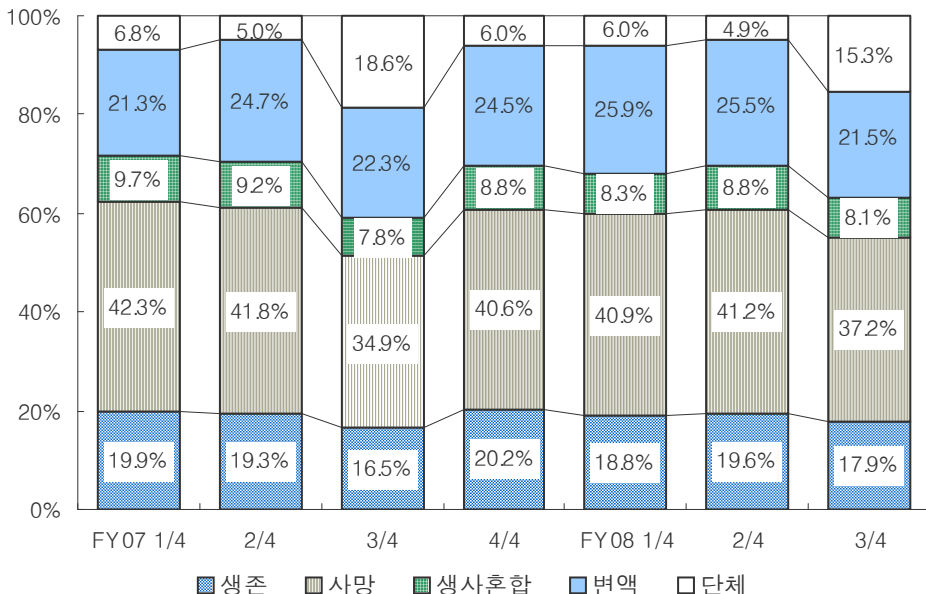
□ 주가하락과 실물경제의 본격적인 침체 영향으로 변액보험과 단체보험을 중심으로 수입보험료가 감소하면서 이들의 비중이 전년동기에 비해 축소됨.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의 비중은 FY2008 3/4분기 들어 금융위기에 따른 주가폭락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8%p 하락한 21.5%를 기록함.

○ 개인보험 중 변액보험을 제외한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은 모두 변액보험보다 마이너스 성장률이 될 심각하여 전년동기대비 비중이 다소 늘어났음.

○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수입보험료가 대폭적으로 감소하면서 그 비중이 18.6%에서 15.3%로 축소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 FY2008 3/4분기 들어 경기침체로 인한 신계약 감소와 해약률 증가로 생존·사망·생사혼합·변액보험 모두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2%로 감소한 16조 6,366억원을 기록함.
- 경기불황에 따라 연금상품 전반에 대한 수요가 약화되면서 개인연금의 증가세 둔화, 일반연금의 감소로 인하여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함.
- 방카슈랑스 채널의 상대적인 부진으로 저축성 상품의 성격이 강한 세제비적격 일반 연금이 전년동기대비 0.2% 감소하였고,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6.6% 증가로 전분기대비 2.5%p 하락함.
- 종신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위축과 낮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질병보험의 판매가 소극적임에 따른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7% 감소함.
- 저축성 상품인 생사혼합보험은 경기침체에 따른 보험수요가 둔화됨에 따라 FY2008 3/4분기에 -5.3% 성장을 기록하였고, 이러한 마이너스 성장은 FY2007 2/4분기 이후 지속되고 있음.
- 주식시장의 침체로 변액보험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12.3%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개인보험 중에서 가장 부진한 성장률을 기록함.
- 변액보험 중 변액연금은 전년동기대비 21.0% 감소하였는데 그 감소세가 전분기에 비해 더욱 심화되고 있고, 변액유니버설보험도 5.7% 감소함.
- 특별계정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이 전분기와는 달리 급성장을 이루었으나, 일반계정에 해당하는 단체보험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심화됨에 따라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5.0%가 감소한 3조 99억원을 기록함.
- 일반계정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신규가입이 중단된 퇴직보험의 극심한 감소세로 전년동기대비 25.0% 감소하면서 전분기에 비해 23.8%p 하락함.
- 퇴직연금은 FY2008 1/4분기 및 2/4분기에 신규가입세 감소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지만, FY2008 3/4분기 들어 지속적인 퇴직연금 활성화정책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47.4% 성장함.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 구 분      |     | FY2007  |         |         |         |         | FY2008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 생존       | 보험료 | 34,612  | 34,008  | 35,507  | 37,275  | 141,403 | 34,444  | 35,313  | 35,115  |
|          | 성장률 | 14.7    | 8.6     | 9.6     | 2.8     | 8.6     | -0.5    | 3.8     | -1.1    |
|          | 구성비 | 19.9    | 19.3    | 16.5    | 20.2    | 18.8    | 18.8    | 19.6    | 17.9    |
| 사망       | 보험료 | 73,721  | 73,777  | 75,176  | 75,026  | 297,700 | 74,786  | 74,189  | 73,160  |
|          | 성장률 | 5.8     | 4.1     | 4.2     | 2.8     | 4.2     | 1.4     | 0.6     | -2.7    |
|          | 구성비 | 42.3    | 41.8    | 34.9    | 40.6    | 39.6    | 40.9    | 41.2    | 37.2    |
| 생사<br>혼합 | 보험료 | 16,830  | 16,266  | 16,754  | 16,193  | 66,043  | 15,267  | 15,762  | 15,870  |
|          | 성장률 | 0.8     | -2.2    | -1.3    | -8.1    | -2.8    | -9.3    | -3.1    | -5.3    |
|          | 구성비 | 9.7     | 9.2     | 7.8     | 8.8     | 8.8     | 8.3     | 8.8     | 8.1     |
| 변액<br>보험 | 보험료 | 37,097  | 43,514  | 48,117  | 45,184  | 173,912 | 47,399  | 45,977  | 42,221  |
|          | 성장률 | 35.0    | 57.2    | 63.6    | 47.1    | 50.9    | 27.8    | 5.7     | -12.3   |
|          | 구성비 | 21.3    | 24.7    | 22.3    | 24.5    | 23.2    | 25.9    | 25.5    | 21.5    |
| 개인<br>계  | 보험료 | 162,260 | 167,565 | 175,555 | 173,678 | 679,058 | 171,896 | 171,241 | 166,366 |
|          | 성장률 | 12.6    | 14.4    | 16.3    | 10.2    | 13.4    | 5.9     | 2.2     | -5.2    |
|          | 구성비 | 93.2    | 95.0    | 81.4    | 94.0    | 90.4    | 94.0    | 95.1    | 84.7    |
| 단체       | 보험료 | 11,924  | 8,848   | 40,120  | 11,006  | 71,898  | 10,945  | 8,744   | 30,099  |
|          | 성장률 | -8.9    | -3.7    | 36.9    | -21.2   | 9.7     | -8.2    | -1.2    | -25.0   |
|          | 구성비 | 6.8     | 5.0     | 18.6    | 6.0     | 9.6     | 6.0     | 4.9     | 15.3    |
| 합계       | 보험료 | 174,185 | 176,413 | 215,675 | 184,684 | 750,956 | 182,840 | 179,985 | 196,465 |
|          | 성장률 | 10.8    | 13.3    | 19.7    | 7.7     | 13.0    | 5.0     | 2.0     | -8.9    |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8 3/4분기 수입보험료의 회사별 시장점유율은 변액보험 중심 방카슈랑스 채널의 부진 등으로 상위 3사 점유율이 전분기에 비해 증가한 반면, 외국사 점유율은 감소하고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은 일정 수준을 유지함.
- 보험수요 감소와 변액보험의 주요 판매채널인 방카슈랑스 채널이 변액보험 위축으로 인해 상대적 부진을 겪으면서 상위 3사의 임직원과 설계사에 의한 모집활동이 상대적으로 선전하여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55.2%로 전분기에 비해 반등 추세를 보임.
  - 방카슈랑스 채널을 주로 사용하는 외국사는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초회보험료 점유율 확보에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FY2008 3/4분기 21.5%의 점유율을 기록하였고, 이는 전분기대비 1.0%p 하락한 수치임.
  - 국내중소형사는 전년동기에 비해 방카슈랑스 채널을 이용한 초회보험료의 점유율 확대에 상대적으로 선전하여 점유율이 전년동기대비 2.1%p나 상승하였으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점유율이 다소 둔화됨.
  - 허핀달지수는 전분기대비 0.0039p 상승한 0.1288을 기록하여 경쟁도가 다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표 5〉 생명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 구 분    | FY2007 |        |        |        |            | FY2008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 상위 3개사 | 58.4   | 56.3   | 57.7   | 54.3   | 56.7 (2.5) | 54.3   | 54.1   | 55.2   |
| 외 국 사  | 22.1   | 23.5   | 21.1   | 23.7   | 23.0(28.7) | 22.3   | 22.5   | 21.5   |
| 국내중소형사 | 19.5   | 20.2   | 21.2   | 22.0   | 20.3(30.8) | 23.4   | 23.4   | 23.3   |
| 허핀달지수  | 0.1389 | 0.1326 | 0.1372 | 0.1268 | 0.1338     | 0.1257 | 0.1249 | 0.1288 |

주 : 1)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08년 12월말 알리안츠 등 9개사이며 ING, SH&C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10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5) 괄호는 연간 수입보험료 성장률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08 3/4분기 당기순이익은 2/4분기에 이어 3/4분기에도 보험영업수지가 크게 악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55.5% 감소한 7,610억원에 그침.

- 보험영업수익은 수입보험료 감소가 크게 작용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 성장에 머물고 지급보험금 증가에 따라 보험영업비용이 6.3% 증가하면서 보험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66% 감소함.
- 투자영업수지는 고환율에 따른 통화관련 파생상품 손실이 확대되면서 감소하였으며, 기타수지는 변액보험의 수입수수료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함.

<표 6> 생명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 구 분         |      | FY2007  |         |         | FY2008  |         |         |
|-------------|------|---------|---------|---------|---------|---------|---------|
|             |      | 2/4     | 3/4     | 4/4     | 1/4     | 2/4     | 3/4     |
| 총<br>수<br>익 | 보험영업 | 266,664 | 403,182 | 542,343 | 132,642 | 269,260 | 403,000 |
|             | 투자영업 | 74,675  | 109,810 | 153,452 | 42,759  | 91,747  | 143,107 |
|             | 기타   | 10,422  | 16,583  | 23,099  | 20,150  | 14,385  | 24,500  |
|             | 소계   | 351,761 | 529,575 | 718,894 | 195,551 | 375,392 | 570,606 |
| 총<br>비<br>용 | 보험영업 | 224,377 | 367,748 | 501,328 | 114,908 | 247,562 | 390,971 |
|             | 투자영업 | 10,741  | 17,750  | 28,558  | 10,584  | 31,576  | 57,118  |
|             | 기타비용 | 3,836   | 4,492   | 6,691   | 14,864  | 2,835   | 5,334   |
|             | 소계   | 238,954 | 389,990 | 536,577 | 140,356 | 281,973 | 453,423 |
| 수<br>지<br>차 | 보험영업 | 42,287  | 35,434  | 41,015  | 17,734  | 21,698  | 12,029  |
|             | 투자영업 | 63,934  | 92,060  | 124,894 | 32,175  | 60,171  | 85,989  |
|             | 기타   | 6,586   | 12,091  | 16,408  | 5,285   | 11,550  | 19,166  |
|             | 소계   | 112,807 | 139,585 | 182,318 | 55,194  | 93,419  | 117,184 |
| 준비금전입       |      | 94,186  | 116,423 | 153,417 | 47,126  | 83,510  | 107,029 |
| 법인세         |      | 4,848   | 6,068   | 7,846   | 2,287   | 2,436   | 2,545   |
| 당기순이익       |      | 13,774  | 17,093  | 21,054  | 5,782   | 7,473   | 7,610   |

주 :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이며 기타손익은 기타수지 및 특별손익의 합계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 〈보험금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08 3/4분기 보험금지급률은 해약환급금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생존, 사망, 변액보험 모두 증가하였으나 생사혼합보험은 기저효과로 감소세를 시현함.
- 생존, 사망, 변액보험은 모두 해약환급금을 중심으로 지급보험금이 증가하였으며 수입보험료마저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보험금지급률이 상승하였고 생사혼합보험은 전년도 만기도래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세를 나타냄.
- FY2008 3/4분기 신계약률은 전년동기대비 0.6%p 감소한 17.5%를 나타냈으며 지속적으로 초회보험료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함.
- 해약률은 최근 3분기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3/4분기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4%p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표 7〉 생명보험 보험금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약률

(단위 : %)

| 구 분     | FY2007 |       |       |       |       | FY2008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 보험금지급률  | 52.2   | 60.2  | 60.9  | 65.1  | 59.8  | 56.8   | 62.9  | 68.3  |
| - 생 존   | 60.0   | 75.0  | 84.3  | 75.5  | 73.8  | 66.3   | 88.5  | 106.9 |
| - 사 망   | 37.4   | 40.3  | 43.8  | 44.6  | 41.6  | 41.9   | 47.6  | 53.3  |
| - 생사혼합  | 108.4  | 138.5 | 212.5 | 164.3 | 155.9 | 122.7  | 115.7 | 121.6 |
| - 변 액   | 30.1   | 35.0  | 38.8  | 30.9  | 33.9  | 31.4   | 30.3  | 39.7  |
| - 개 인 계 | 47.9   | 55.5  | 66.7  | 58.8  | 57.4  | 51.1   | 57.6  | 67.7  |
| 사 업 비 율 | 17.8   | 18.9  | 17.2  | 20.3  | 18.5  | 19.2   | 19.7  | 18.8  |
| 신 계 약 률 | 5.4    | 11.6  | 18.1  | 25.5  | 25.5  | 5.9    | 11.5  | 17.5  |
| 해 약 률   | 2.8    | 5.4   | 8.0   | 10.3  | 10.3  | 3.0    | 6.1   | 9.4   |

주 : 1) 보험금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실제사업비/수입보험료,  
신계약률=신계약액/연초보유계약액,  
해약률=(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2) 신계약률과 해약률은 누계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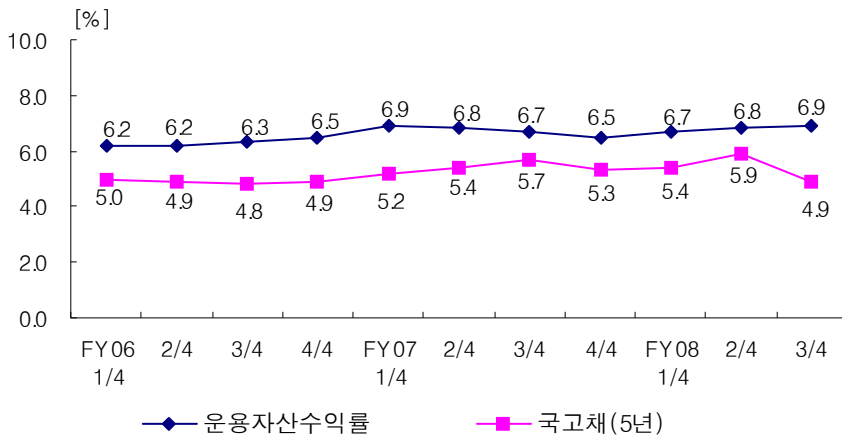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 〈자산 운용〉

□ FY2008 3/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운용자산수익률은 대출채권, 부동산 등의 수익률 증가로 전년동기에 비해 0.2%p 증가한 6.9%를 시현함.

- 자산종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유가증권의 비중이 감소하고 대출채권의 비중은 증가하는 흐름을 이어감.
- 유가증권 수익률은 전년동기와 같은 6.2%를 기록하였으나 대출채권과 부동산의 수익률이 각각 0.1%p, 1.7%p 증가함.
- 특별계정자산 수익률은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3.2%p 감소한 8.0%를 기록함.

〈그림 2〉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운용자산의 투자수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자산수익률 = (투자영업수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투자영업수익) × (연기준 환산)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은행 ECOS

<표 8>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억원)

| 구 분                      | FY2007          |      |                 |      | FY2008          |      |                 |      |                 |      |
|--------------------------|-----------------|------|-----------------|------|-----------------|------|-----------------|------|-----------------|------|
|                          | 3/4             |      | 4/4             |      | 1/4             |      | 2/4             |      | 3/4             |      |
|                          | 구성비             | 수익률  | 구성비             | 수익률  | 구성비             | 수익률  | 구성비             | 수익률  | 구성비             | 수익률  |
| 현 금 과 예 금                | 3.2             | 4.2  | 3.2             | 4.5  | 3.0             | 5.4  | 3.5             | 4.9  | 4.6             | 4.6  |
| 유 가 증 권                  | 59.4            | 6.2  | 59.7            | 6.3  | 59.3            | 6.2  | 58.6            | 6.2  | 57.8            | 6.2  |
| ○ 단기매매증권                 | 1.9             | 12.1 | 1.5             | 10.9 | 1.4             | 8.4  | 1.2             | 8.3  | 1.4             | 6.6  |
| - 주 식                    | 0.2             | 56.6 | 0.2             | 43.7 | 0.2             | 21.6 | 0.1             | 11.7 | 0.0             | 11.8 |
| - 채권 등                   | 0.8             | 8.5  | 0.7             | 8.1  | 0.6             | 6.6  | 0.6             | 4.5  | 0.5             | 5.3  |
| - 수익증권                   | 0.9             | 9.7  | 0.6             | 8.8  | 0.7             | 7.0  | 0.5             | 12.1 | 0.8             | 7.1  |
| ○ 매도가능증권                 | 46.1            | 5.6  | 46.8            | 6.0  | 46.4            | 6.0  | 45.7            | 6.0  | 45.0            | 6.1  |
| - 주 식                    | 5.2             | 3.2  | 5.2             | 5.4  | 5.2             | 3.2  | 4.6             | 2.9  | 3.9             | 2.5  |
| - 채권 등                   | 37.1            | 5.7  | 38.1            | 5.7  | 37.8            | 5.7  | 37.8            | 5.7  | 37.8            | 6.1  |
| - 수익증권                   | 3.8             | 7.9  | 3.5             | 10.0 | 3.4             | 13.8 | 3.3             | 14.1 | 3.2             | 11.3 |
| ○ 만기보유증권                 | 10.5            | 5.7  | 10.5            | 5.8  | 10.5            | 5.8  | 10.7            | 6.3  | 10.5            | 6.3  |
| - 채권 등                   | 10.5            | 5.7  | 10.5            | 5.8  | 10.5            | 5.8  | 10.7            | 6.3  | 10.5            | 6.3  |
| - 수익증권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0.0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0.9             | 30.8 | 0.9             | 22.7 | 1.0             | 17.5 | 1.0             | 12.6 | 0.9             | 8.3  |
| 대 출 채 권                  | 22.7            | 9.0  | 22.6            | 9.2  | 23.3            | 8.7  | 23.6            | 8.9  | 23.6            | 9.1  |
| 부 동 산                    | 4.1             | 4.2  | 4.0             | 4.3  | 4.1             | 4.4  | 4.1             | 5.0  | 3.9             | 5.9  |
| 운 용 자 산 계                | 89.4            | 6.7  | 89.6            | 6.9  | 89.7            | 6.7  | 89.7            | 6.8  | 89.9            | 6.9  |
| 비 운 용 자 산                | 10.6            | 2.1  | 10.4            | 3.6  | 10.3            | 7.2  | 10.3            | 11.8 | 10.1            | 14.0 |
| 일 반 계 정 자 산 계<br>(자산운용율) | 100.0<br>(83.5) | 6.2  | 100.0<br>(82.9) | 6.5  | 100.0<br>(82.5) | 6.8  | 100.0<br>(82.5) | 7.3  | 100.0<br>(83.0) | 7.6  |
| 특 별 계 정 자 산              | 16.5            | 11.2 | 17.1            | 9.4  | 17.5            | 7.1  | 17.5            | 5.8  | 17.0            | 8.0  |
| 총 자 산                    | 100.0           | 7.0  | 100.0           | 7.0  | 100.0           | 6.8  | 100.0           | 7.0  | 100.0           | 7.6  |
| 총 자 산 규 모                | 2,973,394       |      | 3,053,998       |      | 3,093,354       |      | 3,138,783       |      | 3,205,462       |      |

주 : 1) 수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08 3/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설계사와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동반 감소하였으며 임직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 이는 임직원이 주채널인 단체보험의 초회보험료 감소세가 개인보험 초회보험료 감소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단체보험과 개인보험 초회보험료는 각각 30.5%, 61.1% 감소함.
- 설계사와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모두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방카슈랑스가 설계사에 비해 컸으며, 이는 변액보험에서의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 실적이 좋지 않은데 따른 것임.
- 대리점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6%p 감소하면서 2/4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냄.

<표 9>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 억원)

| 구 분   | FY2007 |        |        |        |         | FY2008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 임 직 원 | 12.3   | 11.5   | 19.9   | 11.9   | 14.4    | 13.2   | 18.9   | 29.5   |
| 설 계 사 | 43.0   | 46.6   | 42.2   | 44.9   | 42.0    | 35.5   | 36.3   | 39.9   |
| 대 리 점 | 8.2    | 10.0   | 11.3   | 9.2    | 9.4     | 8.6    | 7.9    | 9.7    |
| 중 개 사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방카슈랑스 | 36.5   | 31.8   | 26.7   | 34.0   | 34.2    | 42.5   | 36.7   | 20.7   |
| 기 타   | 0.0    | 0.0    | 0.0    | 0.0    | 0.0     | 0.1    | 0.1    | 0.1    |
| 합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23,630 | 26,322 | 31,783 | 49,951 | 107,478 | 20,072 | 17,429 | 14,364 |

주 : 1) 모집형태별 통계 중 일부 회사의 업무보고서 자료를 수정함.  
 2) 보험회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08 3/4분기 설계사, 대리점 수는 전분기대비 모두 증가하였으며, 임직원 수는 소폭 감소함.
- 설계사수는 교차판매 설계사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 2/4분기 크게 증가한 후 3/4분기에는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함.
- 금감원에 따르면 2008년 9월~2009년 2월 중 손해보험 설계사가 생명보험 교차모집 설계사로 등록한 인원은 2만 7천명인 것으로 나타남.
- 설계사 중 남성설계사 증가율은 여성설계사 증가율을 계속해서 앞서고 있으며 전분기대비 남성설계사 수는 3.9% 증가한 반면 여성설계사 수는 0.7% 증가하는데 그침.
- 대리점 수는 2/4분기 이후 계속해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며 이는 특정 대형사의 공격적인 확장에 의한 것임.

〈표 10〉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 명, 개)

| 구 분   | FY2007  |         |         |         | FY2008  |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 임 직 원 | 26,848  | 27,070  | 27,105  | 29,111  | 27,807  | 28,147  | 28,137  |
| 설 계 사 | 135,416 | 136,772 | 139,510 | 144,324 | 148,763 | 173,434 | 176,090 |
| 대 리 점 | 10,048  | 10,400  | 10,667  | 11,124  | 11,411  | 12,584  | 13,695  |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3. 손해보험

####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 <손해보험 전체>

- FY2008 3/4분기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장기 손해보험 및 개인연금의 고성장, 일반손해보험의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7.5% 증가한 9조 9,113억원을 기록함.
-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의 장기성 보험은 두 자리수의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FY2008 3/4분기에도 장기손해보험은 14.4%, 개인연금은 29.1%의 성장률을 기록함.
- 경기침체로 작년 말부터 본격화된 신차 판매량 및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 현상은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임.
- 일반손해보험은 화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해상보험의 고성장 및 보증, 특종보험 등의 성장세 유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3.9%의 성장을 시현함.

<표 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 구 분   | FY2007  |         |         |         |         | FY2008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 원수보험료 | 79,300  | 81,659  | 92,201  | 86,658  | 339,818 | 89,550  | 91,408  | 99,113  |
|       | 14.5    | 12.9    | 18.3    | 13.6    | 14.9    | 12.9    | 11.9    | 7.5     |
| 총 자 산 | 595,159 | 613,256 | 638,392 | 660,151 | 660,151 | 680,358 | 690,602 | 714,866 |
|       | 4.5     | 3.0     | 4.1     | 3.4     | 15.9    | 3.1     | 1.5     | 3.5     |

주 : 1) 주요 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감률이며,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원수보험료는 특별계정 포함, 부수사업은 제외된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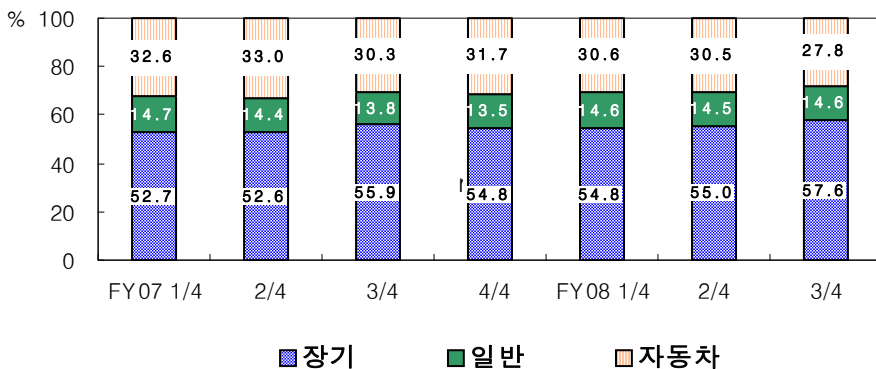
- FY2008 3/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3.5% 성장한 71조 4,866억원을 기록해 70조원을 돌파함.

- 여기에는 손해보험회사의 장기손해보험 고성장세 지속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증가, 투자수지 확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 FY2008 3/4분기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은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 장기손해보험이 57.6%, 자동차보험이 27.8%, 일반손해보험이 14.6%를 차지하고 있음.
- 장기보험의 비중은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퇴직, 개인연금의 원수보험료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7%p 상승하였음.
- 반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FY2007 4/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축소되고 있으며, FY2008 3/4분기에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함.
  - 과거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40%대를 차지했던 자동차보험은 FY2002 2/4분기에 30%대의 점유율로 진입하였으며, 이후 6년간 30%대의 구성비를 유지하고 있었음.
- 일반손해보험의 구성비는 전년동기에 비해 0.8%p 상승한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FY2008 1/4분기 이후 동일한 수준의 비중을 이어가고 있음.

〈그림 3〉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주 : 1) 원수보험료 기준이며, 분기별 실적임.

2) 장기보험은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3) 일반손해보험에는 화재, 해상, 보증, 특종, 권원보험, 해외원보험이 포함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8 3/4분기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2조 7,57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 감소하여, FY2003 3/4분기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FY2008 중반 고유가로 인한 운행거리 및 사고율 감소로 보험료가 인하되었고, 작년 말부터 신차 판매와 자동차 등록대수도 크게 줄면서 자동차보험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음.
  - 또한, 온라인 판매채널 점유율이 FY2008 3/4분기에 처음으로 20%대를 돌파하면서 자동차보험시장 전반에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도 자동차보험시장 침체의 주요 요인임.
- FY2008 3/4분기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상해 및 질병보험의 고성장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4.4% 성장한 4조 7,656억원을 기록함.
- 상해보험(24.6%), 질병보험(23.9%), 통합형 보험(17.2%), 저축성(8.7%) 등이 높은 원수보험료 성장률을 시현하면서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을 견인함.
  - 인구고령화에 따른 건강 보장 수요의 증대로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장기손해보험의 55.8%를 차지하고 있음.
  - 통합형 보험은 의료서비스, 건강검진서비스, 장례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판매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손해율 상승 등으로 판매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성장률은 감소하고 있음.
  - 저축성보험은 상대적으로 높은 공시이율과 적립이율을 주가지수에 연동한 투자형 상품이 개발되고는 있으나, 자산운용환경의 악화로 전년동기대비 8.7%의 성장률을 기록해 다소 성장 폭이 둔화됨.
  - 반면, 운전자보험은 전년동기대비 -3.4%의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별법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중과실 사고가 아닌 중상해 사고에도 형사합의가 필요해져 운전자보험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초회보험료 기준으로는 최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22.4%의 높은 성장을 보여, 원수보험료 대비 초회성장이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FY2006 4/4분기 이후 원수보험료 대비 초회성장이 크게 밀도는 추세였으나, 최근 질병보험 및 상해보험이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초회와 원수보험료 성장률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남.

<표 12>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 구 분        |     | FY2007 |        |        |        |         | FY2008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 화 재        | 보험료 | 743    | 679    | 878    | 775    | 3,075   | 701    | 632    | 792    |
|            | 성장률 | -1.8   | -5.2   | -2.6   | 2.3    | -1.8    | -5.7   | -6.9   | -9.8   |
|            | 구성비 | 0.9    | 0.8    | 1.0    | 0.9    | 0.9     | 0.8    | 0.7    | 0.8    |
| 해 상        | 보험료 | 1,735  | 1,783  | 1,486  | 1,514  | 6,518   | 2,166  | 1,912  | 2,564  |
|            | 성장률 | -17.4  | 11.2   | 13.9   | 15.2   | 3.1     | 24.9   | 7.2    | 72.6   |
|            | 구성비 | 2.2    | 2.2    | 1.6    | 1.7    | 1.9     | 2.4    | 2.1    | 2.6    |
| 자동차        | 보험료 | 25,838 | 26,913 | 27,900 | 27,444 | 108,095 | 27,397 | 27,846 | 27,574 |
|            | 성장률 | 14.3   | 10.6   | 14.1   | 9.3    | 12.0    | 6.0    | 3.5    | -1.2   |
|            | 구성비 | 32.6   | 33.0   | 30.3   | 31.7   | 31.8    | 30.6   | 30.5   | 27.8   |
| 보 증        | 보험료 | 2,424  | 2,341  | 2,602  | 2,573  | 9,940   | 2,814  | 2,928  | 2,821  |
|            | 성장률 | -18.4  | -12.2  | -15.3  | -5.3   | -13.0   | 16.1   | 25.1   | 8.4    |
|            | 구성비 | 3.1    | 2.9    | 2.8    | 3.0    | 2.9     | 3.1    | 3.2    | 2.8    |
| 특 중        | 보험료 | 6,584  | 6,728  | 7,455  | 6,478  | 27,245  | 7,209  | 7,488  | 7,668  |
|            | 성장률 | 7.2    | 9.2    | 9.4    | 10.3   | 9.0     | 9.5    | 11.3   | 2.8    |
|            | 구성비 | 8.3    | 8.2    | 8.1    | 7.5    | 8.0     | 8.1    | 8.2    | 7.7    |
| 해 외<br>원보험 | 보험료 | 191    | 254    | 298    | 383    | 1,126   | 224    | 341    | 637    |
|            | 성장률 | 22.4   | 23.9   | 7.1    | 108.7  | 36.8    | 16.9   | 34.2   | 113.9  |
|            | 구성비 | 0.2    | 0.3    | 0.3    | 0.4    | 0.3     | 0.2    | 0.4    | 0.6    |
| 장 기        | 보험료 | 38,628 | 39,850 | 41,650 | 43,308 | 163,436 | 44,857 | 46,357 | 47,656 |
|            | 성장률 | 22.4   | 19.5   | 19.6   | 16.8   | 19.5    | 16.1   | 16.3   | 14.4   |
|            | 구성비 | 48.7   | 48.8   | 45.2   | 50.0   | 48.1    | 50.1   | 50.7   | 48.1   |
| 개 인<br>연 금 | 보험료 | 2,265  | 2,388  | 2,629  | 2,713  | 9,995   | 2,907  | 3,104  | 3,394  |
|            | 성장률 | 23.4   | 26.8   | 24.0   | 27.0   | 25.3    | 28.3   | 30.0   | 29.1   |
|            | 구성비 | 2.9    | 2.9    | 2.9    | 3.1    | 2.9     | 3.2    | 3.4    | 3.4    |
| 퇴 직<br>보 험 | 보험료 | 765    | 510    | 6,047  | 935    | 8,258   | 518    | 410    | 4,770  |
|            | 성장률 | -31.7  | 424.6  | 48.6   | -8.1   | 26.2    | -32.4  | -19.7  | -21.1  |
|            | 구성비 | 1.0    | 0.6    | 6.6    | 1.1    | 2.4     | 0.6    | 0.4    | 4.8    |
| 퇴 직<br>연 금 | 보험료 | 127    | 214    | 1,256  | 536    | 2,133   | 756    | 389    | 1,238  |
|            | 성장률 | 971.8  | -78.9  | 758.8  | 308.1  | 61.0    | -32.4  | -19.7  | -1.5   |
|            | 구성비 | 0.2    | 0.3    | 1.4    | 0.6    | 0.6     | 0.8    | 0.4    | 1.2    |
| 계          | 보험료 | 79,300 | 81,659 | 92,201 | 86,658 | 339,818 | 89,550 | 91,408 | 99,113 |
|            | 성장률 | 14.5   | 12.9   | 18.3   | 13.6   | 14.9    | 12.9   | 11.9   | 7.5    |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화재보험의 원수보험료는 FY2008 3/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9.8% 감소한 792억원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하강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건설투자부문의 침체 장기화가 화재보험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해상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조선건조량 및 고가선박 증가 추세, 환율상승에 따른 보험료 환차익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72.6% 성장한 2,564억원을 기록함.
- 우리나라 선박 및 항공보험은 전세계 해운경기 침체로 인한 선박량 감축에도 불구하고 환율상승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46.2%, 52.2%가 성장하였으며, 2008년 하반기 수출입 물동량 증가로 적하 및 운송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7.2%, 20.5%의 양호한 성장세를 시현함.
- FY2008 3/4분기 보증보험의 원수보험료는 2,82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4% 상승함.
-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상해부문의 성장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2.8% 성장한 7,668억원을 시현함.
- 고령화 사회에 따른 건강, 질병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상해보험 시장 활성화가 지속되면서 특종보험의 36.1%를 차지해 가장 큰 구성비를 보임.
- 반면, 기술보험과 종합보험은 건설 및 민간투자 위축세 지속과 보험료 인하 효과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6.6%, -4.0%의 역성장을 기록함.
- 책임보험은 실화책임법 적용중지 선고에 따른 배상책임 보상범위 확대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증대로 시장은 확장되고 있으나, 건설공제 등 유사보험의 역할 확대로 보험료 수준은 전년동기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남.
- 기타 특종보험은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침으로 인해 분양손실보험(CI) 및 부동산보장가액보상보험(AVI)의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31.1% 성장함.
- 개인연금의 원수보험료는 사회 구성원의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9.1% 성장한 3,394억원을 기록함.
- 이는 FY2008 1/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30%에 육박하는 고성장을 시현하는 것으로 개인연금의 세제혜택과 동시에 일정기간 의무가입으로 수익률보다는 보험

사의 안정성을 감안한 소비자의 선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FY2008 3/4분기 퇴직보험은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2008년 9월 이후 보험계약의 해약 및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21.1% 감소한 4,770억원을 기록하였음.
- 또한, 2010년까지 퇴직보험(신탁)이 퇴직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자간 계약 유치 경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 퇴직연금의 경우 2008년도 퇴직연금적립금액이 6조원을 돌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두 배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불안정한 금융시장 여건으로 성장세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보험사의 퇴직연금 유형은 확정급여형(DB형)이 8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금융권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연금 운용 성향을 보이고 있음.

####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 및 손해율〉

- FY2008 3/4분기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 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1% 감소되었으나, 종합보험은 4.3% 증가함.
- 전체 대인배상 I 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63.0%)하는 개인용 차량 원수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1.9% 마이너스 성장한 것이 대인배상 I 원수보험료 감소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개인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의 대인배상 I 원수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1.9%, -1.0% 감소한 반면, 영업용 차량의 원수보험료는 오히려 6.0% 증가해 대조를 보임.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3% 성장함으로써 전체 자동차보험 성장률 2.7%를 웃돌고 있으나, 대인배상 II 원수보험료는 오히려 전년동기대비 -1.6%의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함.
- 대인배상 I · II 의 원수보험료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것은 작년 말 보험료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아울러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신차 판매량 및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감소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이륜자동차는 전년동기대비 38.2%의 원수보험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작년부터 손해율 실적에 따라 이륜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해 차등화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보험회사들의 이륜자동차 인수 기피 관행이 다소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의 손해율은 68~70%를 기록하며 70%대 중반을 기록했던 전년동기에 비해 양호한 손해율을 기록 중임.
  - 대인배상 I 의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5.8%p 하락한 68.4%로 전체 손해율 69.6%를 하회하고 있음.
  - 그러나 전분기인 FY2008 2/4분기가 전년동기대비 8.9%p 더 큰 하락폭을 기록한 점과 FY2008 3/4분기 손해율이 전분기 손해율 65.3%보다 3.1%p 상승한 점은 손해율 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줌.
  - 종합보험의 경우, 영업용 대인배상II와 무보험을 제외하고 전년동기대비 전담보에서 손해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통적으로 손해율이 높은 이륜자동차는 FY2007 120%를 상회하다가 꾸준히 하락, FY2008 3/4분기에는 103.1%까지 하락하는 등 보험회사들의 이륜자동차 손해율 개선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표 13>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 및 손해율

(단위 : 억원, %)

| 구 분   |     | FY2007 |       |        |       |         |       | FY2008 |       |        |       |        |       |
|-------|-----|--------|-------|--------|-------|---------|-------|--------|-------|--------|-------|--------|-------|
|       |     | 2/4    |       | 3/4    |       | 4/4     |       | 1/4    |       | 2/4    |       | 3/4    |       |
|       |     | 보험료    | 손해율   | 보험료    | 손해율   | 보험료     | 손해율   | 보험료    | 손해율   | 보험료    | 손해율   | 보험료    | 손해율   |
| 대인 I  | 개인용 | 11,514 | 73.9  | 17,583 | 73.4  | 23,365  | 72.0  | 5,619  | 65.7  | 11,462 | 64.9  | 17,243 | 68.4  |
|       | 업무용 | 5,287  | 72.5  | 8,048  | 73.8  | 10,765  | 71.3  | 2,717  | 62.8  | 5,346  | 64.6  | 7,969  | 67.2  |
|       | 영업용 | 1,351  | 82.9  | 2,024  | 83.0  | 2,737   | 79.3  | 742    | 69.7  | 1,460  | 71.4  | 2,146  | 73.2  |
|       | 소계  | 18,152 | 74.2  | 27,655 | 74.2  | 36,867  | 72.3  | 9,077  | 65.2  | 18,268 | 65.3  | 27,358 | 68.4  |
| 대인 II | 개인용 | 3,524  | 75.0  | 5,377  | 75.1  | 7,131   | 77.5  | 1,722  | 90.8  | 3,525  | 80.9  | 5,303  | 73.4  |
|       | 업무용 | 1,800  | 70.9  | 2,748  | 74.4  | 3,673   | 77.2  | 906    | 89.8  | 1,779  | 81.7  | 2,672  | 72.8  |
|       | 영업용 | 885    | 76.8  | 1,327  | 79.2  | 1,787   | 82.3  | 461    | 97.0  | 907    | 92.7  | 1,324  | 81.3  |
|       | 소계  | 6,209  | 74.1  | 9,452  | 75.5  | 12,591  | 78.1  | 3,089  | 91.4  | 6,211  | 82.9  | 9,299  | 74.4  |
| 대물    | 개인용 | 7,517  | 80.9  | 11,492 | 80.6  | 15,296  | 78.8  | 4,052  | 70.9  | 8,405  | 72.1  | 12,798 | 73.6  |
|       | 업무용 | 3,504  | 78.3  | 5,364  | 79.5  | 7,202   | 77.8  | 1,880  | 71.0  | 3,711  | 73.0  | 5,640  | 75.4  |
|       | 영업용 | 930    | 86.9  | 1,419  | 88.4  | 1,936   | 86.1  | 541    | 80.9  | 1,069  | 83.9  | 1,593  | 85.4  |
|       | 소계  | 11,951 | 80.6  | 18,275 | 80.9  | 24,434  | 79.1  | 6,473  | 71.8  | 13,186 | 73.4  | 20,031 | 75.1  |
| 종합보험  | 개인용 | 9,400  | 69.8  | 14,481 | 69.9  | 19,606  | 69.7  | 4,955  | 63.8  | 9,856  | 65.5  | 14,879 | 68.0  |
|       | 업무용 | 2,821  | 64.8  | 4,322  | 65.2  | 5,917   | 65.0  | 1,566  | 57.8  | 2,975  | 60.9  | 4,444  | 63.9  |
|       | 영업용 | 116    | 64.6  | 182    | 67.4  | 260     | 66.0  | 78     | 56.5  | 149    | 57.9  | 224    | 58.9  |
|       | 소계  | 12,338 | 68.6  | 18,986 | 68.8  | 25,784  | 68.6  | 6,599  | 62.4  | 12,980 | 64.4  | 19,547 | 67.0  |
| 자손    | 개인용 | 1,265  | 64.4  | 1,944  | 60.2  | 2,584   | 59.6  | 618    | 50.1  | 1,443  | 55.8  | 1,893  | 56.0  |
|       | 업무용 | 526    | 60.6  | 810    | 58.8  | 1,090   | 56.5  | 280    | 47.1  | 602    | 49.1  | 832    | 52.3  |
|       | 영업용 | 83     | 53.2  | 126    | 56.5  | 175     | 59.0  | 52     | 51.1  | 107    | 51.3  | 159    | 52.5  |
|       | 소계  | 1,874  | 62.8  | 2,880  | 59.6  | 3,849   | 58.7  | 650    | 49.3  | 2,152  | 53.7  | 2,884  | 54.8  |
| 무보험   | 개인용 | 428    | 58.9  | 647    | 54.6  | 860     | 51.0  | 208    | 20.9  | 430    | 32.8  | 649    | 36.3  |
|       | 업무용 | 120    | 38.5  | 176    | 34.7  | 237     | 34.8  | 53     | 31.0  | 105    | 26.2  | 158    | 34.2  |
|       | 영업용 | 15     | -5.9  | 22     | -4.8  | 29      | -0.7  | 8      | 13.8  | 16     | 23.2  | 24     | 9.9   |
|       | 소계  | 563    | 53.0  | 845    | 48.9  | 1,126   | 46.2  | 268    | 22.8  | 550    | 31.2  | 831    | 35.1  |
| 계     |     | 32,935 | 73.3  | 50,437 | 73.5  | 67,784  | 73.2  | 17,380 | 69.7  | 35,080 | 69.9  | 52,591 | 70.1  |
| 외화표시  |     | 46     | 67.6  | 78     | 73.6  | 100     | 74.2  | 33     | 59.7  | 63     | 67.0  | 105    | 63.8  |
| 운전자   |     | 2      | 30.3  | 2      | 65.9  | 2       | 58.3  | 0      | -85.0 | 1      | 67.4  | 2      | 55.3  |
| 이륜자동차 |     | 178    | 128.2 | 262    | 133.4 | 350     | 120.5 | 127    | 107.2 | 256    | 107.7 | 362    | 103.1 |
| 기타    |     | 1,438  | 70.9  | 2,216  | 70.3  | 2,991   | 68.9  | 780    | 60.5  | 1,577  | 67.1  | 2,400  | 68.9  |
| 총계    |     | 52,750 | 73.7  | 80,650 | 73.9  | 108,094 | 73.0  | 27,397 | 68.1  | 55,243 | 68.4  | 82,818 | 69.6  |

주 : 1) 분기별 누적치임.

2) 보험료는 원수보험료이며,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임.

3)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4)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8 3/4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은 중소형사의 장기보험 판매 실적 증가로 대형사의 비중이 전년동기에 비해 소폭 축소되었고, 전업사 및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남.

-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1.6%p 감소한 68.8%로 나타났으며, 중소형사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9%p 상승한 24.4%를 기록함.
- 반면, 온라인 단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장기보험 판매가 호조를 보였지만, 자동차보험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온라인 판매채널 성장세가 꺾이면서 전년동기대비와 동일한 3.6%의 비중을 차지함.
- 대형사의 시장점유율 감소와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허핀달지수는 0.1441을 기록하면서 전년동기에 비해 시장집중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 14> 손해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

| 구 분       |        | FY2007 |        |        |        |            | FY2008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 점유비       | 상위4개사  | 70.6   | 70.7   | 70.4   | 70.1   | 70.1(13.0) | 69.1   | 68.9   | 68.8   |
|           | 일반사 계  | 94.0   | 93.9   | 93.9   | 93.9   | 93.9(13.5) | 93.8   | 93.7   | 93.2   |
|           | 온라인단종사 | 3.5    | 3.6    | 3.6    | 3.7    | 3.7(43.5)  | 3.6    | 3.6    | 3.6    |
|           | 전 업 사  | 3.1    | 3.0    | 3.0    | 3.0    | 3.0(-13.0) | 3.2    | 3.2    | 3.2    |
|           | 외 국 사  | 2.9    | 3.1    | 3.1    | 3.1    | 3.1(151.4) | 3.7    | 3.7    | 3.7    |
| 허 핀 달 지 수 |        | 0.1507 | 0.1518 | 0.1503 | 0.1487 | 0.1487     | 0.1453 | 0.1447 | 0.1441 |

주 : 1) 일반사 계에는 온라인단종사(더케이, 현대하이카, 에르고다움다이렉트)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재보 6사, 외국사는 교보AXA자동차, 에르고다움다이렉트, AIG, ACE, 페더럴, 퍼스트아메리카, 미쓰이, 동경해상일동 8개사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누적기준 실적치이며, ( )는 전년동기대비 원수보험료 성장률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나. 경영수지

### <총수익 총비용>

- FY2008 3/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성과는 보험영업이익이 -2,768억원의 큰 폭의 적자로 전환되었으나, 투자영업이익에서 흑자가 발생하여 1조 2,12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함.
- 보험영업 총수익은 FY2008 3/4분기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자동차보험 시장은 침체되었으나 장기손해보험 고성장세 지속 및 일반손해보험의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4.8% 증가한 26조 3,657억원을 기록함.
- 반면, 보험영업비용이 장기저축성보험료 적립금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5.8% 증가한 26조 6,425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보험영업수지는 -2,768억원의 마이너스 실적을 실현함.
- 투자영업이익은 금융시장 불안 지속, 실물경기 침체 등 자산운용여건의 악화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0.7% 감소함.

<표 15> 손해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 구 분         |      | FY2007  |         |         | FY2008 |         |         |
|-------------|------|---------|---------|---------|--------|---------|---------|
|             |      | 2/4     | 3/4     | 4/4     | 1/4    | 2/4     | 3/4     |
| 총<br>수<br>익 | 보험영업 | 149,896 | 229,715 | 312,320 | 84,828 | 173,110 | 263,657 |
|             | 투자영업 | 18,494  | 27,232  | 36,296  | 10,526 | 20,104  | 31,151  |
|             | 기타   | 1,395   | 10,463  | 12,939  | 2,142  | 4,394   | 11,934  |
|             | 소계   | 169,785 | 267,410 | 361,555 | 97,496 | 197,607 | 306,743 |
| 총<br>비<br>용 | 보험영업 | 150,095 | 230,111 | 314,449 | 83,687 | 172,648 | 266,425 |
|             | 투자영업 | 3,841   | 5,556   | 9,598   | 2,684  | 6,692   | 11,789  |
|             | 기타비용 | 2,109   | 11,656  | 14,217  | 2,211  | 4,507   | 12,078  |
|             | 소계   | 156,046 | 247,323 | 338,264 | 88,582 | 183,848 | 290,292 |
| 수<br>지<br>차 | 보험영업 | -199    | -395    | -2,129  | 1,141  | 461     | -2,768  |
|             | 투자영업 | 14,652  | 21,676  | 26,698  | 7,842  | 13,412  | 19,362  |
|             | 기타   | -714    | -1193   | -1,278  | -69    | -114    | -144    |
|             | 소계   | 13,739  | 20,088  | 23,291  | 8,914  | 13,759  | 16,451  |
| 법 인 세       |      | 3,679   | 5,611   | 6,597   | 2,434  | 3,623   | 4,327   |
| 당기순이익       |      | 10,060  | 14,477  | 16,694  | 6,480  | 10,137  | 12,123  |

주 :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08 3/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합산비율은 사업비율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0.6%p 상승한 99.5%를 기록하면서 소폭 악화됨.

- 손해보험의 전체손해율은 일반손해보험의 손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및 장기성보험의 손해율 개선으로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하였으나, 실제 사업비율이 전년동기대비 1.0%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합산비율 상승에 기여하였음.
- 그러나, 최근 자동차보험의 경우 유가의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차량보험사기 확대 등의 요인으로 손해율은 전분기대비 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보증보험 경기침체로 인한 불량물건 보유 확대로 손해율이 크게 상승하는 추세이며, 선박 부문의 손해율 악화에 따라 해상보험의 손해율 및 특종보험 중 단체상해보험의 손해율도 상승한것 것으로 나타남.

<표 16>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

| 구 분  |       | FY2007 |       |       |       | FY2008 |       |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 손해율  | 화재보험  | 40.9   | 47.0  | 44.0  | 44.2  | 43.0   | 37.5  | 40.3  |
|      | 해상보험  | 47.3   | 54.8  | 58.7  | 57.7  | 52.9   | 62.5  | 70.2  |
|      | 자동차보험 | 73.6   | 73.7  | 73.9  | 73.0  | 68.1   | 68.4  | 69.6  |
|      | 보증보험  | 28.0   | 24.3  | 17.8  | 19.5  | 23.7   | 35.6  | 50.7  |
|      | 특종보험  | 54.3   | 56.5  | 58.2  | 60.4  | 57.8   | 60.2  | 63.3  |
|      | 해외원보험 | 26.8   | 29.4  | 30.6  | 34.6  | 38.1   | 39.4  | 43.2  |
|      | 장기보험  | 81.8   | 81.5  | 81.3  | 80.7  | 80.0   | 80.3  | 79.8  |
|      | 개인연금  | 115.8  | 116.0 | 116.4 | 121.7 | 115.7  | 115.7 | 115.7 |
|      | 전 체   | 75.8   | 75.9  | 75.9  | 75.7  | 73.7   | 74.5  | 75.5  |
| 사업비율 |       | 22.4   | 23.0  | 23.0  | 23.5  | 23.5   | 23.5  | 24.0  |
| 합산비율 |       | 98.2   | 98.9  | 98.9  | 99.2  | 97.2   | 98.0  | 99.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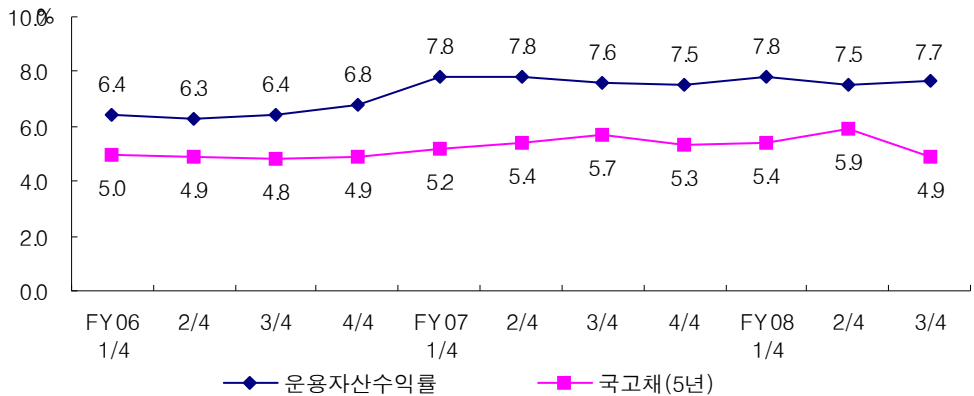
주 :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이며, 분기별 누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자산 운용〉

- FY2008 3/4분기 손해보험의 운용자산 수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1%p 상승한 7.7%를 보이면서 FY2007 1/4분기 이후 7% 후반의 수익률을 지속하고 있음.
- 유가증권의 수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8%p 감소한 7.6%를 보인 반면, 대출채권은 0.4%p 상승한 7.9%, 부동산은 2.8%p 상승한 6.2%의 수익률을 나타냄.
- 주가하락에 따른 주식 수익률 악화로 인해 매도가능증권 수익률은 7.4%로 전년 동기대비 0.5%p 감소함.
- 현금과 예금 수익률은 전년동기대비 4.7%p나 상승하면서 9.6%를 기록함.

〈그림 4〉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자산수익률=(투자영업수익×2)/(기초자산+기말자산-투자영업수익)×연기준 환산)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회사들은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위해 여전히 채권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계정에서 매도가능증권을 포함한 유가증권의 비중은 51.1%로 전년동기대비 2.4%p 감소한 반면, 해약을 대비한 유동성 확보로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은 1.1%p 상승한 7.0%를 기록함.

- 대출채권 비중의 경우 일반계정 자산의 19.1%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동기대비 0.8%p 확대된 반면, 부동산의 비중은 0.3%p 감소한 5.9%를 차지하고 있음.
- 손해보험회사들의 운용자산은 총자산 대비 83.1%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동기대비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17>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 구 분                 | FY2007 |       |       |       | FY2008 |      |       |      |       |      |
|---------------------|--------|-------|-------|-------|--------|------|-------|------|-------|------|
|                     | 3/4    |       | 4/4   |       | 1/4    |      | 2/4   |      | 3/4   |      |
|                     | 구성비    | 수익률   | 구성비   | 수익률   | 구성비    | 수익률  | 구성비   | 수익률  | 구성비   | 수익률  |
| 현 금 과 예 금           | 5.9    | 4.9   | 6.1   | 5.7   | 6.3    | 6.8  | 6.6   | 8.1  | 7.0   | 9.6  |
| 유 가 증 권             | 53.5   | 8.4   | 53.8  | 10.9  | 53.3   | 7.6  | 51.8  | 7.4  | 51.1  | 7.6  |
| ○단기매매증권             | 5.0    | 12.5  | 5.0   | 14.5  | 4.5    | 9.1  | 2.9   | 9.3  | 3.0   | 8.9  |
| - 주 식               | 0.3    | 112.6 | 0.3   | 112.6 | 0.4    | 22.6 | 0.2   | 11.0 | 0.1   | 13.1 |
| - 채 권 등             | 2.8    | 10.5  | 2.6   | 12.9  | 2.0    | 9.6  | 1.8   | 11.2 | 1.6   | 11.8 |
| - 수익증권              | 2.0    | 5.7   | 2.1   | 7.0   | 2.1    | 6.6  | 1.0   | 6.3  | 1.4   | 5.1  |
| ○매도가능증권             | 45.1   | 7.9   | 45.5  | 10.5  | 45.5   | 7.0  | 45.0  | 6.9  | 44.1  | 7.4  |
| - 주 식               | 6.5    | 17.9  | 6.5   | 23.1  | 5.9    | 7.4  | 5.5   | 5.5  | 4.4   | 6.8  |
| - 채 권 등             | 35.7   | 6.1   | 36.4  | 8.4   | 35.9   | 6.9  | 36.0  | 7.2  | 36.2  | 7.6  |
| - 수익증권              | 2.9    | 11.1  | 3.1   | 11.6  | 3.7    | 6.6  | 3.5   | 5.9  | 3.4   | 5.5  |
| ○만기보유증권             | 2.4    | 5.9   | 2.3   | 8.4   | 2.2    | 6.7  | 2.6   | 7.4  | 2.8   | 6.8  |
| - 채 권 등             | 2.4    | 5.9   | 2.3   | 8.4   | 2.2    | 6.7  | 2.6   | 7.4  | 2.8   | 6.7  |
| ○투자주식 <sup>1)</sup> | 1.0    | 12.6  | 1.0   | 13.1  | 1.1    | 32.5 | 1.2   | 21.1 | 1.2   | 15.7 |
| 대 출 채 권             | 18.3   | 7.5   | 18.1  | 7.6   | 18.3   | 7.7  | 18.9  | 7.7  | 19.1  | 7.9  |
| 부 동 산               | 6.2    | 3.4   | 6.2   | 3.5   | 6.0    | 11.1 | 6.1   | 7.3  | 5.9   | 6.2  |
| 운 용 자 산 계           | 83.9   | 7.6   | 84.2  | 7.5   | 84.0   | 7.8  | 83.3  | 7.5  | 83.1  | 7.7  |
| 비 운 용 자 산           | 16.1   | -     | 15.8  | -     | 16.0   | -    | 16.7  | -    | 16.9  | -    |
| 일반계정 자산 계           | 100.0  | 6.4   | 100.0 | 6.3   | 100.0  | 6.6  | 100.0 | 6.3  | 100.0 | 6.4  |
|                     | 96.6   | -     | 96.2  | -     | 96.3   | -    | 96.4  | -    | 96.4  | -    |
| 특 별 계 정 자 산         | 3.4    | -     | 3.8   | -     | 3.7    | -    | 3.6   | -    | 3.6   | -    |
| 총 자 산               | 100.0  | 6.2   | 100.0 | 6.1   | 100.0  | 6.3  | 100.0 | 6.0  | 100.0 | 6.2  |

주 : 1) 수익률은 누적실적임.

2) 투자주식은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임.

3)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일반계정의 하단 수치 및 특별계정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08 3/4분기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는 회사직급과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소폭 확대된 반면,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비중은 감소함.

○ T/M 및 C/M이 중심인 회사직급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12.7%로 전년동기대비 0.7%p 상승한 반면, 설계사가 거수한 원수보험료 비중은 34.1%로 0.2%p 감소함.

○ 대리점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46.6%로 전년동기대비 0.3%p 감소한 반면, 방카슈랑스 비중은 5.5%로 전년동기대비 0.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18〉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 구 분   | FY2007 |        |         |         | FY2008 |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 회사직급  | 9,369  | 19,053 | 29,314  | 39,230  | 11,098 | 22,367 | 34,485  |
|       | 11.9   | 12.0   | 12.0    | 11.9    | 12.6   | 12.5   | 12.7    |
| 보험설계사 | 27,197 | 55,348 | 83,871  | 113,090 | 30,067 | 61,043 | 92,716  |
|       | 34.7   | 34.7   | 34.3    | 34.3    | 34.1   | 34.1   | 34.1    |
| 대 리 점 | 36,592 | 74,176 | 114,587 | 154,833 | 41,416 | 83,594 | 126,852 |
|       | 46.7   | 46.6   | 46.9    | 47.0    | 46.9   | 46.7   | 46.6    |
| 중개사   | 582    | 1,290  | 2,105   | 2,759   | 644    | 1,405  | 2,219   |
|       | 0.7    | 0.8    | 0.9     | 0.8     | 0.7    | 0.8    | 0.8     |
| 방카슈랑스 | 4,334  | 8,721  | 13,127  | 17,724  | 4,723  | 9,904  | 14,908  |
|       | 5.5    | 5.5    | 5.4     | 5.4     | 5.4    | 5.5    | 5.5     |
| 공동인수  | 334    | 754    | 1,235   | 1,790   | 328    | 676    | 1,020   |
|       | 0.4    | 0.5    | 0.5     | 0.5     | 0.4    | 0.4    | 0.4     |

주 : 1) 분기별 실적은 누적치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원수보험료에서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생산성〉

- FY2008 3/4분기 손해보험의 모집조직 생산성에서는 임직원과 대리점의 생산성이 모두 향상되었으며, 설계사의 경우 2008년 8월 30일부터 시행된 교차모집으로 인해 설계사 수가 전년동기대비 두 배 이상 상승함에 따라 생산성은 크게 감소함.
- 임직원 생산성에 있어서는 임직원 수가 전년동기대비 5.4% 늘어나면서 이를 통해 거수된 원수보험료가 늘어남에 따라 생산성은 11.6% 상승함.
- 독립판매법인대리점(GA) 등으로 대리점의 수는 전년동기대비 5.7% 상승하였으며, 생산성도 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교차모집 시행에 따른 등록 설계사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험설계사의 생산성은 전년동기대비 크게 감소함.

<표 19> 손해보험 모집조직 생산성

(단위 : 명, 개, 천원, %)

| 구 분   | FY2007   |           |           |           | FY2008   |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 임 직 원 | 25,969   | 26,602    | 26,957    | 27,394    | 27,278   | 27,876    | 28,425    |
|       | 36,077.1 | 71,624.0  | 108,744.5 | 143,208.2 | 40,686.1 | 80,238.7  | 121,319.2 |
| 보험설계사 | 72,045   | 71,299    | 71,742    | 71,423    | 73,698   | 116,758   | 145,214   |
|       | 37,750.5 | 77,627.6  | 116,906.9 | 158,338.7 | 40,797.9 | 52,281.8  | 63,847.5  |
| 대 리 점 | 43,818   | 42,493    | 42,423    | 42,311    | 42,443   | 43,647    | 44,859    |
|       | 83,510.0 | 174,561.5 | 270,106.4 | 365,941.0 | 97,579.8 | 191,522.2 | 282,779.4 |

주 : 1) 각 상단 수치는 인원수(대리점수), 각 하단 수치는 모집조직단위당 생산성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됨.

3)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 임직원 원수보험료/임직원수

4) 보험설계사당 원수보험료 = 보험설계사 원수보험료/보험설계사수

5) 대리점당 원수보험료 = 대리점 원수보험료/대리점수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국내제도 동향

### 1. 2009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가.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에 은행 참여 대폭 확대

신용도에 맞는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로  
서민들의 금융  
이용 편의 제고

-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는 은행을 포함한 330여개 금융회사의 710여개 대출상품 중에서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안내해 주고 있는 바, 2009년 1월 말부터 6개 은행들이 동 안내서비스에 단계적으로 참여함.
- 2009년 상반기 중 총 9개 은행이 10%대의 대출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신용이 우량한 서민들의 금융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표 1>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은행 참여 현황

| 참여 시기   | 은행 수 | 은행명               |
|---------|------|-------------------|
| (현행)    | 3    | HSBC, 우리은행, 국민은행  |
| 2009.1월 | 2    | 신한은행, 외환은행        |
| 2009.3월 | 3    |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대구은행 |
| 2009.5월 | 1    | 하나은행              |

#### 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근절 방안 시행(2009.1.5. 시행)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관련 업체  
집중 단속 실시

- 기존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서민금융피해상담센터」로 확대 개편,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를 별도로 설치함.
- 2009년 1월 5일 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편취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신고를 받아 편취당한 수수료 반환 및 편취업체 수사 기관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근절하기 위해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관련 민원다발 대부중개업체 및 관련대부업체에 대해 2009년초에 집중 단속을 실시함.

- 대형 대부중개업체에 대해서도 '09년중 모니터링 강화 및 수시점검을 실시함.

#### 다. 상호금융기관 통일상품공시기준 시행

- 2009년 1월 1일부터 상호금융기관(신협·농·수·산림조합)의 통일상품공시기준이 시행됨.

상호금융기관의  
상품공시기준  
체계적으로  
공지

- 상품공시기준은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체계적으로 공시하여 금융소비자들이 수수료·연체이율 등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함.
- 상호금융기관에서는 상품공시기준에 따라 점포객장에서의 고시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수수료·연체이율 등에 대해 자세히 공지하고 있음.

#### 라.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공시 확대

- 2009년 4월 1일부터 저축성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비 수수료 내역과 그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됨.

저축성  
변액보험  
사업비·수수료  
내역 확인 가능

- ① 가입 전 : 개별 가입조건에 따른 사업비 수수료 내역 등을 담은 수수료 안내표를 가입설계서에 제공
- ② 가입 시 : 개별 계약내용에 따른 수수료 안내표를 상품설명서에 제공 안내 후 서명 확인
- ③ 가입 후 : 보험회사 홈페이지 개별계약조회란에서 본인계약의 수수료 안내표 확인 가능(들여쓰기)

※ 또한, 저축성 변액보험의 상품별 사업비 및 수수료 수준은 보험회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의 상품요약서에 게재

보험가입자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  
방안 마련

## 마. 보험약관의 이해가능도 제고 방안 시행

- 2009년 4월부터 보험가입자의 민원 및 분쟁예방을 위해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와 약관의 내용 등을 자세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표 2> 보험약관의 이해가능도 제고 방안 주요 내용**

| 개선방안                               | 주요내용                                                                               |
|------------------------------------|------------------------------------------------------------------------------------|
| 보험약관에 예시 도해 해설 등을 부연 <sup>1)</sup> | 약관내용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해당 조문 아래에 “예시 도해 해설 등을 부연”하여 표기                                  |
| 상품설명서에 ‘가입자 유의사항’을 추가              | 상품설명서 1면에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입자 유의사항”을 추가하고, 주의환기 문구를 가입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토록 하여 완전판매를 유도  |
| 보험계약자 권리 재확인 원칙 도입 · 시행            | 보험계약자의 권리사항(보험계약 취소권 · 철회권, 개인정보 보호권)을 상품설명서 표지에 상세하게 명기함으로써 보험소비자 권리의식 제고         |
| 보험약관의 이해가능도 평가제도 도입 <sup>2)</sup>  | 보험상품 개발 시, 회사내 준법감시인이 약관의 주요조항을 4개 부문별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상품 기초서류와 함께 금감원에 제출토록 법규에 반영 |

주 : 1) 09년 4월 이후 개발되는 신상품에 대해 적용할 예정(‘09.4월중 시행예정)  
2) 보험업법 개정안의 시행시기(현재 국회 심의중)에 맞추어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

## 바. 『미스터리쇼핑』 제도 도입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판매현장사전점검’  
제도 도입

- 펀드 등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현재의 검사방법으로는 불완전판매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곤란한 실정임.
- 이에 펀드, 변액보험, 장외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현장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 실효성 있는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판매현장 사전점검’ 제도로써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 제도 도입

- 적발·제재위주의 검사를 보완한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불완전판매 관행 등에 대한 선순환 개선구조\*\*를 확보함.

\* 감독정책 영향평가, 법규준수가 우려되는 분야의 쟁점사항 파악 등을 위해, 감독당국의 직원 또는 지명인이 소매고객 신분으로 판매사에 접근, 판매과정을 직접 모니터링(영국FSA가 도입·시행중)

\*\* 실시기간예고→실태점검→결과통지(개선권고)→관행개선/제도보완

### 사.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운영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등에 금융회사가 자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금융회사 자금

지원 확대 관련 (면책대상)

개인적 비리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임직원

면책제도를

적극 운영할

계획

-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Fast Track)에 따른 지원
- 기업회생·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의 공동지원 절차에 따른 자금 지원
-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 도산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지원한 자금 등

(면책요건)

- 업무처리과정에서 명백한 고의, 중과실 또는 사적이익 도모 등의 개인적 비리가 없는 경우

(적용기간)

- 금융회사의 모럴헤저드 방지 등을 고려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자금지원분에 한하여 적용하되, 필요시 연장여부 검토

## 아.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의 구분

### <현행제도>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등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격기관 투자자에게는 비적용

- 증권업감독규정에서는 고객을 일반고객과 적격기관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증권회사의 투자권유 방법 등 투자자보호규제를 적격기관 투자자에게는 적용을 배제함.

### <변경내용>

-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보유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함.
- 전문투자자에는 국가, 한은, 은행·보험·금융투자업자 등 주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자체, 금융공기업, 기금관리·운용법인 등과 이에 준하는 외국인이 포함됨.
- 금융투자상품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법인은 100억원, 개인은 50억원)이면서 금융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개인도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음.
-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등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 자. 『펀드판매인력 등급제』 도입

펀드유형별 펀드판매인력 등급을 구분하여 판매교육 및 시험 차별화

- 펀드판매인력은 판매인력자격시험에 합격(60점 이상시 합격)하고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 판매인력으로 등록한 후 판매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 2009년부터는 펀드유형별(증권□부동산□파생상품펀드)로 펀드판매인력 등급을 구분하여 등급별로 판매교육 내용 및 시험수준을 차별화함.

□ 자격시험을 증권□부동산□파생상품펀드로 세분화하여 시행하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해당펀드를 2009년 5월부터 판매할 수 없음.

○ 기존자격자는 “증권펀드”판매 자격만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며,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파생상품펀드 판매를 위해서는 별도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차. 일반투자자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일반투자자  
위험회피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만 가능

□ 현재 은행법, 증권거래법 등에서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상품구조 등에 대한 위험고지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음.

○ 또한,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거래시 상품설명서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상품설명서에는 상품자체의 위험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2009년부터 일반투자자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거래만 가능,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와의 거래시 일반투자자의 거래목적이 위험회피가 아닌 경우 장외파생상품거래를 금지함.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등급제(적색경고제)를 도입함.

○ 장외파생상품 설명서 등에 투자자가 직관적으로 위험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장외파생상품 경고제도를 실시함.

#### 카. 투자설명서(prospectus) 교부의무 신설

□ 현재 증권을 모집□배출하는 경우 발행인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투자설명서\*를 교부함.

\* 증권의 공모시에 청약의 권유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문서(증권거래법상 사업설명서)

-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화
- 2009년부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함.
  -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법상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해야 함.
  - 투자설명서의 종류에는 예비, 간이, 정식 투자설명서 등 3종류가 있으나 교부대상 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사용하는 정식 투자설명서이어야 함.

#### 타. 합병 등에 따른 증권 신규 발행시 공시 강화

- 상장법인 합병 등 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만 제출토록 간소화
- 현재 상장법인이 합병,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포괄적 주식 교환<sup>9)</sup>전, 분할(이하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합병 등 특수공시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 합병 등 신고서에는 합병의 목적·방법·비율, 합병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등 합병 전반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하며, 신주가 발행되더라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함.
  - 2009년부터는 합병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보호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처리함.
  - 신주발행이 수반되지 않는 등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만 제출토록 간소화함.
  - 신주발행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를 부과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함.

\* 자료 :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국 감독총괄팀 보도자료, 2009.1.2.

## 2. IFSB 세미나, 국내기업의 이슬람 금융에 대한 진출 기회

일반금융과는  
다른 이슬람  
금융 도입을  
위한

금융감독상  
제반 이슈 및  
기회 등 세미나  
개최

- 이슬람 금융시장에서의 금융감독상 제반 이슈 및 이슬람 금융 도입을 위한 한국의 도전과 기회 등을 토론허기 위해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이슬람 금융 국제기관인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 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 공동으로 이슬람 금융 관련 세미나를 우리나라 최초로 개최함.

### 가. 이슬람 금융시장의 현황

- 이슬람 금융은 일반 금융(Conventional Banking)과 달리 금리를 수반하지 않는 등 이슬람 교리인 샤리아(Sharia)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금융임.
- 최근 이슬람 국가들 뿐만 아니라, 영국·싱가포르·일본·중국 등 비이슬람 국가들도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 이슬람금융회계감사기구\*를 중심으로 이슬람 금융거래에 대한 국제적 감독기준 및 회계기준의 제정 등 이슬람 금융 업무의 표준화 및 국제화 작업이 진전되고 있어 머지않은 장래에 이슬람 금융이 새로운 국제금융 질서로서 본격적인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됨.

\* AAOIFI: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

금융위기에  
도  
불구,  
오일머니에  
기반한 이슬람  
금융의  
성장잠재력을  
높이 평가

- 지난해에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슬람 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쳐,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의 최근 주가가 급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도 불구하고 오일머니에 기반한 이슬람권의 경제규모 및 유동성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2004년 265개이던 이슬람 금융기관이 2009년에는 약 600여개로 확대가 예상되는 등 이슬람 금융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슬람주가지수  
등 뮤추얼펀드  
시장이 110억  
달러 이상,  
이슬람  
금융자산도  
2010년 1조  
달러 이상 기대

- 금융상품도 그동안 많이 다양화되어 다우존스 이슬람주가지수, FTSE 이슬람주가지수 등은 이미 1999년부터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고, 250개 이상의 이슬람식 뮤추얼펀드의 시장규모도 약 110억달러 이상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채권인 Sukuk의 발행규모가 지난 4년 동안 약 5배 증가하여 2008년말 현재 총 1,200억달러 수준에 육박하게 되었으며, 2006년도에 약 7,5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던 이슬람 금융자산도 2010년에는 1조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나. 국제 금융시장 위기 측면에서 본 이슬람 금융의 가치

금융거래에  
실물거래가  
수반된 이슬람  
금융은  
국제금융시스템  
이 직면한 위기  
극복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

-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마이너스성장 등으로 인해 안정을 되찾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이 직면한 국제금융위기는 금융부문이 실물 부문과 분리되어 복잡한 파생상품들을 국제금융시장에 무분별하게 유통시킴으로써 금융버블을 키워온 데 주된 원인이 있음.
- 따라서 반드시 실물거래가 수반된 경우에만 금융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이슬람 금융은 오늘날 국제금융시스템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할 것임.

#### 다. 이슬람 금융의 국내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 정부는 주요국들이 그동안 이슬람 금융에 진출하는데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국내 기업들의 이슬람 금융 활용경험이 매우 일천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이슬람 금융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예정임.

국내 기업들의  
이슬람 금융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

- 이를 위해 이슬람 금융을 도입한 국가들의 모범사례, 이슬람 감독당국의 각종 규제와 이슬람 금융의 윤리기준 및 감독시스템 등에 관해 보다 철저한 연구를 하고, 이슬람 금융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홍보의 강화 등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금번 IFSB 세미나와 같은 이슬람 금융 관련 각종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발한 인적교류를 통해 이슬람 금융권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함.

- 이슬람 금융 도입시 자금을 제공하는 측이나 사용하는 측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기회가 매우 많을 것이며, 자금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의 건실한 첨단기술 및 산업화 기반을 저위험·고수익 투자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라. 결론

이슬람 금융  
발전을 위해  
각국  
금융당국의  
상호협력 및  
공동연구를  
지속

- 세계 13위의 무역국인 우리나라가 최근에서야 비로소 이슬람 금융 활용에 관심을 갖게 되었듯이 이슬람 금융은 아직도 개발할 여지가 매우 많음.
- 그러나 각국의 금융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이슬람 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국 금융당국이 상호협력 및 공동연구를 통해 금융제도의 개선, 전문가 양성 등 제반인프라를 꾸준히 확장해 나가야 함.

\* 자료 :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금융감독원 국제협력국 보도자료, 2009.1.13.

### 3. 자본시장통합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

#### 가. 발표배경

자본시장통합법  
상 업종간  
겸영을  
허용하면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다단계 장치  
마련

- ☐ 자본시장 통합법에서는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등간 겸영을 허용하면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다단계의 장치를 마련함.
  -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이해상충을 스스로 관리토록 하고, 선행·과당매매 등 이해상충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함.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정보교류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Wall) 설치를 의무화함.
- ☐ 정보교류 차단장치에는 사내는 한 회사내 업종간, 사외는 금융투자업자와 계열사간, 특칙은 은행·보험업과 집합투자업 등의 세 유형이 존재함.
  - 세 유형 모두 적용대상간 ①정보교류 차단 ②임직원 겸직금지 ③사무공간 분리 ④회의·통신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함.
- ☐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정은 2008년 7월 모두 제정되었고 재인가시 이행계획서까지 받았으나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방침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나.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

교류금지  
대상간  
정보교류  
차단장치로  
관계가 없거나  
적은 부문간  
정보도 차단될  
우려

- 1) 사내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
    - ☐ 차단장치 설치대상 명확화
      - 금융투자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세 부문\*으로 획일적 구분하여 동 부문간 차단장치를 설치해야할 경우 교류 금지 대상 정보와 관계가 없거나 적은 부문간에도 정보교류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 고유재산운용·투자매매·투자중개, 기업금융, 집합투자·신탁

차단장치  
대상을  
금융투자업  
관련 교류  
금지대상  
정보를  
생산하는  
부문으로 제한

○ 차단장치 설치대상을 금융투자업(고유재산의 금융투자상품에  
의 운용 포함) 관련 교류 금지대상 정보를 생산하는 부문으  
로 제한함.

□ 사무공간·출입문·전산설비 공동활용 금지 등 판단기준을 마련함.

○ 사무공간 분리 : 일상적으로 타부서 정보를 시청각적으로 취  
득할 가능성이 없어야 함(벽수준의 불투명 유리 칸막이 허용).

○ 출입문 공동 사용 금지 : 출입문을 이용하는 과정(동선)에서  
타부서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 가능성이 없어야 함.

○ 전산설비 분리 : 저장장치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  
라 ID 등을 통해 정보교류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함.

2) 사외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

□ 예외적 정보교류 허용요건(Wall-Cross) 합리화함.

○ 교류금지 대상정보를 계열사 등간 예외적으로 교류할 수 있  
는 정보범위, 목적, 절차를 엄격히 함(6가지 목적만 허용).

\* 현행 증권거래법, 간투법 등에서는 자산운용사 이외에 증권사 등에는 계  
열사 등과의 정보교류에 별도의 제한이 없음.

자통법령상  
예외적 6가지  
목적만 허용

<표 3> 자통법령상 예외적 정보교류 허용 규정 내용

| 구분  | 정보범위             | 정보교류목적          | 준수절차                                |
|-----|------------------|-----------------|-------------------------------------|
| 예외1 | 해당 정보            | 법령의무이행          | 금감원장 확인                             |
| 예외2 | 매매·소유정보          | 그룹내부통제          | 계열사 이해상충 방지체계(9개<br>요건) 금감원장 확인     |
| 예외3 | 투자자<br>증권총액 등    | -               | -                                   |
| 예외4 | 매매주문 종목,<br>시기 등 | 집합투자<br>매매주문 위탁 | 계열사 이해상충<br>방지체계(14개 요건) 금감원장<br>확인 |
| 예외5 | 집합·신탁정보(2개월후)    | 집합투자증권<br>판매    | 준법감시인 승인 등 3개 요건                    |
| 예외6 | 매매정보 등           | 업무위탁            | 위탁절차(위탁계약 체결,<br>정보기록 유지 등)         |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및 교류목적 등에 따라 정보교류 허용 절차를 차등화함.

-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 구성·운용정보는 현행 엄격한 요건을 유지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요건을 다소 완화함.

\* 세부 개선방안은 시행령·금융위 규정 개정과정에서 국내진출 외국계 금융기관, 전문가, 협회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확정함.

#### 다. 향후 운영계획

정보교류  
차단장치와  
관련 규정  
등으로  
이해상충  
행위를 최소화

□ 금번 운영방안은 정보교류 차단장치와 관련한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등에 대한 운영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른 재인가시 정보교류 차단장치는 2009년 5월 3일까지 구축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받은 바 있음.

○ 대상 금융투자업자는 금번 운영방안에 따라 2009년 5월 3일까지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동 운영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09년 5월 3일 이전이라도 이해상충 행위는 최소화해야 함.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개별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규정은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 보도자료, 2009.2.2.

#### 4.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추진

급격한 고령화  
진전으로  
주택연금

-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과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연금」 활성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활성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

- 2007년 7월 주택연금(逆모기지)가 도입 되었으며, 초기 공급 실적\*에 따른 제도 정착에는 성공적임.

\* 공급 실적(계약기준) : (07.7~12) 515건 6,025억원 (08) 695건 8,633억원

- 이에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2009년 2월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하여 추진기로 결정함.

##### 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1) 가입연령 완화(65세 이상 → 60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60세로 완화

- (현행)주택연금 가입연령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고령자임.

- 다만, 현실적으로 60세이상 고령부부의 남성 연령이 여성에 비해 평균 4.8세 높아 65~70세 고령자의 가입이 곤란함.

- (개선)고령자 부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입연령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완화함.

- 가입대상 완화로 신규 가입대상은 약 80만 가구\*가 예상됨

\* 연령대별 자가보유 가구주 분포(가구, 05 인구주택총조사): (60~64세) 85만, (65~69세) 77만, (70~74세) 57만, (75~79세) 32만, (80세 이상) 20만

##### 2) 주택연금 대출한도 확대(3억 → 5억)

주택연금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

- (현행) 보증재원 제약으로 주택연금 대출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 (개선) 주택연금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여 주택가치의 활용도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함.

○ 예를 들어, 70세 가입자 기준으로 시가 9억원 주택의 월지급금은 201만원에서 320만원으로 119만원 증가함.

※ 아울러,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도 동일하게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할 계획

### 3) 수시인출 비율 확대(30% → 최대 50%)

수시인출  
비율은 최대  
50%(2.5억원)로  
확대

□ (현행) 혼합형 주택연금 가입자가 의료비·기존 주택담보 대출상환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의 30%범위(최대 0.9억원)내에서 수시 인출이 가능함.

○ 단, 일부 가입 희망자의 경우 인출한도가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기에 부족해 주택연금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존 주택담보대출 및 임대차 계약이 있는 주택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시 해당 주택에 선순위 담보설정이 불가능하여 대출금 상환 후 가입

□ (개선) 주택담보대출금 상환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용으로 사용시 수시 인출금의 한도를 대출한도의 50%(최대 2.5억원)로 확대함.

○ 안정적 소득원이 없는 고령층의 주택담보대출금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도모함.

주택연금  
가입자  
이자비용  
소득공제 및  
재산세 감면

### 4) 세제지원 강화(재정부·행안부 추진 사항)

□ (현행) 주택연금 가입자의 부담 완화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도입시부터 이자비용 소득공제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를 지원함.

□ (개선)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 대상 주택을 확대할 계획임.

<표 4> 세제지원 확대

| 구 분                                   | 대 상                |                                                                  | 적용 시기                                 |
|---------------------------------------|--------------------|------------------------------------------------------------------|---------------------------------------|
|                                       | 현 행                | 개 선 안                                                            |                                       |
| 주택연금<br>이자비용<br>소득공제<br>(200만원<br>한도) | 주택가격 3억<br>이하      | 가입주택 전체<br>(주택가격 9억 이하)                                          | 현재시행령개정중<br>(09.2.12<br>이후부터<br>소급적용) |
|                                       | 연간소득<br>1,200만원 이하 | 폐 지                                                              |                                       |
| 재산세<br>25% 감면                         | 주택가격 3억<br>이하      | 가입주택 전체<br>(주택가격 9억 이하)<br>단, 감면한도는<br>주택가격 5억원 상당의<br>재산세액의 25% | 2010년<br>발생분부터                        |
|                                       | 연간소득<br>1,200만원 이하 | 폐 지                                                              |                                       |
|                                       | 국민주택규모<br>(85m2)이하 |                                                                  |                                       |

주택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  
법을 개정 추진

□ 금융위는 2009년 4월말까지 가입연령 완화 등 주택연금 관련 제도개선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함.

○ 재정부·행안부 등은 세제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함.

\*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보도자료, 2009.2.18.

## 5.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과 운용계획

### 가. 추진방향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투자업의  
수익기반 약화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금융기능별 인가·등록체계’가 도입되고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전문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그러나 현재의 경제여건은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본시장이 침체되고 금융투자업의 수익기반이 약화된 상황임.

□ 한편, 다수 회사들은 금융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추가를 위한 인가를 일시에 받기를 희망하고 있어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 하에 금융투자업 인가를 전략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임.

금융투자업  
인가를  
전략적으로  
운용

① 인가시 시장리스크를 감안하여 리스크가 적은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

② 신설 인가보다는 기존 회사의 업무 추가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

③ 민간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질적 요건을 심사함으로써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 나. 인가의 기본방향

시장리스크  
증가 여부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접근

□ 인가시 시장리스크 증가 여부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접근함.

○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투자회사들이 시장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업무를 확대할 경우 시장혼란, 부실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함.

- 기존 업무를  
감안하여  
핵심역량  
중심의 업무  
확대 유도
- 따라서 시장리스크 요인이 낮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심사하  
되, 리스크가 큰 분야는 금융위기 호전 이후 인가 여부를 검  
토함.
  -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 시너지 효과 등을 감안하여 핵심역량 중  
심의 업무 확대를 유도함.
  - 동일 금융투자업 내 업무 추가 등 연관성이 높은 분야로의  
업무 확대를 우선적으로 허용함.
  -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할 때 기존 업무와 추가되는 업  
무간 시너지 효과를 중점적으로 심사함.
  - 단, 계열사에서 이미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기상황 호전 이후 인가 여부를 검토함.
- 투자자 편의  
제고 및 투자자  
보호 문제를  
감안하여 인가  
여부를 검토
- 투자자 편의 제고 및 투자자 보호 측면을 감안하여 심사함.
  - 기존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연관 업무로서 투자자 편의 제고  
에도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허용함.
  - 이해상충 및 투자자 보호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  
는 금융위기 호전 이후 인가 여부를 검토함.

#### 다. 인가 운용계획

- 시장리스크 증가여부,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인가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인가유형별과 단계별로 접근함.

<표 5> 단계별 인가 운용방안

| 단계별 인가<br>운용방안 마련 | 1단계                                                                         | 2단계                                   |
|-------------------|-----------------------------------------------------------------------------|---------------------------------------|
|                   | <p>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br/>매우 높고 시장리스크가 낮은<br/>업무 추가<br/>전문화·특화된<br/>금융투자회사 신설</p> | <p>금융위기 상황 호전시<br/>인가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p> |

- 1) 제 1단계
- 가) 업무 추가
- 금융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리스크가 낮은 업무 추가로서 다  
음에 해당하는 인가 신청에 대하여 접수·심사를 진행함.
- 동일 금융투자업 내 업무 추가로서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고 인가에 따른 시장리스크가 낮은 경우
- ☞ 해당 업무 : 투자매매업 및 중개업 내 업무 추가, 집합투자업 내 취급  
대상 상품 추가
- 기존 법령에서도 허용되고 있으며 투자자 편의 제고 측면에  
서도 필요한 경우
- ☞ 해당 업무 : 집합투자업자의 직관을 위한 집합투자증권, 매매·중개업  
추가(판매수수료가 없어 투자자 비용 절감)
- 인가에 따른 시장리스크가 낮을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 허용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 해당 업무 : 증권사의 신탁업 추가(퇴직연금 활성화), 투자중개업자의  
투자매매업 추가
- 나) 신설 인가
- 전문화·특화된 금융투자회사(단종 집합투자업자 등)의 신설 인  
가 신청을 중심으로 접수·심사하되,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진행함.
- 2) 제 2단계
- 2단계 인가는 금융위기 상황 호전 및 1단계 인가 회사의 시장 정  
착 추이 등을 감안하여 인가 방향을 마련함.
- 장외파생상품 매매·중개업 추가: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을 취  
급하는 업무인 점을 감안하여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시행함.

금융위기 상황  
호전시  
인가범위를  
점진적 확대

- 투자매매·중개업과 집합투자업간 겸영: 이해상충 방지체계의 정착, 건전성 높은 회사를 상대로 한 Pilot Test 등 충분한 사전 준비를 실시한 후 인가 여부를 검토함.
- 기타 1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를 추가 및 신설함.

\* 자료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실 자본시장과 보도자료, 2009.3.9.

## 6. 사전 채무조정 제도(Pre-Workout) 시행

3개월 미만  
연체자  
대상으로  
사전채무조정  
제도 1년간  
한시적 운영

- 정부는 2009년 3월 10일에 「경제금융대책회의」 논의를 거쳐 1~3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금융기관간 협약을 통해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1년간(2009.4.13 ~ 2010.4.12)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함.
-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중인 바, ‘사전채무조정’은 3개월 미만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 가. 추진배경

- 최근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따른 경기침체에 따라 가계대출 연체율이 모든 금융권에서 증가하는 추세임.

<표 6> 가계대출 연체율 현황(%)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연체자 상당수  
금융채무불이행  
자로 전락할  
가능성 상존

|      | 05말   |   | 06말   |   | 07말   |   | 08.6말 |   | 08.12말 |
|------|-------|---|-------|---|-------|---|-------|---|--------|
| 은행   | 1.12  | → | 0.70  | → | 0.55  | → | 0.53  | → | 0.60   |
| 저축은행 | 27.98 | → | 22.52 | → | 15.51 | → | 12.98 | → | 14.78  |
| 여전사  | 13.25 | → | 6.32  | → | 4.00  | → | 4.05  | → | 5.20   |

-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연체자중 상당수가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3개월이상 연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존함.
-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경우 모든 금융권의 정보공유로 신규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채무면제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연체기록이 관리되어 개인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이에 따라 단기연체자(1~3개월 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나. 시행방안

채무조정  
대상은 전체  
채무를  
기준으로 조정

- 사전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30일 초과~90일 미만 연체, 5억원 이하 채무, 다중채무(2개 이상 금융회사가 채권자)중 1개 이상 채무가 연체상태이면 전체 채무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시행함.

- 무담보 채무뿐만 아니라 담보가 있는 채무도 포함함.

- 지원대상의 경우 고의 연체 가능성이 있을시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보다 기준을 강화함.

- 신청 전 6개월내에 신규 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부채상환비율\*(DTI)이 30% 이상인 자, 보유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인 자

- 그 외 실업·휴업·폐업·재난·소득감소 등으로 사전 채무조정 지원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총부채상환비율(Debt-To-Income ratio): 차주의 연간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 지원내용은 채무자의 상환 스케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되, 신청횟수는 1회로 제한함.

- 채무조정은 연체이자 면제, 이자부담 완화, 무담보채권은 최장 10년, 담보채권은 최장 20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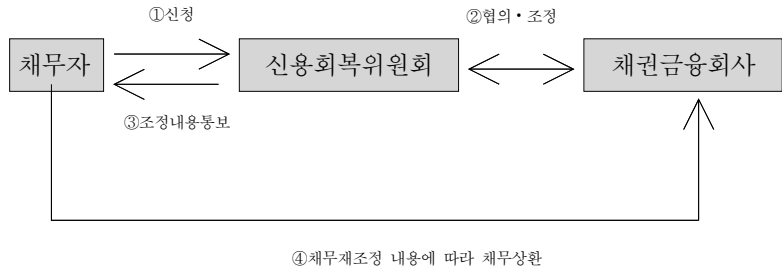
채무자는  
상환스케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지원

- 지원절차에 있어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조정함.

- 담보채권은 채권금융회사들로부터 채권액 기준 2/3이상, 무담보채권은 1/2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 조정안을 확정함.

<그림 1> 채무조정 지원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가 채권금융  
회사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조정



#### 다. 기대효과

- 30일 초과 ~ 90일 미만 단기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채권이 감소하고 연체채권의 장기화 가능성이 줄게 되어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 4월 시행시 초기단계에 약 30만명이 신청대상이 되며, 이용자 수는 제도 존속기간내 증가 예상

- 또한, 다른 금융회사와의 공동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개별회사 차원의 채무조정의 한계 극복이 가능함.

#### 라. 향후 일정

- 3월중 신용회복지원 협약 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 등 시행 준비하고 2009.4.13 ~ 2010.4.12 기간 동안 사전 채무조정을 시행함.

\*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보도자료, 2009.3.10.

##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일부 위헌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 가. 검토배경

-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은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를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1981년에 법률 제3490호로 처음 제정(1982.1.1이후 시행)되었음.

\* 대인배상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의무가입 한도(사망기준 1억원)를 초과하는 사고(피해자의 死傷)를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담보(종합보험)

대인배상Ⅱ에  
가입한 경우  
중상해시  
형사상 책임을  
면제

- 동 법 제3조 제3항 및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망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신호 위반 등 중대교통법규위반으로 발생한 자동차사고를 제외한 사고의 경우에는 중상사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대인배상Ⅱ에 가입하고 있으면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임.

- 운전자가 대인배상Ⅱ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중상사고에 대하여도 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동 법률의 영향으로 대인배상Ⅱ의 가입률은 증가하였고, 원년(1997.3) 기준으로 가입률이 94.8%임.

- 그러나 최근 (2009. 2.26)에 헌법재판소는 교특법 제4조 1항의 본문 중 ‘중상해’ 발생의 경우에도 종합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남.

최근  
헌재소에서  
교특법 제4조  
1항의 일부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

### <표 7>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일부)

헌법재판소는 2009.2.26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 된다’고 선고하였다.

이번 헌재소의  
위헌결정으로  
대인배상Ⅱ에  
가입한  
경우에도  
형사상 책임도  
부담

- 중상사고에 대하여 동 조항의 내용을 위헌으로 판시한 이유는 동 법률조항으로 '중상사고임에도 가해자가 성실하게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는 사회현상의 만연', '중상사고의 경우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등임.

\* 과잉금지 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의 준수 원칙

- 기존에는 운전자가 대인배상Ⅱ를 가입한 경우에는 행정적 책임만 부담하면 되었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형사상 책임도 부담하게 됨.

<표 8> 위헌판결 이후 가입운전자의 책임 변화

| 구 분    | 기 존 | 위헌 판결 이후 |
|--------|-----|----------|
| 행정적 책임 | ○   | ○        |
| 형사적 책임 | ×   | ○(중상해)   |
| 민사적 책임 | ×   | ×        |

주 : 운전자(가해자)는 법률적으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해야하나, 본 표에서는 민사적 책임의 주요 사항인 경제적 부담을 보험으로 해결한다는 의미에 서 민사적 책임 부담이 없는 것으로 표시함.

교통법  
위헌결정 으로  
자동차  
운전관련 사회  
각 분야에 많은  
영향이 예상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운전자의 운전행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회사 등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사회 각 분야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조항 위헌 결정에 따른 영향

1)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

-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됨.

- 동 교통법 일부내용 위헌판결로 중상사고 등 심각한 사고가 줄어들는데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본 결정으로  
운전자의 안전  
운전 및 일반  
교통 법규  
준수를 유도

- ☐ 운전자의 일반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위험도의 크기는 일반교통법규위반의 경우에도 큰 것으로 분석됨.
  - 교통법의 일부 내용이 위헌인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운전자들이 일반교통법규도 더욱 준수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보임.
- ☐ 중상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경우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기존에는 중상사고라 하더라도 대인배상Ⅱ 가입시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으나, 변경된 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공소를 제기당하지 않으려면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 함.

## 2) 사회적 비용발생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고처리  
행정비용 증가가  
예상

-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항목에는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직접보상해주는 직접비용,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사고처리 비효율성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사상자의 경제활동 미비에 따른 간접비용 등 다양함.
-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항목 중 사고처리 행정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사고당사자간의  
입장차이로  
경미한 사고에도  
무리한 요구로  
인식할 가능성이  
존재

- 자동차사고에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 부상을 당하였는지는 일정시간 경과 후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중상해도 아니면서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할 가능성이 큼.
- ☐ 사고당사자들은 양자 입장에 따라 사소한 사고의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있음.
  - 경찰은 많은 자동차사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처리 인원을 늘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므로, 이는 자동차사고 처리 행정비용 증가의 원인이 됨.

- 손해비용 항목 중 유가, 경기 변동, 제도 변화 등 여러 가지 현상이 복합되어 작용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비용 항목 중 자동차사고 발생률 감소에  
는 유가의 변화, 경기변동,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자동차보험제도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영업용 개인소유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형사합의 전까지 또는  
형사합의가 되지 않아 구속된 기간 동안에는 운전을 하지 못하  
는데서 발생하는 영업 손실을 부담하여야 함.
  - 중상해에 대한 판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병원입원 기간을 늘리는 경우에는 입  
원기간 연장에 따른 치료비 증가, 휴업손해액 증가 등의 추가비  
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3)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사고 발생시  
민사상 책임 및  
법원 판결시  
보험가입유무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대인배상Ⅱ를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가해자가 자  
동차사고로 발생하는 비용(민사상 책임)을 모두 자비로 처리해  
야 함.
  -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 판결에서 보험가입유  
무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이 여전히 유  
리함.
  - 운전자가 안전운전, 법규준수 운전을 함에 따라 사고발생률 및 1  
사고당 손해액이 감소할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규모  
가 일부 줄어들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중상사고의 형사합의 과정을 도와주는 보상서비스를  
강화할 경우 자동차사고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개선효  
과를 사업비 증가로 일부 상쇄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다. 시사점

교통법 변경에  
따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전운전  
홍보를 강화

- 향후 교통법을 적용하기 위한 ‘중상해의 기준’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최소화, 중상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법률 변경의 효과가 한시적일 수 있으므로 동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교통법 개정이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운전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교통법 일부내용 위헌판결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통계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그 효과를 요율조정에 반영해야 하며, 동 위헌판결로 인해 보험금 지급 패턴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자료 : 기승도·이승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일부 위헌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보험연구원 KIRI WEEKLY 주간이슈, 2009.3.9.

##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는 금융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하여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고 금융 안정에 기여하고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을 마련함.

금융안정기금은  
정책금융공사에  
설치 및 운용

###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목적 조항의 수정으로 현행 금산법의 목적 조항에 '금융기관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 안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합병·전환, 적기시정조치 등 금융기관 정리·구조 개선 등이 포함됨.

-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정책금융공사에 설치, 공사의 고유계정과 구분하여 운용하며, 정부보증 기금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성함.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경우  
지원, 필요시  
예금보험기금의  
출연·대출도  
가능

- 공사의 설립목적(법 §):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시장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공급·관리'

- 자금지원의 대상, 요건, 방식 및 결정 등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 현행 금산법상의 금융기관(은행·보험·저축은행·증권·지주사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출연·대출도 가능함.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유동성 검색 등으로 원활하지 않아 자본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 지원함.

- 출자, 대출, 채무보증 등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포괄함.

- 금융기관이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 → 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자금지원 여부 심사·의결 → 공사의 자금지원

-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확보와 중소기업 지원 등의 계획을 제출
- 사후관리를 위해 MOU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확보와 중소기업 지원 등 금융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받아 금감원이 점검함.
  - 실물지원 실적 등에 따라 동 MOU의 내용·수준을 차등화하여 체결
  - (국회보고) 금융위는 반기별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내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함.

사후관리는

금감원이 점검,  
금감위가 국회에  
보고

#### 나. 향후 추진일정

- 3월중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중 금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보도자료, 2009.3.17.

## 9.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하고자  
보험업감독규정  
을 개정

- 금융위원회는 2009년 3월 18일 제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함.
- 이번 개정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하고, 법인세법시행령·기업회계기준 개정 에 따라 관련제도를 개선·보완하는 것임.

### 가. 주요 개정 내용

#### 1)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 도입(2009.4)

보험회사의  
다양한 위험을  
반영하는  
지급여력제도  
도입

- 보험회사에 내재된 다양한 위험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금년 4월부터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제도)를 도입하여 보험회사의 적정한 재무건전성 확보 및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함.
- 단, 최근의 경제·금융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시행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2년간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함.

#### 2) 지급여력금액 산정시 이연법인세자산 반영기준 보완

지급여력금액  
산정시  
원가법·시가법  
선택이 모두  
가능

-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2009.2)되어 변액보험의 유가증권 평가방식을 두 가지(원가법·시가법)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변경함.
- \* 원가법은 이연법인세가 발생하나, 시가법은 이연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음.
- 보험회사가 원가법·시가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상호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함.
-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차감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변액보험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항목에서 제외함.

### 3) 유형자산 평가이익의 배분기준 마련

유형자산  
처분시  
평가이익에  
대한  
배분기준을  
적용

□ 기업회계기준 변경(2008.12)으로 유형자산의 평가가 허용됨에 따라 유형자산의 평가이익에 대한 배분기준을 마련함.

- 현재 유형자산의 유가증권 등 자산의 「평가이익」을 계약자 지분과 주주지분으로 배분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유형자산의 경우에도 「처분시」에 동일한 배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배당보험계정 이익 ⇒ 계약자와 주주간 90:10으로 배분

- 유형자산의 「평가이익」에 대해서도 유가증권 등 다른 자산 「평가시」나 「처분시」 적용되는 배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 나. 시행시기

□ 본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부터 적용함(단, 제7-2조의 개정규정-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

\* 자료 : 금융위원회 보험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 금융리스크제도실 보도자료, 2009.3.18.

---

## 해외제도 동향

---

### ◆ 복미 동향

#### 1. 미국, 의료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안 발표

##### 가. 개요

□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2월 26일 큰 폭의 재정적자를 수반하는 대규모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예산안은 의료보장체계(Health care system) 개선에 대한 세부내용을 포함함.

미국 오바마  
행정부  
2009년  
예산안 의회  
제출

○ 예산안 규모는 3조 9천억달러에 달하며 이로 인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율을 상향 조절할 계획임.

○ 그러나 정치권 내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의회 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임.

○ 이번 예산안은 대선 당시부터 강조해 온 의료보장체계 개혁과 관련한 세부지출 내용을 담고 있음.

##### 나.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문제점

□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의 미국 의료보장체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상황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의료보장체계의 개혁 필요성을 역설함.

미국  
의료보장체계  
는 의료비  
증가로 인한  
보험미가입자  
증가로  
문제점 발생

○ 첫째, 급증하는 의료비용은 가계 경제를 압박하고 있으며 많은 미국인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수준의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미국인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불필요한 재무리스크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음.

의료  
인플레이션  
은 근로자  
소득  
증가율을  
상회함

- 2000년 이후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소득 증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 미가입자 수도 증가하고 있음.
-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근로자 소득은 3% 증가한 반면, 가족건강보험료는 58% 급증함.
- 2007년 현재 1,700만명의 미국인들이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보장에 지출하고 있으며, 2,500만명이 충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8년간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수는 690만명 증가하여 현재 4,57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지난 1년 중 잠시라도 보험 미가입 상태로 지낸 인구는 6,000만명에 달함.

□ 의료비용 증가는 여러 측면에서 가계의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음.

-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의료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등교육 지원금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1970년 GDP의 7%에 불과하던 의료비 지출이 현재 16%로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2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다른 곳에 쓰여야 할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은 건강부문(health sector)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음.

-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료비가 비싼 의료기관이 반드시 나은 의료기술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소 저렴한 의료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값싸면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효율화를 통해 의료비용을 30%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음.
- 또한 예방의료에 지출하는 비중이 4%에 불과해 예방 가능한 의료 사고로 사망하는 미국인은 한해 10만명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들은  
해결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다. 의료관련 예산안 세부내용

- 의료보장체  
계 개선  
관련  
예산으로  
768억  
달러가  
책정
- 미 보건복지부(HHS)는 의료보장체계 개선 등과 관련하여 768억 달러를 제공받게 되며 이에 대한 세부 지출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이 예산은 의료비용을 줄이고 보장내용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장체계 개혁에 향후 10년간 지출될 6,300억 달러 상당의 준비금 펀드에 첫 불입금으로 기능할 것임.
  - 의료보장체계 개혁을 위한 펀드에는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며, 최근 통과된 경기 부양 법안 ‘미국 회생과 재투자 법안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이하 회생법안)’의 의료관련 지출도 포함될 것임.
- 암연구  
활성화에  
60억  
달러가  
배정
- 예산안은 국립보건원(NIH)이 암연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60억 달러를 포함함.
  - 이 예산은 암연구를 두 배로 늘려 암 진단, 치료 등을 혁신할 것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사용될 것임.
  - 이러한 구상은 회생법안(Recovery Act)으로 부터 2009년과 2010년에 모두 100억달러를 지원받을 것이며, 국립보건원의 암 연구를 촉진할 것임.
- 보건 IT  
채택 촉진
- 예산안은 보건 정보기술(IT)의 채택을 촉진할 것임.
  - 행정부는 회생법안에서 190억 달러 투자를 받아 의료보장체계를 현대화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인 IT 채택을 장려할 계획임.
  - 회생법안은 2011년부터 인증된 전자 건강 데이터를 사용하는 Medicare(65세 이상 노인의료보험) 프로그램 참여 의료기관에 일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고 2015년부터는 불이행 기관에 패널티를 부여함.
  - 향후 5년간 보건 IT의 사용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생활과 개인 건강 정보의 보호와 함께 보건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약제 가격  
안정과  
식약품  
안전성 제고

- 예산안은 약제 가격을 낮추고 식약품의 안전성을 제고할 것임.
  - 예산안은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을 외국에서 구입하고 유전자 의약품(generic biologics)의 허  
가 규제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임.
  - 또한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FDA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Medicare,  
Medicaid를  
효율화하고  
지속가능성  
향상

- 예산안은 Medicare, Medicaid(빈곤층 의료 보험) 프로그램의 완  
결성을 감독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
  - 의료사기, 의약품 낭비 또는 오용 등은 보건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
  - Medicare, Medicaid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프로  
그램의 취약부분에 즉각 반응하고 초과 비용을 식별해 내며,  
문제를 교정하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임.
  - 결과적으로 행정부는 부적절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프로그램  
의 수혜자와 납세자들에게 큰 이익을 제공할 것임.
- Medicare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Medicare와 Medicaid의 연  
구 의제(agenda)를 확대할 것임.
  - 행정부는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이 계속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  
록 Medicare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임.
  - 확대된 의제는 이들 프로그램에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할 것  
이며, 새로운 프로젝트는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수혜자에 대한 교육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  
서비스 확대

- 예산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 Medicaid는 연방과 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프로그램이며  
평균적으로 연방정부는 57%의 비용을 지불함.

- 회생법안은 경기침체기 동안 재정이 어려운 주정부를 위해 Medicaid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인에 대한 의료 보장 범위를 유지시킬 것임.
- 또한, 어린이 건강보험 재승인 법안(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Reauthorization Act of 2009)은 2013년까지 440억 달러의 기금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이로 인해 약 400만명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임.
- 예산안은 AIDS 예방과 치료를 향상시키고 의료 전문인력을 강화할 것이며, 소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임.
- AIDS 예방,  
소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강화
  - 특정지역에서의 의료인력 부족을 보상하기 위해 3억 3,000만 달러가 쓰일 것이며, 이러한 지역에서 일하고자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대출상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임.
  - 40억 달러는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알래스카 원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자폐증 환자들을 돕기 위한 예산도 추가될 예정임.
  - 또한 시골지역의 보건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7,3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됨.
- 마지막으로 치료에 대한 효과성 비교, 지불비용 축소,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보조, 10대 임신 방지 등의 목적으로 예산이 책정됨.

\* 자료 : A New Era of Responsibility - Renewing America's Promis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9.2.26.

## 2. 2009년 미국 생명보험 산업 이슈

|                                                     |                                                                                                                                                                                                                                                                                                                           |
|-----------------------------------------------------|---------------------------------------------------------------------------------------------------------------------------------------------------------------------------------------------------------------------------------------------------------------------------------------------------------------------------|
| <p>LIMRA는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09년 생명보험 산업 주요 이슈를 점검</p> | <p>□ 미국 생명보험마케팅센터 LIMRA는 2009년 2월 업계 대표 75명 이상을 대상으로 2009년의 주요 전략적 이슈들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함.</p> <p>○ 아래에서는 11개의 질문에 대한 결과 및 응답자, LIMRA의 코멘트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함.</p> <p>□ 2008년 큰 폭 성장한 정액연금(fixed annuity)시장이 2009년에도 강세를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63%의 응답자가 동의했으며,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와 중립인 응답자는 각각 15%, 22%로 나타남.</p>                             |
| <p>정액연금시장 확대 예상</p>                                 | <p>○ 동의하는 측에서는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동의하지 않는 측에서는 경기가 안 좋은 때에는 연금가입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함.</p> <p>□ 전문 투자 상담사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67%가 긍정을, 20%가 부정적, 13%가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냄.</p>                                                                                                                                             |
| <p>전문 투자 상담사의 수요도 확대 전망</p>                         | <p>○ 긍정하는 측에서는 사람들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전문상담사를 찾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전문 상담사들에게 실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p> <p>○ LIMRA의 또 다른 질문에 의하면, 사람들은 현재 조언을 해 줄 전문가를 찾고 있으며 노인층에서 상담사를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 투자상담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p> <p>○ 그러나 과거 자료를 볼 때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도 있으며, 금융기관의 신뢰도 저하에 따라 상담사의 신뢰도도 하락하게 됨.</p> |

보험 판매원의  
증가는  
부정적인  
입장이 우세

□ 2009년에 보험 판매원의 고용이 크게 늘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35%만이 긍정을 나타냈고, 44%가 부정적인 입장을, 21%가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냄.

○ 동의하는 측에서는 대량해고로 인해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반면,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회사들도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판매원을 줄일 것이며 세일즈 보다는 조언자의 역할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밝힘.

○ LIMRA에 따르면, 과거를 비추어 볼 때 실업률이 높은 경우에는 수준 높은 지원자가 세일즈에 몰리며, 자본여력이 있는 회사들은 세일즈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보험 판매사들 간에 통합이 증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73%가 동의했으며, 20%가 중립적인 입장을, 7%만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냄.

보험  
판매사들간  
통합 증가 예상

○ 긍정적인 측에서는 주가 연계형 연금(indexed annuity)의 호황이 독립된 마케팅 회사들을 양산해 냈지만, 주가연계형 상품판매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긴 힘들다고 설명함.

○ 부정적인 측에서는 대형 판매사들의 브랜드 인지도나 영향력이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소형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봄.

○ LIMRA는 쉽게 팔수 있는 상품이 줄고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합병이 늘 것이라고 전망함.

사기범죄 증가  
예상

□ 2009년 사기범죄가 증가하면서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엔 53%가 긍정적, 31%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16%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함.

보험산업에  
대한 연방규제  
증가 예상

- 긍정하는 측에서는 이미 두 건의 폰지(Ponzie) 사기가 있었고 앞으로도 안 좋은 경제상황을 악용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함.
-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는 힘들며 소득이 줄어든 개인들이 보다 더 신중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함.
- LIMRA에 따르면 과거의 경험상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경우 사기가 증가해왔기 때문에 업계는 보다 조심해야 한다고 밝힘.
- 2009년에 보험에 대한 연방규제가 증가할 것이냐는 질문에 85%의 응답자가 그럴 것이라고 답했으며, 10%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반면 5%가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냄.

의료보장체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 LIMRA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독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함.
-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은행산업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많은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2009년에 새로운 것이 나오기 힘들다는 입장임.
- 2009년에 미국 의료보장체계(health care system)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65%가 긍정을, 27%가 부정을, 8%의 응답자가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냄.
-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의회가 다른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2010년에야 개혁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LIMRA 또한 보건체계를 바꾸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초래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봄.
- 2009년에는 사람들이 퇴직을 늦추고 자산 축적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퇴직 후 소득에의 비중을 낮출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55%가 긍정적인 답을, 29%가 부정적, 16%가 중립이라고 답함.

퇴직 후  
소득보다는  
현재의 저축에  
더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

○ 부정하는 측에서는 실직자가 늘고 있어 그들의 소득상실을 대체할 만한 연금을 기대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긍정하는 측에서는 60대의 사람들은 가능한 한 퇴직을 늦추려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함.

○ LIMRA는 많은 은퇴자들이 자신의 은퇴 후 월 소득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맞는 상품개발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2000년 주가폭락 시 변액연금의 인기가 떨어지자 최소보장 상품으로 대체했던 때를 상기시킴.

□ 2009년 주식연계형 연금(indexed annuities)이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1%였으며 감소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4%, 변동 없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5%로 나타남.

주식 연계형  
연금 판매 감소  
예상

○ 주식연계형 연금(indexed annuities)은 수익률 하락에 대한 보호와 함께 고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상품이지만 이 상품의 판매 증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 보험사들은 판매에 소극적일 것이며 규제당국도 판매를 억제할 것으로 보임.

□ 2009년에 신상품 개발이 활발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35%가 긍정적인 답을, 44%가 부정적, 21%가 중립적인 답을 나타냄.

신상품 개발은  
활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다소  
우세

○ 부정적이라는 측에서는 재보험사의 수용능력이 충분치 않을 것이며, 자본금 압박 때문에 효과가 불투명한 신상품 개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이 나왔으며, 감독당국의 규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함.

□ 2009년에 보험사들 간의 M&A가 증가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70%가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12%가 동의하지 않는다, 18%가 큰 변화 없을 것이라고 응답함.

보험사 간  
M&A 증가  
예상

-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측에서는 보험사들의 주가가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나, M&A증가 시기는 현재의 상  
황이 진정된 연말 즈음이 될 것이라고 답함.
- 부정적인 측에서는 단기적으로 다른 회사의 부채를 인수하는  
데는 리스크가 있으며, 재무제표 또한 신뢰할 수 없기 때문  
에 M&A가 증가하기는 어렵다고 답함.

\* 자료 : 2009 Industry Prediction, LIMRA, 2009.2.

## ◆ EU 동향

### 1. 유로지역 新보험법의 ‘Solvency II’ 제정 동향

#### 가. ‘Solvency II’ 제정의 목적과 배경

Solvency II  
목적:  
소비자 보호  
감독체계  
진일보  
보험시장  
통합화  
경쟁력 제고

□ 유럽공동체(European Commission)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증대시키고, 감독체계를 진일보시키며, 유로 보험시장의 통합화를 가속화시키는 한편 유로지역 보험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새로운 보험법을 상정하기로 함.

○ 유럽공동체는 선진화된 법규체제 정비의 일환으로 ‘Solvency II’를 상정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의 보험법규 관련 환경을 단순화함으로써 관료적 형식주의에 의한 비효율성을 척결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밝힘.

Solvency II:  
모든 리스크  
파악  
효과적인 관리

□ 새로운 보험법은 ‘Solvency I’을 대체하는 ‘Solvency II’로 일컬어 지는데, 보험사업자들은 ‘Solvency II’를 준수함으로써 경영상 노출되는 모든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 받게 됨.

□ ‘Solvency II’ 이전의 보험법은 30년 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융시장의 발전과 괴리되는 부문이 많으며, 특히 27개 유로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보험법규체제를 갖추면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함.

○ 유로지역 국가별 보험법규 제정은 유럽공동체의 목적인 단일 유로시장을 훼손하는 요소가 되며, 나아가 이러한 국가별 보험관련법 상존은 국경 간 경영을 영위하는 보험그룹에게는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음.

## 나. 'Solvency II' 제안까지의 경과

1970년대  
Solvency  
Capital  
2002년  
Solvency I 탄생  
2009년 2월  
Solvency II  
수정안

- 유럽은 1970년대 이후로 지급준비금제도(Solvency capital)가 자리잡아왔으며, 1990년대의 제3세대 보험제도 개정 방침에 따라 부분적 수정을 거쳐 2002년 유럽의회와 EU집행위원회(the Council) 동의 하에 'Solvency I'이 탄생함.
- 그 이후 유럽공동체는 2007년 7월에 더욱 근본적이면서도 폭 넓은 보험법규 개정을 포함하는 'Solvency II'를 제안하였고, 2008년 2월 26일에는 동 'Solvency II'의 수정안을 최종적으로 제안하였음.

## 다. 'Solvency II' 상정(안)의 내용

Solvency I:  
보험리스크만  
관리  
  
Solvency II:  
보험리스크  
포함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도  
관리

- 'Solvency II'는 지급능력과 관련하여 'Solvency I'보다 더욱 복잡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음.
  - 'Solvency II'의 준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홍수, 폭우, 대형 자동차사고 등 보험사업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사건에 대비하여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Solvency II'는 보험리스크만을 고려하는 'Solvency I'과는 달리 보험사업자의 투자손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리스크, 부채상환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신용리스크, 배임 및 시스템체제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리스크도 고려하여 준비금을 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보험사업자들은 수동적인 법규준수를 넘어 발생 가능한 각종 리스크를 인지하고, 이를 측정·관리함에도 능동적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새로운 사업계획이나 재난발생으로 인한 리스크의 증대도 사전에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을 의미함.

Solvency II 감독:

보험사  
리스크평가  
리스크관리수준  
과 내부통제

시스템도 관리

보험그룹에 대한  
감독 일원화  
제안

- 보험감독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경우, 적정자본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감독의 전부였으나, 'Solvency II'에서는 보험사업자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보험사업자의 리스크관리 수준과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시스템의 점검도 감독영역에 포함되게 됨.
- 더불어 국경 간 경영을 영위하는 보험그룹에 대한 감독은 본사가 위치하는 국가에 위임하는 감독일원화 방안이 제안됨.
- Home country에 감독권을 일임할 경우 감독자의 입장에서는 그룹 전체적인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넓은 시야를 통한 효율적인 감독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음.
- 보험소비자는 더욱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보험그룹의 입장에서는 업무를 간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지며, 동시에 리스크 분산효과를 통한 적정준비금 감소를 유도할 수도 있음.

#### 라. 'Solvency II' 제정에 따른 이해 상충

강대국에  
보험그룹 감독권  
일임은 주변국의  
종속화 야기

- 'Solvency II'에 대한 이해 상충은 주로 보험그룹에 대한 감독권 일임과 시장리스크와 관련하여 각국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됨으로써 발생함.
- 'Solvency II'에 포함된 보험그룹의 국경 간 감독을 Home country에 일임할 경우 보험그룹의 본사가 위치한 국가 (Aviva(영국), Axa(프랑스), Allianz(독일))가 감독권상 기타 국가의 상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의견이 기타 국가로부터 제기됨.
- 감독권 일임 문제가 유로지역 국가간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됨.

유럽의회:  
보험그룹의  
감독일임권  
지지

□ 이러한 첨예한 갈등은 2009년 1월 유럽공동체 의장국을 체코가 행사하는 시기에 발생하여 유로지역 주변국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게 되었는데, 2009년 3월 중순 현재 EU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공동체가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줌.

○ EU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공동체는 의견의 조율을 위해 3자간의 5차 회담을 진행시켰는데 특히 EU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간에 시각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유럽보험연맹,  
영국보험협회:  
보험그룹의  
감독일임권  
지지

□ 유럽의회는 기본적으로 보험그룹의 감독일임권을 지지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주는 반면, 시장리스크에 대해서는 보험그룹 감독권 일임과 연계하여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음.

○ 보험그룹의 감독권 일임에 대해 보험그룹들은 유럽의회 의견에 지지하며, 유럽보험연맹(CEA), 영국보험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도 유럽의회를 지지하는 상황임.

주변국,  
EU집행위원회:  
보험그룹의  
감독일임권  
반대

□ 한편, 유로지역 27개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변국들은 보험그룹 감독권 일임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갖고 협상불가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데 이들이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EU 집행위원회도 반대 입장을 취하는 상황임.

○ 강대국인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사적연금과 같은 장기성 상품의 보유 자산 리스크는 단기성 상품보다 낮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

프랑스:  
시장리스크  
조정 필요성  
주장

○ 주변국들은 시장리스크에 대해서도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프랑스 등은 현재 주변국의 주장에 편승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시장리스크에 대해서는 각 국들이 조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협상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경기가 하강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의 증권자산 가치가 하락하기 쉽고, 이와 같은 시장리스크 증대 상황에서는 보험사업자는 유동화 증권을 우선적으로 처분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자칫 증권 가격을 더욱 하락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pro-cyclicality).
- 따라서 증권에 대해서는 리스크 노출에 따른 준비금 산정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증권가격 하락 또는 상승 부추김 현상을 억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마. 'Solvency II' 에 대한 협상 경과

2009.3.26  
Solvency II  
합의 도출

보험그룹의  
감독일임  
문제는 제외

- 2009년 3월 26일 유럽의회와 EU집행위원회 간의 잠정적 합의도출로 인해 'Solvency II'는 유럽의 새로운 보험법으로 자리를 잡게 됨.
-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한 대처에 가장 핵심사안이 되는 보험그룹의 감독권 일임 관련 문제는 이번 'Solvency II'의 합의에서 제외됨으로써 개혁의 혁신성이 결여되게 됨.
- 'Solvency II'가 현재 잠정적인 합의를 이룬 상황이기 때문에 4월 22일 유럽의회에서 공식적인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통과시 공식적으로 5월 5일의 경제·금융 집행위원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 바. 'Solvency II' 적용에 따른 문제점

MCEV 적용시  
보유자산 가치  
하락 위험 상존

- 'Solvency II'의 규정에 따라 증권의 가치평가를 시장내재가치평가(MCEV: Market Consistent Embedded Value)로 적용할 경우 보험사업자는 무위험 이자율을 적용한 투자수익을 얻게 됨.
- 최근과 같이 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무위험 이자율(=이자율-리스크)이 그만큼 하락하게 되어 투자원리금 합계는 더 큰 하락을 보일 수 있음.

MCEV 적용시 □ MCEV가 적용될 경우 연금상품에 치중한 보험사의 손실이 클 것  
 보험사자산, 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회사채 의존도가 높은 Prudential, Legal  
 준비금 & General, Aviva 등의 손실이 클 것으로 예측되었음.  
 30% 감소 ○ 애널리스트들은 MCEV를 적용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 급증  
 예상 으로 보험사들의 보유 자산과 준비금이 30% 까지 감소할 것으  
 로 분석함.

Aviva 2008년 □ MCEV를 적용한 Aviva는 손실이 더욱 커지는 결과를 낳았고, 이  
 MCEV 적용 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MCEV의 실질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

세후영업손실: ○ Aviva는 2008년 세후 영업이익이 77억 1천만 파운드의 손실로  
 77억1천만 나타났는데, MCEV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영업손실은 8억8천  
 파운드 5백만 파운드로 나타나 MCEV 적용 후 손실이 부풀려지게 됨.

기존 IFRS ○ 2009년 3월 5일 주식시장에서는 Aviva의 MCEV 적용으로 인  
 적용 한 손실이 예상을 뛰어넘게 되자 Aviva의 주가가 1/3이나  
 세후영업손실: 폭락하는 양상을 보였음.

8억8천만5백  
 만 파운드

<표 1> MCEV 도입에 따른 Aviva 재무제표 비교

MCEV  
 적용으로  
 손실 확대→  
 주가 1/3 폭락

|                                                      | IFRS         |               | MCEV         |               |
|------------------------------------------------------|--------------|---------------|--------------|---------------|
|                                                      | 2008<br>(£m) | Growth<br>(%) | 2008<br>(£m) | Growth<br>(%) |
| operating return /<br>IFRS long-term business profit | 1,694        | 5%            | 2,801        | 10%           |
| Fund management                                      | 123          | (31)%         | 42           | (53)%         |
| General insurance and health                         | 1,198        | 17%           | 1,198        | 17%           |
| Operating profit before tax                          | 2,297        | 4%            | 3,358        | 10%           |
| (Loss)/profit after tax                              | (885)        | -             | (7,710)      | -             |

## 사. 'Solvency II' 추후 과제

- 유럽보험퇴직연금 감독위원회(Committee of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Supervisors)는 MCEV 적용에 따른 문제점 해결 이외에도 'Solvency II'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과제를 지적함.
- 은행권에서 실시되는 예금보장체제와 같은 보험보증체제(Insurance Guarantee Schemes)가 유로지역 전체에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
  - 현재는 국가별로 보험보증체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Solvency II'가 도입될 경우 전 유로지역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 유로지역의 단일 법 구축시 그에 상응하는 단일 보험보장 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임.
-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 전달 감독은 현재 국가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유로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바라본다면 보험판매시 소비자에게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방식으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보험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상품 구매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보험기간이 지속되는 한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이 불완전 판매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밝힘.
- 보험사업자가 보유하는 리스크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양식의 통일성문제를 지적함.
  - 유로지역의 각 국가가 제공하는 리스크 관련 정보의 정의를 규정 및 통일시키는 한편, 보험사업자의 보유리스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각 국가가 적극적인 정책적 결정을 내리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함.

보험보증체제  
확립 필요

불완전판매  
감소 감독  
방안 필요

리스크 측정,  
보고 양식  
통일화 필요

\* 자료 : Financial Times 2009.3.25, 3.27

European Commission, "Solvency II: EU to take global lead in insurance regulation, 2007.7.10

CEIOPS, 보도자료 2009.2.16, 3.26, 3.27

CEA, 보도자료 2009.3.26

ABI, 보도자료 2009.3.11

## 2. EC, 표준약관 협업 담합면제에서 제외

EC:  
요율산출,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보험정보  
교환은  
담합면제

표준약관  
협업은  
담합면제에서  
제외

BER:  
2010년 3월  
31일 만료

- 유럽공동체(EC)는 기본적으로 보험부문에 대해 담합면제규정(BER: Insurance Block Exemption Regulation)을 채택해 왔으나, 기존 면제 대상 4개 부문 중 2개 부문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면제를 유지하되 나머지 2개 부문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힘.
  - 요율산출을 위한 보험사업자 간 보험정보 교환과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보험사업자 간 보험정보 교환은 계속 면제대상으로 유지시키되 비구속성 표준상품약관 등 2개 부문에 대해서는 담합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
- EU의 담합금지법은 보험사업자 간의 협정이 EU 조약 제8조에 해당하는지를 보험사업자 스스로가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BER을 제정하여 산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제를 시켜줌.
  - BER은 2003년 제정되어 2010년 3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일몰 조항이었으며, BER에 대한 해당 여부는 감독당국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면제에 대한 정당성이 입증될 경우 갱신을 실시해왔음.
  - BER의 존재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데 2009년 6월 2일 청문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유럽공동체가 결정하기로 함.
- 보험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요율산출과 보험 담보 pool의 생성을 위한 보험정보 교환이 담합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이나 향후 이들 보험정보 교환이 면제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우려된다고 밝힘.
  - 보험정보 교환 및 공유가 불가능해 질 경우 요율산출에 정확성을 기할 수 없고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가격 인상이 전이될 수밖에 없으며, 일부 담보는 보험통계 부족으로 상품 공급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함.

보험정보  
교환 및 공유  
불가능→  
보험료 인상,  
특정 상품  
공급 중단

- 보험사업자들은 유럽공동체가 표준약관(Standard Policy Conditions) 담합에 대해 면제 제외 조치를 취할 경우 약관 개발에 따른 비용 절감과 이로 인한 보험계약자 보험료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함.
- 유럽공동체는 보험사업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긍정하는 바이나 기본적으로 표준약관 공동작업이 보험산업에만 발생하는 특수한 사항 인지를 점검해 볼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발표함.
- 은행의 예금 송금 및 수금, 신용카드 발급, ATM 사용에 대한 약관은 BER 없이도 이루어지는 일로서 보험권에서도 BER로 굳이 보장하지 않아도 자체적인 방법에 의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 그러나 유럽의 보험사업자는 BER에 의해 안전지대 속에서 면제권을 누린 것과 향후 EU 조약 제8조에 대한 위배 여부를 면밀히 살피면서 업계 간 공동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와는 확실히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함.

\* 자료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n the functioning of Commission Regulation on the application Article 81 of the Treaty  
Financial Times 2008.3.25  
유럽공동체 보도자료 2009.3.24

## ◆ 일본 동향

### 1. 일본 손보업계, 경영통합 통해 Big 3로 재편

일본  
손보업계  
3위  
손해보험재  
팬과 5위  
니혼코아손  
보 2010년  
경영통합  
예정

- 최근 일본 손보업계 3위인 손해보험재팬과 5위 니혼코아(日本興業)손해보험이 2010년 4월에 경영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손보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음.

<표 2> 손해보험재팬과 니혼코아손해보험 비교

|            | 손해보험재팬                              | 니혼코아손해보험                             |
|------------|-------------------------------------|--------------------------------------|
| 설립년도       | - 2002.7                            | - 2001.4                             |
| FY07 수입보험료 | - 약 1조 3,700억엔(업계 3위)               | - 약 7,000억엔(업계 5위)                   |
| 지분구조(08.9) | - 美사우스이스탄불에셋매니지먼트가 6.77%를 보유        | - 美사우스이스탄불에셋매니지먼트가 18.66%를 보유        |
| 종업원수       | - 1만 9,541명(08.12)                  | - 9,565명(08.3)                       |
| 강점         | - 미즈호파이낸셜그룹과 친밀<br>- 제일생명보험과 포괄제휴 중 | - 특정회사에 미소속된 독립사<br>- 지방은행 방카슈랑스에 강함 |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및 毎日新聞(2009.3.12) 참조

#### 가. 경영통합 주요 내용

새로운  
주주회사  
설립 후  
시스템  
통합으로  
경영 효율화  
극대화 전략

- 두 회사는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시스템 공동개발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경영통합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비용절감 등의 통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일단 시스템 통합·관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두 회사는 시스템 통합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함.
- 최근 재정 악화 등으로 보험금 미지급 문제가 현안으로 급부상 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은 수익성 악화의 주원인인 과도한 시스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각종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회사는 손해보험 본사와 대리점을 온라인으로 묶어 계약정보 등을 공유하는 대리점 시스템과 손해사정 시스템 등의 통합을 적극 검토 중임.
- 2010년 봄을 목표로 두 회사가 공동으로 신설 주주회사를 설립 후 중복 분야를 통합·정리해 경영 효율을 극대화 할 방침임.

#### 나. 경영통합 배경

보험시장 침체  
장기화로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보험업계 최대  
화두로 부각

- 경기불황으로 인한 보험시장 침체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보험업계 재무건전성 악화 등의 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살 길이라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퍼지고 있는 상황임.
- 경기하강으로 인한 신차판매 부진과 주택시장 침체로 주력상품인 자동차보험 및 화재보험 실적하락 징후가 뚜렷해 지고 있고, 추가급락과 금융상품 손실이 보험사 경영을 압박하면서 손해보험재팬의 경우 FY2008에 520억엔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두 회사 모두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올초 메이저  
3사의 경영통합  
등 손보업계  
합종연횡  
현실화

- 특히, 올해 1월 경쟁회사인 미츠이스미토모(三井住友)해상그룹 HD, IOI손해보험, 닛세이도와(日生同和)손해보험 등 3사가 2009년 경영통합을 이루기로 합의한 이후, 두 회사는 경영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킨 것으로 알려짐.
- 대형 손해보험회사 3사의 경영통합은 FY2007 수입보험료 기준 현재 1위사인 도쿄해상의 약 2조 2,000억엔을 크게 상회하는 총 2조 7,000억엔 규모의 가장 큰 규모의 손해보험그룹 탄생을 의미함.

<표 3> 미츠이스미토모해상, IO손보, 닛세이도와손보 비교

|            | 미츠이스미토모해상                        | IO손보                      | 닛세이도와손보                  |
|------------|----------------------------------|---------------------------|--------------------------|
| 설립년도       | - 2001.4                         | - 2001.4                  | - 2001.4                 |
| FY07 수입보험료 | - 1조 5,410억엔(2위)                 | - 8,715억엔(4위)             | - 3,182억엔(6위)            |
| FY07 총자산   | - 8조 3,397억엔                     | - 2조 9,872억엔              | - 1조 2,141억엔             |
| 종업원수(08.9) | - 20,942명                        | - 9,535명                  | - 4,183명                 |
| 강 점        | - 초대형금융그룹<br>(미츠이스미토모파이<br>낸셜그룹) | - 도요타가 최대주주<br>- 자동차보험 강화 | - 니혼생명이 최대주주<br>- 영업력 강화 |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및 毎日新聞(2008.12.28) 참조

중장기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해외시장 진출  
러시

○ 3사의 경영통합 방침이 보도된 직후 미츠이스미토모해상과 업계 2위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손해보험재팬은 상위 2사를 따라 잡기 위해서는 지방은행 판매에 강점을 보이며 손해보험재팬과 고객층이 겹치지 않는 업계 5위의 니혼코아손해보험과의 통합이 절실하다는 전략적 판단아래 니혼코아손해보험 경영진과 지속적으로 통합 논의를 진행함.

□ 자국 보험시장의 성장정체로 중장기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어느 때보다 해외시장 개척이 중요해진 만큼, 메이저 경쟁회사들에 비해서 국제화가 뒤쳐져 있는 두 회사의 상황도 경영통합을 촉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됨.

○ 손보업계 1위인 도쿄해상은 2008년 7월 미국 중견 손해보험 회사 필라델피아 콘솔리데이티드를 46억 달러에 인수해 일본 보험사 사상 최대규모의 외국기업 M&A 기록을 세웠으며, 이에 앞서 2007년 12월에는 영국 보험회사 킬튼을 인수해 유럽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음.

○ 업계 2위 미츠이스미토모해상그룹HD도 최근 영국의 대형보험회사인 아비바의 아시아 손해보험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등 외국계 손해보험 중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에서 수입보험료 규모로는 가장 클 만큼 해외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임.

대주주의 중재  
노력도  
경영통합  
성공에 큰 역할

○ 해외 판매망이 부족한 IOI손해보험과 닛세이도와손해보험 역시 내년 미즈이스미토모해상그룹HD과의 경영통합을 통해 본격적인 세계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어서 두 회사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극적인 타개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업계에서는 이번 두 회사의 경영통합의 또 다른 배경에 두 회사의 최대주주인 미국 투자회사 사우스이스탄불에셋매니지먼트(이하 사우스사)의 암묵적 통합압력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음.

○ 19%의 니혼코아손해보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우스사는 작년 6월 주주 총회에서 실적악화를 이유로 합병을 포함한 경영개혁 플랜을 2년 이내 제시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음.

○ 사우스사가 작년 여름 이후, 5% 미만이었던 손해보험재판 지분을 약 7%까지 늘리자, 이를 두고 니혼코아손해보험와의 합병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음.

○ 기업사냥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던 사우스사의 과거 전례를 볼 때, 손해보험재판과의 경영통합으로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결국 니혼코아손해보험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해 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 실제로 주식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대한 기대감으로 니혼코아손해보험의 주가는 작년말대비 최대 23% 급등함.

#### 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손해보험 빅  
3로 재편 전망

□ 두 회사 및 경쟁 3사의 경영통합이 성사되면, 현재 6개 메이저 회사들이 난립하고 있는 일본 손보업계는 이른바 손해보험사 Big 3로의 재편이 불가피함.

- 도쿄해상과 경영통합 후 탄생하게 될 두 신생회사를 포함해 상위 3사는 모두 수입보험료 규모로 2조엔을 넘는 세계 톱 10 수준에 이르게 됨.
  - 1998년 7월 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되어 상장 손해보험사 17개가 7개로 재편된 이후, 작년 말 미츠이스미토모해상그룹HD 등 3사의 경영통합과 이번 손해보험재팬과 니혼코아손해보험통합 교섭 표면화로 업계간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음.
- 이번 통합이 성사될 경우 두 회사는 경기하강과 인구 고령화로 축소 일로에 있는 자국 손보시장을 탈피해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 해외 보험시장  
적극 진출 예상
- 통합을 계기로 두 회사는 기업 M&A나 시스템면에서 세계 10대 손해보험회사로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경영규모를 갖추게 됨.
  - 해외 유수의 보험사들과의 제휴 및 M&A를 통해 해외사업부문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규모에 걸맞는 글로벌 보험회사로 탈바꿈하기 위한 전략마련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이번 통합을 계기로 서구의 글로벌 보험그룹처럼 향후 일본에서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를 취급하는 이른바 금융복합그룹(financial conglomerate)의 탄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 향후  
금융복합기업  
탄생 가능성  
상존
- 이번 통합이 성공되면 일본 손보업계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 금융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음.
  - 손해보험재팬과의 포괄적인 제휴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 중인 제일생명보험은 2010년 4월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M&A가 가능해지게 됨.

- 업계에서는 손해보험재팬이 니혼코아손해보험과의 경영통합으로 손해보험 사업규모를 확장한 후, 곧이어 제일생명보험과의 M&A를 통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취급하는 진정한 금융복합기업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자료 : 손해보험재팬·니혼코아손보·미즈이스미토모해상·IC손보·닛세이도외손보 홈페이지  
후지산케이비즈니스아이, “3メガ損保 海外に活路 損保ジャパン、日本興亜統合”, 2009.3.13.  
山陽新聞, “国内市場縮小で再編加速 損保統合、3メガ時代へ”, 2009.3.13.  
読売新聞, “損保ジャパンと日本興亜、統合13日にも発表”, 2009.3.12.

## 2. 도쿄해상, 이슬람 보험 시장 공략에 박차

### 가. 도쿄해상 타카풀 시장 진출 배경

타카풀 시장  
공략에 사활건  
토쿄해상

- 일본 최대 손해보험사인 도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東京海上日動火災保險, 이하 도쿄해상)은 연초 중장기 경영전략을 밝히는 자리에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이슬람 보험인 타카풀(takaful) 사업을 향후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보험에 뒤잇는 해외보험 사업의 중요 축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천명함.
-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경기 하강 및 국내 보험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당분간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일본 보험업계는 위기를 타개할 중장기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 최근 영국 보험회사 킬른과 미국 중견 손해보험회사 필라델피아 콘솔리데이티드를 인수하는 등 해외사업 부문에서의 매출 비율을 30%까지 올리며 해외시장 개척에 기업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임.
- 일찍이 연평균 20% 이상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타카풀 시장에 대한 발전 잠재력을 눈여겨 본 도쿄해상은 일본 보험회사로는 최초로 2001년 사우디아라비아에 타카풀 회사를 설립한 이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집트 등지에 총 5개 타카풀 자회사를 운영하며 타카풀 시장에 활발히 진출 중임.
- 특히, 말레이시아 타카풀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최대 은행 그룹인 홍콩그룹과 합작으로 2006년도에 설립한 홍콩토쿄해상타카풀은 실질적인 영업초년도라고 할 수 있는 2007년 7월~2008년 6월 약 1.7억 링깃(약 56억엔)의 타카풀료(수입보험금에 해당)를 거수해 말레이시아 전체 타카풀회사 중에서 3위를 기록할 만큼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

고성장  
지속으로  
신시장으로  
부각중인  
타카풀 시장

## 나. 타카풀 특징 및 타카풀 시장 발전 전망

- 타카풀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전통적 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슬람교도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슬람 보험으로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을 시현하고 있는 신시장임.<sup>1)</sup>
  -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h)에 부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타카풀은 상호(ta'awun)와 자발적 공여(tabarru)의 원칙을 근간으로 참여자들이 집단적, 자발적 방식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보험적 성격을 지닌 시스템.
  - 자발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손실 유형을 명확하게 정의함에 따라 불확실성(gharar)이나 과도한 위험부담(maisir) 같은 이슬람 율법에서 금지된 요소들이 계약에서 제외되는 독특한 특성은 타카풀이 전통적 보험과 차별화되는 부분임.

### <표 4> 타카풀의 주요 특징

1. 보험운영 및 샤리아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샤리아위원회 설치
2. 주주 자금과 보험계약자 자금의 분리
3. 보험수익의 보험계약자 배분
4. 샤리아에 부합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투자 회피

자료 : Siwss Re, "Insurance in the emerging markets: overview and prospects for islamic insurance", No. 5/2008.

- 기존 보험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10.2%로 예상되는 반면, 2004~2007년간 타카풀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25%(인플레이션 감안 후)로 추정될 정도로 타카풀 시장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고자 하는 보험사들에게는 신시장으로서 매우 주목받는 시장임.

1) Siwss Re(No. 5/2008) 보고서에서 요약·정리함.

- 2015년이 되면 전세계 타카풀 시장 규모가 2007년 17억 달러에서 70억 달러까지 4배 이상 증가할 전망으로, 전 세계 15억 이슬람 인구는 보험업계에 주요 고객으로 부상하고 있음.

#### 다. 도쿄해상의 타카풀 시장 진출 현황 및 전략

- 10여 년의 타카풀 시장 진출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쿄해상은 최근 들어 북아프리카 타카풀 시장 선점 및 선진 타카풀 시장으로 손꼽히는 말레이시아 타카풀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다양하고 공격적인 진출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작년 초 외국계로는 최초로 이집트에 중동의 중견 투자기업 이집트 쿠웨이트지주회사(EKH)와 제휴해 타카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북아프리카 타카풀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함.
-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일반타카풀(general takaful)과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가족타카풀(family takaful) 모두를 취급하고 있으며, 도쿄해상이 40%를 출자한 합작회사의 자본금은 총 3천만 이집트파운드(약 6억엔)로 개업 후 3년 안에 흑자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보험 보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집트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피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아프리카 타카풀 시장의 관문인 이집트에 외국계회사 최초로 진출함으로써 시장선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에서도 홍콩토쿄해상타카풀을 설립해 영업 첫 해에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도쿄해상은 작년 말 일본 금융회사로 이슬람 금융업에 의욕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이온크레디트서비스(이하 이온크레디트)와 포괄적인 업무 제휴 협약을 맺음.
- 현재 전국 26개 이온크레디트의 대리점들은 200여 개에 달하는 기존의 홍콩은행 지점망과 함께 홍콩토쿄해상타카풀의 채널확대 전략에 따른 수익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북아프리카 및  
말레이시아  
타카풀 시장  
공략에 박차

- 특히, 올해부터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등의 동남아권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으로까지 판매 권역을 넓히기로 함에 따라 도쿄해상은 이슬람권에 구축한 이온크레디트의 채널망 및 이슬람 금융상품 개발능력에 기대를 걸고 있음.

#### 라. 도쿄해상의 타카풀 시장 진출 의미 및 시사점

- 신성장동력을 해외시장 개척에서 찾으려고 하는 도쿄해상은 특히, 발전잠재력이 가장 큰 보험시장인 타카풀 시장 개척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타카풀 시장  
개척에 기업  
역량을 집중  
하고 있는  
도쿄해상

- 2001년부터 시작된 도쿄해상의 타카풀 시장 공략은 일본 금융권 뿐만 아니라 비이슬람권 국가의 보험회사로도 최초이기 때문에 2006년을 전후로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비교해서도 매우 선제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30여년의 짧은 역사를 지닌 타카풀 시장에 일찍이 주목하고 발전 가능성을 면밀하게 측정하여 경쟁사들보다 먼저 시장에 진출, 비이슬람권 외국계 기업인 홍콩도쿄해상타카풀의 성공에서 보듯이 이른바 선발자 이익(first mover advantage)을 최대한 누리고 있음.
- 국내보험시장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신흥 보험시장이라고 평가받는 국가들에서의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중장기 전략 중 하나로 타카풀 시장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도쿄해상의 진출 사례는 좋은 역할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자료 : 도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 홈페이지

도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 사보 UAE 주재원 인터뷰, 2009.3.11.

도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 “東京海上グループの概要と経営戦略”, 2009.2.23.

## ◆ 기타 동향

### 1. 중국 은감회, 은행의 보험대리업무 관리규범 발표

현행  
방카슈랑스  
관련 법규를  
보완한 은행  
보험대리업  
무 관리규범  
발표

-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 이하 은감회)는 현행 방카슈랑스 관련 법규를 보다 강화한 ‘은행의 보험대리업무 관리규범(关于进一步规范银行代理保险业务管理的通知, 이하 관리규범)’을 2월 24일 발표함.

#### 가. 발표 배경

중국 보험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방카슈랑스

- 중국 보험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는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가 큰 역할을 하였음.

- 은행과 보험회사는 은행고객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를 중요 판매전략으로 인식해 서로 적극적인 공조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방카슈랑스 판매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음.

-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방카슈랑스로 판매된 보험상품은 1,410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43%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수입보험료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은행이 보험사의 주요 판매 채널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부작용

- 그러나 보험회사와 은행간 방카슈랑스 협약이 보험회사에게 다소 불리해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2000년 방카슈랑스 도입 초기에는 보험회사와 은행들은 양호한 협력관계를 유지했으나, 이후 일부 은행들이 수수료 수입 확충을 위해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초기 0.1%에 불과했던 수수료가 4~5%로 높아진 상태임.

- 이로 인해서 보험회사간 출혈경쟁이 유발되고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니즈파악 없이 보험상품이 판매됨으로써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비자 불만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외형성장에 걸맞는 관련 법규 보완 및 개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음.

#### 나. 관리규범 주요 내용

- |                                                           |                                                                                                                                                                                                                                                                                                                      |
|-----------------------------------------------------------|----------------------------------------------------------------------------------------------------------------------------------------------------------------------------------------------------------------------------------------------------------------------------------------------------------------------|
| <p>방카슈랑스<br/>판매인 자격<br/>조건 및 판매<br/>행위를 보다<br/>엄격히 규정</p> | <p>□ 방카슈랑스 판매인의 자격 조건 및 판매 행위를 현행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여 판매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카슈랑스 판매인과 일반창구 직원을 엄격히 분리하고, 방카슈랑스 판매인에 대한 자격관리를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불완전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li> <li>○ 또한, 은행은 창구 등급별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고, 방카슈랑스 판매인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험상품 판매권한을 위임받아 판매해야 함.</li> </ul> |
| <p>투자형<br/>보험상품 판매<br/>관리 강화</p>                          | <p>□ 투자형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 관리를 강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부담 및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투자형 상품에 대한 고객의 투자 적합성 여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함.</li> <li>○ 투자형 상품 판매는 반드시 자산관리서비스 창구나 자산관리 상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li> </ul>                                                                               |
| <p>방카슈랑스<br/>판매 방식 및<br/>관리규정 강화</p>                      | <p>□ 부적절한 방식의 보험상품 판매와 홍보를 일체 금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상품 대리판매의 광고 관리를 강화하고, 홍보 전단지과 같은 판매보조 자료에 대해서는 파일로 관리하도록 함.</li> <li>○ 또한 판매보조 자료는 반드시 보험회사의 본사 혹은 본사의 권한을 위임 받은 지사에서 일괄적으로 인쇄할 것을 명시함.</li> </ul>                                                                                 |

협약문제에  
있어 양자간  
자정 노력  
촉구

- 최근 심화되고 있는 보험회사와 은행간의 협약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양측의 자정 노력을 촉구함.
- 보험상품 대리판매 계약시 보험사와 은행의 책임한계를 명확  
하게 규정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퇴  
출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것을 표명함.

\* 자료 : 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 “银监会发布通知要求进一步规范银行代理  
保险业务”, 2008.2.24.  
投资与理财, “保险四大乱魂术”, 2009.3.19.  
吉林日报, “保险人员在银行卖产品要先亮身份”, 2008.3.09.  
新华网, “银监会规范银行代理保险业务”, 2009.2.25.

## 2. 사회보험법 초안 발표

사회보험법  
초안 발표

-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는 ‘사회보험법(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초안(草案)을 발표하고, 두 달간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임.<sup>1)</sup>

### 가. 법안 배경 및 절차

사회보험제도  
의 법제화  
필요성 제기

- 양로보험과 기본의료보험, 상해보험, 실업보험, 산아보험 등 총 5개 분야로 나뉘어 있는 현행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 현실 상황에 맞게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양로·의료·상해·실업 등 4대 보험의 혜택을 받는 중국 인민들 수가 각각 1억 명을 상회하고 있고, 산아보험 역시 7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그러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핵심정책인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시대에 맞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 특히, 농촌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급속하게 유입되면서 속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보험 제도의 속성 때문에 혜택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이에 대한 긴급한 시정이 요구되었음.

-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인 중국 정부는 1년 전부터 사회보험법 법안을 준비함.

1년 여간

사회보험법  
법안 준비

- 13억 중국 인민들 모두가 보험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1년여 기간 동안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보장 제도의 맹점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함.

1) 의견 수렴기한은 2008년 2월 15일로 총 68,027건이 접수됨.

- 총 12장 91조항으로 이루어진 이번 초안이 원안대로 발효되면, 무엇보다도 지역간 많은 유동인구로 인해 발생했던 사회보험 보장도의 불연속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중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음.
- 중국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회보험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표 5> 사회보험법 제정을 위한 각계 의견 정리**

|    |                         |
|----|-------------------------|
| 1  | 사회보험의 범위 재설정            |
| 2  | 공평대우 실현                 |
| 3  | 비용부담 경감                 |
| 4  | 대우수준 제고                 |
| 5  | 사회보험 통합계획 수준 제고         |
| 6  | 사회보험 이전 및 연계 문제         |
| 7  | 사회보험 감독 강화              |
| 8  | 재정지원 강화                 |
| 9  | 농민공예 대한 사회보험 혜택 강화      |
| 10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책임 구분 문제     |
| 11 | 의료보험기구 선불금제 실시          |
| 12 | 퇴직 후 기본의료보험 대우 적용 요건 완화 |
| 13 | 사회보험법으로 양로보험 미해결 문제 해결  |

자료 : 전국인민대표회의 홈페이지에서 요약함.

**나. 초안 주요 내용**

양로보험 등  
3대 보험  
속인주의 채택

-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등 3대 보험은 속인주의를 채택함.
- 경제성장과 더불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유입되는 농민공들이 크게 늘고 있고, 그에 따라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도 증가하면서 사회안전망 약화라는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사회보험  
시스템  
중앙정부  
관리로  
일원화

- 또한, 도시 노동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퇴직인구 중 일부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까닭에 의료보험비 타지역 결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 사회보험 발전에 가장 큰 저해 요소였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거주지 이전시 기존 거주지역에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을 다른 지역에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함.
- 특히, 개인이 타 지역에서 취업을 하다 퇴직할 경우 기본양로금은 퇴직시의 각 납부지역의 기본 양로금 기준과 납부연한에 따라 각 납부지역을 갈라 계산하고 퇴직한 지역에서 통일적으로 지불할 것을 규정함.
- 사회보험시스템을 성(省)단위 관리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개편함.

- 현재 사회보험 관리 시스템은 지역간 경제발전 격차가 크고 각지 의료비용과 자금조달 수준 차이도 매우 크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를 중앙정부에서 통합관리하도록 명문화하며, 이를 위해 사회보험 등록번호를 개인 신분증 번호인 공민증번호(주민등록번호)로 일원화함.
- 또한 기본양로보험기금의 경우 국무원은 2009년 말 전국범위 내에서 성급에서 총괄하고, 2012년에 가서 전국이 총괄하는 목표를 제출함.

사회보험  
대상 범위  
대폭 확대

- 사회보험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함.
- 전 인민을 대상으로 만 18세 이상만 되면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 특히, 그동안 사회보험 소외 계층이었던 최저생계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영세민과 중증 장애인, 60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의료보험비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보험 수혜층을 확대하는 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섬.

- 사회보험에 대한 행정감독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체제를 바로잡는 데 주력함.

사회보험에  
대한  
행정관리  
감독 체제  
강화

- 사회보험 관련 기금 및 제도 운영에 대한 민·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함.
- 개인 및 단체는 정부의 보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신고할 권리를 보장함.
- 사회보험기금을 엄격히 관리·통제하며, 지방 및 중앙정부는 인민들이 보험금 사용 감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음.

#### 다. 의미 및 전망

기초보장,  
대상확대,  
다원성 및  
지속성 기본  
방침에 충실

- 이번 사회보험법 초안은 기초 보장, 보험대상 확대, 다원성과 지속성 등의 기본 방침을 충실하게 관철하고 있으며, 각 사회보장 제도의 공통된 내용을 규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초안에 대해 몇 가지 핵심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

향후 몇  
가지 개선  
요구사항  
반영 필요

- 현재 양로금 계산방법이 이해하기에 매우 복잡하고, 사회보험 처리기구가 추산한 퇴직금을 근로자가 인정하지 않아 상급 부처에 문의해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 가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됨.

- 15년으로 명시된 현행 양로보험 최저 납부연한 규정은 양로보험을 확대함에 있어 불리한 규정이므로, 준만큼 보장을 받는 원칙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 규정을 향후 개정 및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
- 또한 농민공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양로보험 13.8%, 의료보험 10%로 대체로 저조한 실정을 고려할 때, 농민공의 가입률향상을 위해 정부는 사회보험법 및 기타 관련법에 기업이 해마다 농민공 고용수와 보험료 납부 만기일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체납하거나 아예 내지 않는 업주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해야 함.

\* 자료 : 全国人大,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草案)全文”, 2009.3.02.  
新华网, “最新的《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是什么?”, 2009.2.21.

##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달러, %)

| 구 분       |         | CY2007  |         |         |         | CY2008  |         |         |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 국내총생산 성장률 |         | 4.0     | 4.9     | 5.1     | 5.9     | 5.8     | 4.8     | 3.8     | -3.4    |
| 경상수지      |         | -1,662  | 34.4    | 4,430   | 3,152   | -5,213  | -134    | -8,580  | 7,521   |
| 수 출       |         | 84,704  | 92,984  | 90,529  | 103,272 | 99,445  | 114,492 | 115,000 | 93,071  |
| 수 입       |         | 82,262  | 87,962  | 86,059  | 100,563 | 106,053 | 114,793 | 122,901 | 91,528  |
| 실업률       |         | 3.6     | 3.2     | 3.1     | 3.0     | 3.4     | 3.1     | 3.1     | 3.1     |
| 금리        | 국고채(3년) | 4.79    | 5.24    | 5.39    | 5.89    | 5.10    | 5.9     | 5.7     | 3.4     |
|           | 회사채(3년) | 5.20    | 5.64    | 5.85    | 6.73    | 6.01    | 6.9     | 7.7     | 7.7     |
| 소비자물가지수   |         | 103.5   | 104.6   | 105.3   | 106.0   | 107.4   | 109.6   | 111.1   | 110.8   |
| 환율        | 원/달러    | 940.3   | 926.8   | 920.7   | 938.2   | 991.7   | 1,043.4 | 1187.7  | 1257.5  |
|           | 원/엔화    | 797.0   | 752.4   | 796.7   | 833.3   | 1,000.2 | 987.8   | 1144.2  | 1393.9  |
| KOSPI     |         | 1,452.6 | 1,743.6 | 1,946.5 | 1,897.1 | 1,704.0 | 1,674.9 | 1448.1  | 1124.5  |
| 외환보유고     |         | 243,386 | 250,223 | 256,848 | 261,770 | 264,245 | 258,097 | 239,671 | 201,223 |

주 : 1) 금리,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원, %)

| 구 분   | CY2007 |         |         |         | CY2008  |         |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 보 험   | 95,422 | 106,338 | 93,397  | 108,974 | 85,391  | 106,256 | 91,830   | 87,478  |
| - 생 보 | 74,700 | 83,189  | 70,215  | 84,269  | 64,517  | 79,050  | 66,710   | 62,368  |
| - 손 보 | 20,722 | 23,149  | 23,182  | 24,705  | 20,874  | 27,206  | 25,120   | 25,110  |
| 은 행   | 33,002 | 101,574 | 8,442   | 204,778 | 214,006 | 235,332 | 148,217  | 197,137 |
| - 일 반 | -2,513 | 114,075 | -42,781 | 187,062 | 142,969 | 291,219 | 145,463  | 218,569 |
| - 신 탁 | 35,515 | -12,501 | 51,223  | 17,716  | 71,037  | -55,887 | 2,754    | -21,432 |
| 증 권   | 29,858 | 85,722  | 37,556  | -13,605 | 6,184   | 47,423  | 1,782    | 2,938   |
| 투 신   | 73,030 | 163,893 | 112,258 | 269,007 | 377,948 | 239,132 | -167,059 | 185,113 |
| 총 금   | 60,303 | 79,432  | 37,691  | 14,457  | 34,881  | 43,348  | -55,532  | 4,640   |

주 :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억원, %)

| 구 분      |     | FY2007  |         |         |         |         | FY2008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 생존       | 보험료 | 34,612  | 34,008  | 35,507  | 37,275  | 141,403 | 34,444  | 35,313  | 35,115  |
|          | 성장률 | 14.7    | 8.6     | 9.6     | 2.8     | 8.6     | -0.5    | 3.8     | -1.1    |
|          | 구성비 | 19.9    | 19.3    | 16.5    | 20.2    | 18.8    | 18.8    | 19.6    | 17.9    |
| 사망       | 보험료 | 73,721  | 73,777  | 75,176  | 75,026  | 297,700 | 74,786  | 74,189  | 73,160  |
|          | 성장률 | 5.8     | 4.1     | 4.2     | 2.8     | 4.2     | 1.4     | 0.6     | -2.7    |
|          | 구성비 | 42.3    | 41.8    | 34.9    | 40.6    | 39.6    | 40.9    | 41.2    | 37.2    |
| 생사<br>혼합 | 보험료 | 16,830  | 16,266  | 16,754  | 16,193  | 66,043  | 15,267  | 15,762  | 15,870  |
|          | 성장률 | 0.8     | -2.2    | -1.3    | -8.1    | -2.8    | -9.3    | -3.1    | -5.3    |
|          | 구성비 | 9.7     | 9.2     | 7.8     | 8.8     | 8.8     | 8.3     | 8.8     | 8.1     |
| 변액<br>보험 | 보험료 | 37,097  | 43,514  | 48,117  | 45,184  | 173,912 | 47,399  | 45,977  | 42,221  |
|          | 성장률 | 35.0    | 57.2    | 63.6    | 47.1    | 50.9    | 27.8    | 5.7     | -12.3   |
|          | 구성비 | 21.3    | 24.7    | 22.3    | 24.5    | 23.2    | 25.9    | 25.5    | 21.5    |
| 개인계      | 보험료 | 162,260 | 167,565 | 175,555 | 173,678 | 679,058 | 171,896 | 171,241 | 166,366 |
|          | 성장률 | 12.6    | 14.4    | 16.3    | 10.2    | 13.4    | 5.9     | 2.2     | -5.2    |
|          | 구성비 | 93.2    | 95.0    | 81.4    | 94.0    | 90.4    | 94.0    | 95.1    | 84.7    |
| 단체       | 보험료 | 11,924  | 8,848   | 40,120  | 11,006  | 71,898  | 10,945  | 8,744   | 30,099  |
|          | 성장률 | -8.9    | -3.7    | 36.9    | -21.2   | 9.7     | -8.2    | -1.2    | -25.0   |
|          | 구성비 | 6.8     | 5.0     | 18.6    | 6.0     | 9.6     | 6.0     | 4.9     | 15.3    |
| 합계       | 보험료 | 174,185 | 176,413 | 215,675 | 184,684 | 750,956 | 182,840 | 179,985 | 196,465 |
|          | 성장률 | 10.8    | 13.3    | 19.7    | 7.7     | 13.0    | 5.0     | 2.0     | -8.9    |
|          | 구성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 · 지급보험금증가율 · 보험금지급률 추이

(단위 : 억원, %)

| 구 분    |       | FY2007 |         |         |         |         | FY2008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 생존보험   | 지급보험금 | 20,781 | 25,507  | 29,931  | 28,143  | 104,361 | 22,838  | 31,257  | 37,527  |
|        | 증가율   | 13.1   | 22.2    | 47.8    | 27.2    | 27.9    | 9.9     | 22.5    | 25.4    |
|        | 지급률   | 60.0   | 75.0    | 84.3    | 75.5    | 73.8    | 66.3    | 88.5    | 106.9   |
| 사망보험   | 지급보험금 | 27,583 | 29,735  | 32,928  | 33,482  | 123,728 | 31,371  | 35,308  | 39,016  |
|        | 증가율   | 6.5    | 2.5     | 19.0    | 13.8    | 10.5    | 13.7    | 18.7    | 18.5    |
|        | 지급률   | 37.4   | 40.3    | 43.8    | 44.6    | 41.6    | 41.9    | 47.6    | 53.3    |
| 생존사합보험 | 지급보험금 | 18,237 | 22,531  | 35,605  | 26,600  | 102,973 | 18,738  | 18,230  | 19,304  |
|        | 증가율   | 0.9    | 23.2    | 90.0    | 44.7    | 40.1    | 2.7     | -19.1   | -45.8   |
|        | 지급률   | 108.4  | 138.5   | 212.5   | 164.3   | 155.9   | 122.7   | 115.7   | 121.6   |
| 변액보험   | 지급보험금 | 11,149 | 15,209  | 18,683  | 13,981  | 59,022  | 14,882  | 13,918  | 16,765  |
|        | 증가율   | 236.2  | 273.1   | 203.9   | 73.2    | 173.0   | 33.5    | -8.5    | -10.3   |
|        | 지급률   | 30.1   | 35.0    | 38.8    | 30.9    | 33.9    | 31.4    | 30.3    | 39.7    |
| 개인보험계  | 지급보험금 | 77,750 | 92,981  | 117,147 | 102,206 | 390,084 | 87,830  | 98,713  | 112,612 |
|        | 증가율   | 18.4   | 28.7    | 60.9    | 31.0    | 35.1    | 13.0    | 6.2     | -3.9    |
|        | 지급률   | 47.9   | 55.5    | 66.7    | 58.8    | 57.4    | 51.1    | 57.6    | 67.7    |
| 단체보험계  | 지급보험금 | 13,246 | 13,217  | 14,259  | 17,961  | 57,080  | 15,960  | 14,562  | 21,485  |
|        | 증가율   | -23.1  | -2.1    | 8.4     | -4.6    | -8.6    | 20.5    | 10.2    | 50.7    |
|        | 지급률   | 111.1  | 149.4   | 35.5    | 163.2   | 79.4    | 145.8   | 166.5   | 71.4    |
| 전체     | 지급보험금 | 90,995 | 106,198 | 131,406 | 120,168 | 447,164 | 103,790 | 113,275 | 134,097 |
|        | 증가율   | 9.8    | 23.9    | 52.9    | 24.1    | 27.3    | 14.1    | 6.7     | 2.0     |
|        | 지급률   | 52.2   | 60.2    | 60.9    | 65.1    | 59.5    | 56.8    | 62.9    | 68.3    |

주 : 1)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사업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 구 분       |      | FY2007 |        |        |        |         | FY2008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 생보<br>존협  | 사업비  | 7,062  | 7,736  | 8,215  | 8,369  | 31,382  | 8,427  | 9,398  | 8,717  |
|           | 증가율  | 27.0   | 28.3   | 27.4   | 21.0   | 25.7    | 19.3   | 21.5   | 6.1    |
|           | 사업비율 | 20.4   | 22.7   | 23.1   | 22.5   | 22.2    | 24.5   | 26.6   | 24.8   |
| 사보<br>망협  | 사업비  | 17,655 | 18,279 | 20,519 | 20,732 | 77,185  | 18,388 | 18,447 | 17,772 |
|           | 증가율  | 11.2   | 6.7    | 14.9   | 9.4    | 10.6    | 4.2    | 0.9    | -13.4  |
|           | 사업비율 | 23.9   | 24.8   | 27.3   | 27.6   | 25.9    | 24.6   | 24.9   | 24.3   |
| 생협<br>사보  | 사업비  | 5,454  | 6,558  | 7,401  | 7,330  | 26,744  | 7,456  | 7,391  | 6,386  |
|           | 증가율  | -5.5   | 21.5   | 33.6   | 23.2   | 18.0    | 36.7   | 12.7   | -13.7  |
|           | 사업비율 | 32.4   | 40.3   | 44.2   | 45.3   | 40.5    | 48.8   | 46.9   | 40.2   |
| 개인<br>보험계 | 사업비  | 30,172 | 32,574 | 36,135 | 36,430 | 135,311 | 34,271 | 35,236 | 32,875 |
|           | 증가율  | 10.9   | 14.0   | 21.1   | 14.5   | 15.2    | 13.6   | 8.2    | -9.0   |
|           | 사업비율 | 18.6   | 19.4   | 20.6   | 21.0   | 19.9    | 19.9   | 20.6   | 19.8   |
| 단체<br>보험계 | 사업비  | 760    | 784    | 979    | 985    | 3,507   | 855    | 957    | 925    |
|           | 증가율  | -0.6   | -0.6   | 17.0   | -5.5   | 0.3     | 12.5   | 22.0   | -5.5   |
|           | 사업비율 | 6.4    | 8.9    | 2.4    | 8.9    | 4.9     | 7.8    | 10.9   | 3.1    |
| 전체        | 사업비  | 30,932 | 33,358 | 37,114 | 37,415 | 138,818 | 35,127 | 36,192 | 33,800 |
|           | 증가율  | 10.6   | 13.6   | 21.0   | 13.9   | 14.8    | 13.6   | 8.5    | -8.9   |
|           | 사업비율 | 17.8   | 18.9   | 17.2   | 20.3   | 18.5    | 19.2   | 20.1   | 17.2   |

- 주 :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 구 분        |     | FY2007 |        |        |         | FY2008 |        |        |
|------------|-----|--------|--------|--------|---------|--------|--------|--------|
|            |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 화 재        | 보험료 | 679    | 878    | 775    | 3,075   | 701    | 632    | 792    |
|            | 성장률 | -5.2   | -2.6   | 2.3    | -1.8    | -5.7   | -6.9   | -9.8   |
|            | 구성비 | 0.8    | 1.0    | 0.9    | 0.9     | 0.8    | 0.7    | 0.8    |
| 해 상        | 보험료 | 1,783  | 1,486  | 1,514  | 6,518   | 2,166  | 1,912  | 2,564  |
|            | 성장률 | 11.2   | 13.9   | 15.2   | 3.1     | 24.9   | 7.2    | 72.6   |
|            | 구성비 | 2.2    | 1.6    | 1.7    | 1.9     | 2.4    | 2.1    | 2.6    |
| 자동차        | 보험료 | 26,913 | 27,900 | 27,444 | 108,095 | 27,397 | 27,846 | 27,574 |
|            | 성장률 | 10.6   | 14.1   | 9.3    | 12.0    | 6.0    | 3.5    | -1.2   |
|            | 구성비 | 33.0   | 30.3   | 31.7   | 31.8    | 30.6   | 30.5   | 27.8   |
| 보 증        | 보험료 | 2,341  | 2,602  | 2,573  | 9,940   | 2,814  | 2,928  | 2,821  |
|            | 성장률 | -12.2  | -15.3  | -5.3   | -13.0   | 16.1   | 25.1   | 8.4    |
|            | 구성비 | 2.9    | 2.8    | 3.0    | 2.9     | 3.1    | 3.2    | 2.8    |
| 특 종        | 보험료 | 6,728  | 7,455  | 6,478  | 27,245  | 7,209  | 7,488  | 7,668  |
|            | 성장률 | 9.2    | 9.4    | 10.3   | 9.0     | 9.5    | 11.3   | 2.8    |
|            | 구성비 | 8.2    | 8.1    | 7.5    | 8.0     | 8.1    | 8.2    | 7.7    |
| 해 외<br>원보험 | 보험료 | 254    | 298    | 383    | 1,126   | 224    | 341    | 637    |
|            | 성장률 | 23.9   | 7.1    | 108.7  | 36.8    | 16.9   | 34.2   | 113.9  |
|            | 구성비 | 0.3    | 0.3    | 0.4    | 0.3     | 0.2    | 0.4    | 0.6    |
| 장 기        | 보험료 | 39,850 | 41,650 | 43,308 | 163,436 | 44,857 | 46,357 | 47,656 |
|            | 성장률 | 19.5   | 19.6   | 16.8   | 19.5    | 16.1   | 16.3   | 14.4   |
|            | 구성비 | 48.8   | 45.2   | 50.0   | 48.1    | 50.1   | 50.7   | 48.1   |
| 개 인<br>연 금 | 보험료 | 2,388  | 2,629  | 2,713  | 9,995   | 2,907  | 3,104  | 3,394  |
|            | 성장률 | 26.8   | 24.0   | 27.0   | 25.3    | 28.3   | 30.0   | 29.1   |
|            | 구성비 | 2.9    | 2.9    | 3.1    | 2.9     | 3.2    | 3.4    | 3.4    |
| 퇴 직<br>보 험 | 보험료 | 510    | 6,047  | 935    | 8,258   | 518    | 410    | 4,770  |
|            | 성장률 | 424.6  | 48.6   | -8.1   | 26.2    | -32.4  | -19.7  | -21.1  |
|            | 구성비 | 0.6    | 6.6    | 1.1    | 2.4     | 0.6    | 0.4    | 4.8    |
| 퇴 직<br>연 금 | 보험료 | 214    | 1,256  | 536    | 2,133   | 756    | 389    | 1,238  |
|            | 성장률 | -78.9  | 758.8  | 308.1  | 61.0    | -32.4  | -19.7  | -1.5   |
|            | 구성비 | 0.3    | 1.4    | 0.6    | 0.6     | 0.8    | 0.4    | 1.2    |
| 계          | 보험료 | 81,659 | 92,201 | 86,658 | 339,818 | 89,550 | 91,408 | 99,113 |
|            | 성장률 | 12.9   | 18.3   | 13.6   | 14.9    | 12.9   | 11.9   | 7.5    |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 퇴직보험은 퇴직연금을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 구 분   |       | FY2007 |       |       | FY2008 |       |       |
|-------|-------|--------|-------|-------|--------|-------|-------|
|       |       | 2/4    | 3/4   | 4/4   | 1/4    | 2/4   | 3/4   |
| 화재보험  | 경과손해율 | 47.0   | 44.0  | 44.2  | 43.0   | 37.5  | 40.3  |
|       | 사업비율  | 44.0   | 47.4  | 45.9  | 45.0   | 40.8  | 43.2  |
|       | 합산비율  | 90.9   | 91.3  | 90.1  | 88.0   | 78.3  | 83.5  |
| 해상보험  | 경과손해율 | 54.8   | 58.7  | 57.7  | 52.9   | 62.5  | 70.2  |
|       | 사업비율  | 31.9   | 31.8  | 32.6  | 31.1   | 31.3  | 27.5  |
|       | 합산비율  | 86.7   | 90.6  | 90.3  | 84.0   | 93.8  | 97.8  |
| 자동차보험 | 경과손해율 | 73.7   | 73.9  | 73.0  | 68.1   | 68.4  | 69.6  |
|       | 사업비율  | 30.7   | 31.0  | 31.2  | 31.3   | 31.5  | 31.3  |
|       | 합산비율  | 104.5  | 104.9 | 104.2 | 99.4   | 99.9  | 101.0 |
| 보증보험  | 경과손해율 | 24.3   | 17.8  | 19.5  | 23.7   | 35.6  | 50.7  |
|       | 사업비율  | 20.4   | 13.5  | 17.8  | 26.0   | 21.6  | 20.9  |
|       | 합산비율  | 44.7   | 31.3  | 37.4  | 49.7   | 57.3  | 71.6  |
| 특종보험  | 경과손해율 | 56.5   | 58.2  | 60.4  | 57.8   | 60.2  | 63.3  |
|       | 사업비율  | 25.0   | 25.6  | 26.8  | 24.6   | 24.4  | 24.2  |
|       | 합산비율  | 81.5   | 83.8  | 87.2  | 82.3   | 84.6  | 87.6  |
| 해외원보험 | 경과손해율 | 29.4   | 30.6  | 34.6  | 38.1   | 39.4  | 43.2  |
|       | 사업비율  | 70.5   | 66.0  | 73.7  | 76.6   | 74.6  | 72.2  |
|       | 합산비율  | 99.8   | 96.6  | 108.3 | 114.7  | 114.0 | 115.4 |
| 장기보험  | 경과손해율 | 81.5   | 81.3  | 80.7  | 80.0   | 80.3  | 79.8  |
|       | 사업비율  | 18.2   | 18.4  | 18.9  | 18.8   | 19.1  | 20.3  |
|       | 합산비율  | 99.7   | 99.8  | 99.6  | 98.8   | 99.3  | 100.1 |
| 개인연금  | 경과손해율 | 116.0  | 116.4 | 121.7 | 115.7  | 115.7 | 115.7 |
|       | 사업비율  | 9.6    | 9.9   | 10.5  | 12.1   | 12.0  | 12.1  |
|       | 합산비율  | 125.6  | 126.3 | 132.2 | 127.8  | 127.7 | 127.8 |
| 전 체   | 경과손해율 | 75.9   | 75.9  | 75.7  | 73.7   | 74.5  | 75.5  |
|       | 사업비율  | 23.0   | 23.0  | 23.5  | 23.5   | 23.5  | 24.0  |
|       | 합산비율  | 98.9   | 98.9  | 99.2  | 97.2   | 98.0  | 99.5  |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의 실적은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 연구보고서

-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옥 2006.1
-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현수 2006.3
-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장희, 김동겸 2007.1
- 2007-2 민영건강보험료율 결정요인 분석 / 조용운, 기승도 2007.3
- 2007-3 퇴직연금 손·익 위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07.3
- 2007-4 확률적 프런티어 방법론을 이용한 손해보험사의 기술효율성 측정 / 지홍민 2007.3
- 2007-5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 안철경, 기승도 2008.1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3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1

## ■ 조사보고서

---

-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 2006-2 주요국 방카슈랑스의 운용사례 및 시사점 / 류건식, 김석영, 이상우, 박정희, 김동겸 2006.7
- 2007-1 보험회사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류건식, 장이규, 이경희, 김동겸 2007.3
- 2007-2 보험회사 브랜드 전략의 필요성 및 시사점 / 최영목, 박정희 2007.3
- 2007-3 200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오승철 2007.3
- 2007-4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 류건식, 이상우 2007.4
- 2007-5 지적재산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7.10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 정책보고서**

- 2006-1 200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6.12
- 2006-2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에 대한 연구 / 차일권, 오승철 2006.12
- 2007-1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 류건식, 이경희 2007.2
- 2007-2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 차일권, 이상우 2007.3
- 2007-3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의 효율체계에 관한 연구: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봉주 2007.3
- 2007-4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 김성태 2007.3
- 2007-5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안철경, 기승도, 이경희 2007.4
- 2007-6 200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7.12
- 2008-1 민영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조용운, 김세환 2008.3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혜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2009.3 이경희

##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2009.3 이기형, 한상용

##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 영문발간물

- 1호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 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7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7.9
-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 ■ Insurance Business Report

---

- 20호 선진 보험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1
- 21호 지급여력 평가모형 트렌드 및 국제비교 / 류건식, 장이규 2006.11
- 22호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 23호 미국과 영국의 손해보험 직판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 안철경, 기승도 2007.7
- 24호 보험회사의 자본비용 추정과 활용: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이경희 2007.7
- 25호 영국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 이기형, 박정희 2007.9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 CEO Report

---

- 2006-1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6. 1
- 2006-2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 보험연구소 2006.1
- 2006-3 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2
-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6.2
- 2006-5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6 보험사기 관리실태와 대응전략 / 정보통계본부 2006.3
- 2006-7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8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6.4
- 2006-9 날씨위험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4
- 2006-10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손익관리를 중심으로- / 손해보험본부 2006.5
- 2006-11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6.5
- 2006-12 장기간병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방향 / 보험연구소 2006.6
- 2006-13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 보험연구소 2006.7
- 2006-14 생명보험 가입형태별 위험수준 분석 / 리스크 통계관리실 2006.8
-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 2007-1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 보험연구소 2007.4
- 2007-2 외국의 협력정비공장제도 운영현황과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7.4
- 2007-3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 보험연구소 2007.6
- 2007-4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 보험연구소 2007.7
- 2007-5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한 주요 이슈 검토 / 보험연구소 2007.11
- 2007-6 자동차보험 시장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7.11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정기간행물

### ■ 계간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 회원 및 제공자료

|      | 법인회원                                                                                                            | 특별회원                                                                                                            | 개인회원                                                                                                            |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
|------|-----------------------------------------------------------------------------------------------------------------|-----------------------------------------------------------------------------------------------------------------|-----------------------------------------------------------------------------------------------------------------|---------------------------------------------------------------------------------------------------------|
| 연회비  | ₩ 300,000원                                                                                                      | ₩ 150,000원                                                                                                      | ₩ 150,000원                                                                                                      | 간행물별로 다름                                                                                                |
| 제공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정책/경영보고서</li> <li>- 조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정책/경영보고서</li> <li>- 조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정책/경영보고서</li> <li>- 조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금융연구 (년3회 ₩ 30,000)</li> <li>-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속간행물</li> <li>• 보험금융연구</li> <li>• 보험동향(계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속간행물</li> <li>• 보험금융연구</li> <li>• 보험동향(계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속간행물</li> <li>• 보험금융연구</li> <li>• 보험동향(계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동향 (계간 ₩ 20,000)</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li> <li>-보험통계월보</li> <li>-손해보험통계연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통계월보</li> <li>-손해보험통계연보</li> </ul>                                    | -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68-4414, 4415 팩스 : (02)368-4099

##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 지로번호 : 6360647

##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2009년 3월

발행인 나 동 민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등 록 1997. 7. 15. (바-2873)  
대표전화 (02) 368-4400  
인 쇄 소 대 화 인 쇄  
전 화 (02) 2265-1330

정가 6,000원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68-4422 368-4423)로 연락하여 주십시오.